

# 2009 하계대학총장세미나

##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www.kcue.or.kr](http://www.kcue.or.kr)

- 일 시 : 2009년 7월 1일(수)~7월 3일(금)
- 장 소 : 제주 신라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2009 하계대학총장세미나

##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www.kcue.or.kr](http://www.kcue.or.kr)

- 일시 : 2009년 7월 1일(수)~7월 3일(금)
- 장소 : 제주 신라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일 정 표

제 1 일

7. 1(수)

시 간	일 정	진 행	장 소
14:30~15:00	등 록		로비(5층)
15:00~15:30	<b>개회식</b> - 개회사: 이배용 회장 - 손병두, 노동일, 임병선 전임회장단 공로패 증정 - 신입회장단 및 신입총장 소개 - KCUE - ACE 간 MOU 체결	사 회: 박종렬 사무총장	한라홀(5층)
15:30~16:20	<b>기조강연(I)</b> 미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	사 회: 이기수 부회장 발 표: Molly Corbett Broad 회장 (미국교육협의회(ACE)) 질의응답	한라홀(5층)
16:20~16:40	<i>Coffee Break</i>		
16:40~17:30	<b>기조강연(II)</b>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	발 표: 김신복 부총장(서울대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질의응답	한라홀(5층)
17:30~18:30	휴 식	-교육대학총장협의회: 로터스3(3층) -신학대학총장협의회: 로터스2(3층)	
18:30~20:00	만찬(국민은행 강정원 은행장 초청)		한라홀(5층)

제 2 일

7. 2(목)

시 간	일 정	진 행	장 소
07:00~09:00	조 식		한식당(3층) 양식당(3층)
09:00~09:30	<b>정책추진보고(I): 대학입학전형업무 주요 추진 사항</b>	사 회: 서거석 부회장 발 표: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 질의응답	까멜리아홀(3층)
9:30~10:00	<b>정책추진보고(II): 대학평가 추진 계획</b>	발 표: 백정하 대학평가원장 질의응답	까멜리아홀(3층)
10:00~10:20	<i>Coffee Break</i>		
10:20~11:00	<b>사례발표</b> 동국대학교 자체평가 시스템	발 표: 오영교 총장·김승용 교수(동국대) 질의응답	까멜리아홀(3층)
11:00~11:40	<b>초청특강</b> Key To The Future, IT	발 표: 이희성 사장(인텔코리아) 질의응답	까멜리아홀(3층)
11:40~12:00	휴 식		
12:00~13:30	오찬(인텔코리아 이희성 사장 초청)		한라홀(5층)

## 제 2 일

## 7. 2(목)

시 간	일 정	진 행	장 소
13:30~15:00	<b>특별위원회별 분과회의</b>		
	-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	좌 장: 노동일 위원장 발 표: 허종렬 자문교수 토 론: 강창석 위원, 김윤수 위원	월라홀(5층)
	- 대학재정 대책위원회	좌 장: 임병선 위원장 발 표: 송기창 자문교수 토 론: 박영식 위원, 전우수 위원	로터스1(3층)
	-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좌 장: 이기수 위원장 발 표: 장재욱·정용상 자문교수 토 론: 최세훈(법무부), 함정민(서울변협)	로즈홀(3층)
	- 국공립대학 발전위원회	좌 장: 서거석 위원장 발 표: 반상진 자문교수 토 론: 자유토론	릴리홀(3층)
	- 사학법 대책위원회	좌 장: 문성모 위원 발 표: 이시우 자문교수 토 론: 최성해 위원, 채훈관 위원	로터스2(3층)
	- 대학평가 대책위원회	좌 장: 이현청 위원장 발 표: 배호순 자문교수 토 론: 송광용 위원, 이용두 위원	까멜리아홀(3층)
	- 국제화 대책위원회	좌 장: 박동순 위원장 발 표: 권선국 자문교수 토 론: 정순훈 위원, 장만채 위원	로터스3(3층)
15:00~15:20	<i>Coffee Break</i>		
15:20~17:00	<b>특별위원회 분과회의 결과 발표 및 토론</b>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 대학재정 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국공립대학 발전위원회, 사학법 대책위원회, 대학평가 대책위원회, 국제화 대책위원회	좌 장 : 이희연 부회장 발 표 :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까멜리아홀(3층)
17:00~18:00	<b>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b>	사 회: 이배용 회장 발 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까멜리아홀(3층)
18:30~20:00	<b>만찬</b>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초청)		한라홀(5층)
20:00~21:00	<b>문화공연(이화여대 '실내악 갈라 콘서트' )</b>		한라홀(5층)

## 제 3 일

## 7. 3(금)

시 간	일 정	진 행	장 소
07:00~09:00	<b>조 식</b>		한식당(3층) 양식당(3층)
09:00~10:00	<b>각 협의회별 분과회의</b>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좌 장: 각 협의회 회장	한라홀1(5층) 한라홀2(5층)
10:00~12:00	제주도 문화 탐방 (추사유배지-하멜표류지)	<b>해 설: 이배용 회장</b>	
12:00~14:00	<b>오찬</b> (이배용 회장 초청)		
14:00	<b>폐 회</b>		

# 목 차

개회사 .....	1
-----------	---

## 기조강연

○ 기조강연(I) : 미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 .....	5
○ 기조강연(II) :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 .....	15

## 정책추진보고

○ 정책추진보고(I) : 대학입학전형업무 주요 추진 사항 .....	37
○ 정책추진보고(II) : 대학평가 추진 계획 .....	51

사례발표 : 동국대학교 자체평가 시스템 .....	67
-----------------------------	----

## 초청특강 : Key To The Future, IT

## 특별위원회별 분과회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101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125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159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195
○ 사학법대책위원회 .....	211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227
○ 국제화대책위원회 .....	261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 개 회 사

이 배 용(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개 회 사

청정한 바다, 신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제주에서 2009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등 교육 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대학의 혁신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고등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온갖 정성과 노력으로 헌신하고 계신 총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대학 자율화의 원년을 이끌어주신 전임 손병두 회장님의 대학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임 노동일 부회장님, 임병선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대학 총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총장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미국교육협의회(ACE)의 몰리 브로드(Molly Broad) 회장님과 서울대학교 김신복 부총장님, 그리고 세미나를 위해 오찬과 만찬을 제공해주시는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님과 인텔코리아 이희성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많은 회원 대학 총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박종렬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대교협 관계자 선생님들과 특별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성심껏 지원해주신 자문 교수님, 전문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한국 대학 교육의 커다란 전환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교협은 대학 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앙양하며,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대학 교육의 상승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에 창립된 대학 간 자율 협의체입니다. 저는 15대 회장으로서는 손병두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대교협을 한국 대학 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협의체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명 비평가인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 교수는 강대국이 되려면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학이 12세기부터 형성되어 오랜 전통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가장 높은 지적 탐구에 헌신했다는 것, 둘째, 연구와 저술을 통해 역사 발전을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 셋째,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 지식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는 하나의 대표적인 교육 기관을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전하게 된 원천은 미국 대학들의 경쟁력이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유럽의 대학들에 뒤쳐져 있었으나 그 이후 상황은 역전되었고, 이와 동시에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과 시기적으로 부합되는 것을 볼 때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대학 경쟁력은 세계 수준에 크게 뒤져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세계 대학 평가 지표에서도 한국의 대학들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교육의 경쟁력과 기능이 더욱 부각되는 이 때에 대교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 입시 업무를 이관 받은 대교협이 역할과 사명, 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과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교협이 원칙과 방향을 정했을 때 소속 대학들이 이해와 협력 속에 함께하면서 대교협에 대한 공신력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 자율화 추진 2년차를 맞이하여 국제 자유 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특히 세미나 2일차 오후에 진행되는 7개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에 구성되어,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발한 토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대학 자율화 정착의 전략을 고민하고, 고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평가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교육의 방향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실제적인 담론의 장이자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대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교협은 사회적인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별 학교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공유하면서, 지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반듯한 인재 양성과 연구를 통한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의 문제를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한 수혜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호혜적으로 설득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 그리고 이상과 현실 속에서 학문에 순수성과 실용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과제, 균형 잡힌 판단력과 예지력을 갖추어 모든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가는 대학

의 역할 등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양적, 지적인 발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세상의 문명을 선도하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대학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을 맡고부터 많은 것을 총장님들께 배웠습니다.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서로 같은 점도 많지만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점도 많다는 것,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지혜를 나누는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총장님들이 섬기시는 대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이 배 용**

# 기 조 강 연

발 표

Molly Corbett Broad 회장  
(미국교육협의회(ACE))

김 신 복 부총장  
(서울대,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기 조 강 연 ( I )

발 표

Molly Corbett Broad 회장  
(미국교육협의회(ACE))

---

# U.S. and Korean Higher Education: Learning from Each Other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09 Summer Seminar

*Molly Corbett Broad, President*

July 1, 2009  
Je-Ju-Do, Korea

**A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Outline of Presentation



*The U.S. and Korea Landscape:  
How We Compare*



*Successes of the U.S. System:  
Access, Diversity, & Discovery*



*Common Challenges:  
Quality Assurance, Accountabilit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Represents 1,600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most sectors of higher education:

- Public universities
- Community colleges
- Private not-for-profit universities and colleges
- Regionally accredited, degree-granting for-profit institutions (e.g. University of Phoenix)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U.S. and Korean Higher Education – Differing Systems, Common Interests

### Differences

- Size and student mobility
- Student diversity and population growth
- Institutional autonomy
-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 Quality of K-12 education
- Impact of current economic recession

### Simila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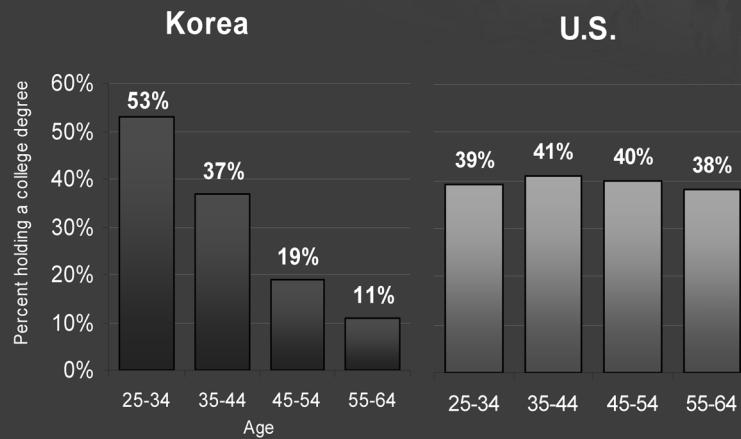
- Educational equity concerns
- Affordability concerns
- Accountability and competitiveness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Korea Has Surpassed the U.S. in Degree Attainment



Source: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A Bold Goal for Higher Education



*...this country needs and values the talents of every American. That is why we will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for you to complete college and meet a new goal: by 2020, America will once again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s in the world."*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Populations Key to the Bold Goal

- Low-income and racial/ethnic minority young people (especially Hispanics)
- High school drop-outs
- Unemployed workers
- Returning veterans
- Older adults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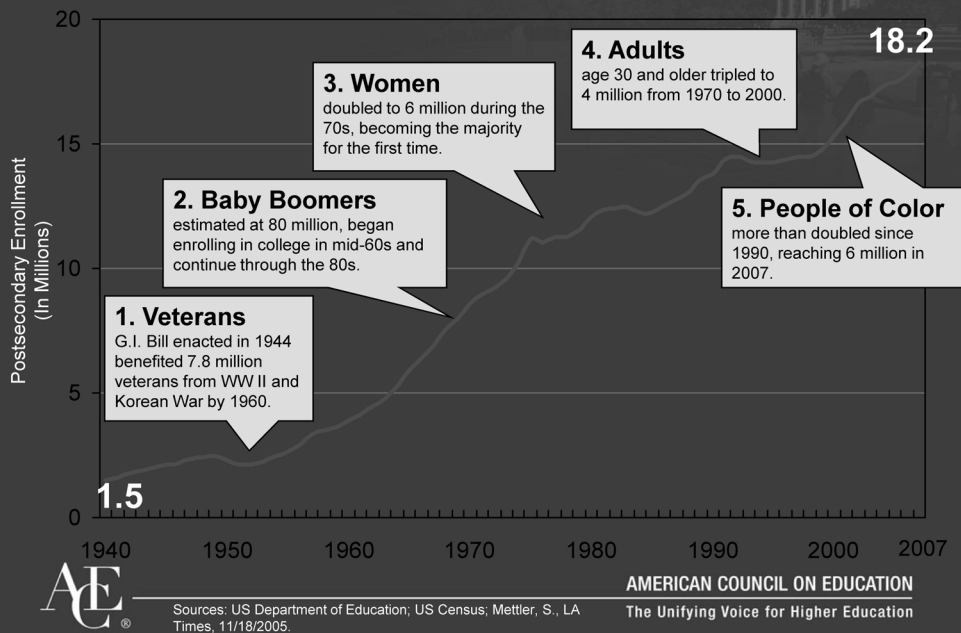
## Successes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 Access
- Institutional Diversity
- Research and Innova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Drivers of Enrollment Growth



## Keys to Access & Success



Academic Preparation



Counseling & Support



Financial Assistanc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Diverse Students, Diverse Institutions

	Public	Private
	<u>Community Colleges</u>	<u>Junior Colleges</u>
<b>Two-year</b>	1,047 Institutions (31%) 6,636,967 Students (37%)	675 Institutions (20%) 393,810 Students (2%)
	<u>State Colleges</u>	<u>Liberal Arts Colleges</u>
<b>Four-year</b>	416 Institutions (12%) 3,040,260 Students (17%)	991 Institutions (29%) 2,457,678 Students (14%)
	<u>Research Universities</u>	<u>Research Universities</u>
<b>University</b>	166 Institutions (5%) 3,780,183 Students (21%)	114 Institutions (3%) 1,405,080 Students (8%)



Sour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 2007.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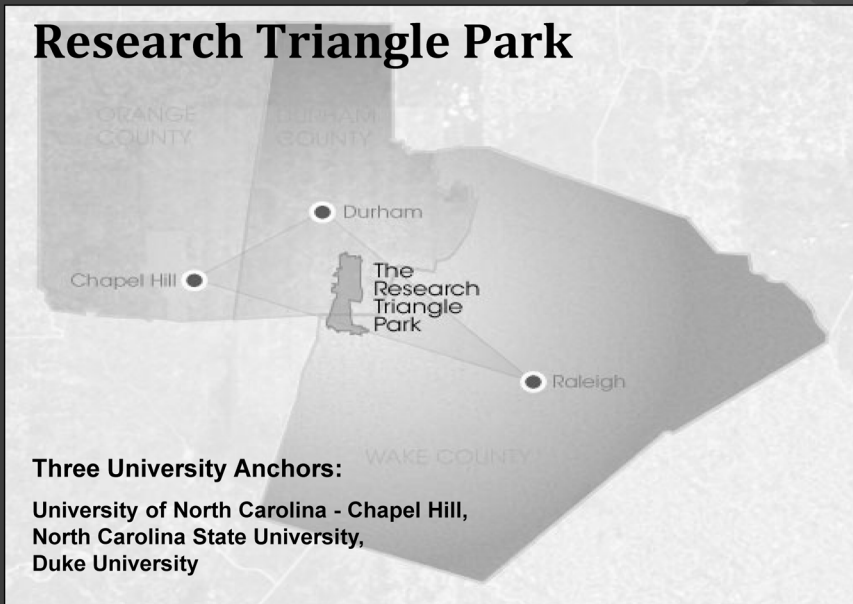
## Research and Innovation

- 50+ years of investment in R&D
- Innovation is the key
-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 *Research Triangle Pa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Research Triangle Park



Source: Research Triangle Foundation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Common Challenges: Quality Assurance and Accountability



Performance-based Funding

*Measuring Up*

*U.S. News & World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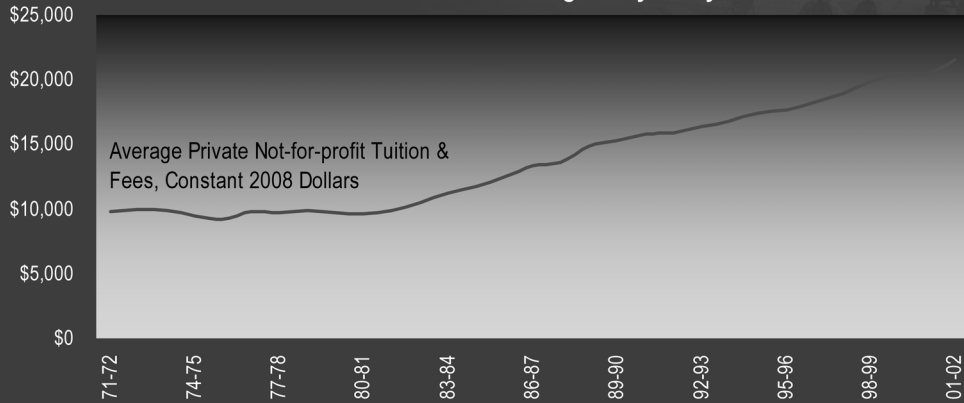
Accreditation Requirements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The Federal Interest: History

## Tuition Increases and Regulatory Policy



Reliance on Accreditation

Increased Federal Regulation



Source: College Board, *Trends in Student Aid 2008*.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A Window of Opportunit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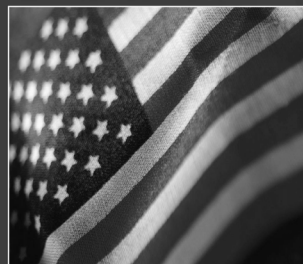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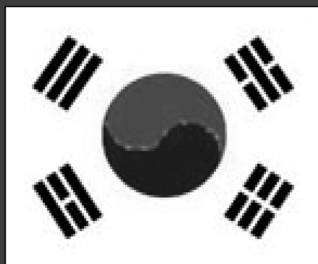
## Bologna: A Model for Accountability?

- Qualifications Frameworks
- Tuning USA
- AHELO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Learning from Each Other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The Unifying Voice for Higher Education

# 기 조 강 연 (Ⅱ)

발 표

김 신 복 부총장  
(서울대, 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전략

김신복(서울대학교)

## 1. 대학경쟁력의 개념과 의의

- 경쟁력 : 타 행위주체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능력(역량)
- 대학의 경쟁력 : 교육·연구의 양과 질을 확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역량
-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R&D와 인적자원의 질적수준에 의해 결정
  - 대학은 21세기 핵심자원인 지식·기술과 고급인력의 산실
  -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

## 2. 환경여건의 변화와 대학경쟁력

### 가.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 1) 연령대별 취학률

- 선진국들의 경우 30대 이상의 취학율이 현저하게 높음

<표 1> 연령별 취학률(2006)(단위 : %)

구분	의무교육 종료연령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취학률	취학률	취학률	취학률
OECD 평균	16	81.5	25.1	5.7	1.4
한국	14	85.9	27.6	2.1	0.5
영국	16	69.7	17.3	5.8	1.8
미국	17	78.4	23.1	5.4	1.4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2)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대비 고졸자 변화 추이

- 수년 후부터 대학 입학정원 미충원 현상이 심화될 전망

<표 2>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대비 고졸자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2009학년도	2012학년도	2015학년도	2018학년도	2021학년도
학령인구	629,360	690,519	619,173	598,527	508,282
고교 졸업자수 A(추정)	585,305	642,183	575,831	556,630	472,702
대입 입학정원(B)	599,984	599,984	599,984	599,984	599,984
초과졸업자 수(A-B)	-14,679	42,199	-24,158	-43,354	-127,28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3) 대학 진학률의 증가

- 한국 : 32.8%(1980) → 51.4%(1995) → 83.8%(2008)  
일반계고교 졸업생은 87.9%가 진학(2008)
- 미국 : 59.9%(1990) → 63.3%(2000)
- 일본 : 36.3%(1990) → 49.1%(2000)

### 4) 연령대별 고등교육 이수율

-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고등교육의 이수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7%로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53%로 4위 차지
- 고연령자의 이수율은 최하위 수준이나, 저연령층 이수율은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단기간 양적 성장을 시사  
※ 고등학교: 25-34세 97%, 55-64세 37%(23위), 고등교육 : 25-34세 53%, 55-64세 11%(25위)

<표 3> 연령별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06)

(단위 : %)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고등학교	한 국	77	97	90	62	37
	OECD평균	68	78	72	65	55
고등교육	한 국	33	53	37	19	11
	OECD평균	27	33	28	24	19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합함.

2) 이수율은 해당 연령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해당 연령별 인구

자료: 2008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 나.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 증가

### 1) 대학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요구

2) 공공성과 시장성을 결합한 형태 선호

3)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확보 기대

#### 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고등교육재정의 정부부담 증대

1)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공공부담이 민간부담을 상회

2)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한국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2%(정부부담 4.3%,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 보다 높게 나타남
- '04년(7.2% : 정부부담 4.4%, 민간부담 2.8%) 대비 정부부담은 0.1% 하락

<표 4>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5)

(단위 :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독 일	4.2	0.9	5.1	2.8	0.6	3.4	0.9	0.2	1.1
프랑스	5.6	0.5	6.0	3.8	0.2	4.0	1.1	0.2	1.3
영 국	5.0	1.2	6.2	3.8	0.8	4.6	0.9	0.4	1.3
미 국	4.8	2.3	7.1	3.5	0.3	3.8	1.0	1.9	2.9
일 본	3.4	1.5	4.9	2.6	0.3	2.9	0.5	0.9	1.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주: 1) 한국의 적용된 2005년도 GDP는 810,516십억원임.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 = (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 정부부담 = {(중앙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에 대한 장학금 보조(수업료 지원)+정부에서 민간에 지원한 이전금)/GD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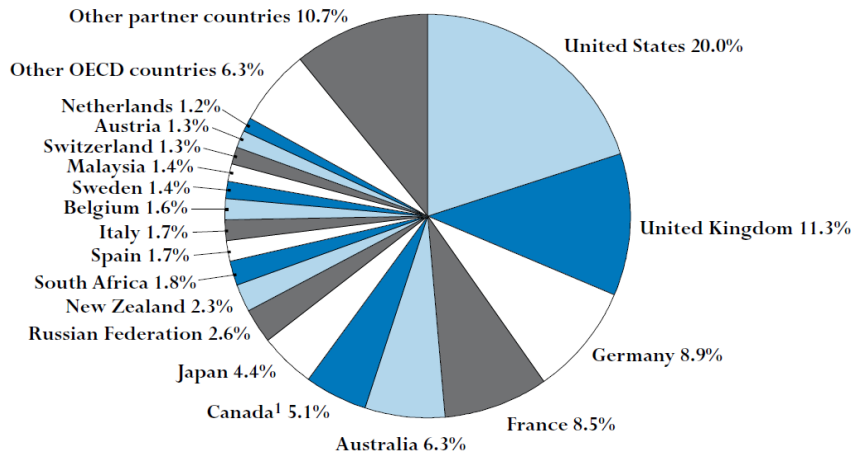
- 민간부담 = {(민간(학생, 학부모)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종교단체 및 기타 비영리 조직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GDP}\*100

#### 라. 국경 없는 고등교육시장 형성으로 무한경쟁 불가피

1) 국내외 대학 간 이동

- 2006년에 세계적으로 2.9백만 명의 대학생이 다른 국가로 유학을 갔으며, 이 중 83.5%에 해당하는 2.4백만 명이 OECD 소속 국가의 학생임
- 2006년 전 세계 유학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 정도의 학생들은 미국(20.0%)과 영국(11.3%), 독일(8.9%), 프랑스(8.5%)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등록

Percentage of foreign tertiary students reported to the OECD who are enrolled in each country of destination



[그림 1] 2006년 전 세계 고등교육 기관 유학생의 분포

## 2) 대학들의 외국 진출 증가

- 공동학위 제도와 같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프로그램도 존재
- 해외 분교가 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2007년 말 기준) : 미국계 대학(약 50%), 호주(12%)와 영국·아일랜드(각각 5%) 등
- 미국 영국 호주 대학들의 아시아 지역에 해외캠퍼스 설립 운영 사례 증가

## 마. 고등교육기관간의 질적 격차 심화

- 세계의 국제화와 함께 대학 간의 경쟁도 점차 세계 대학과의 경쟁 체제로 변화
- 대학의 재정 및 교육여건, 교수 및 학생의 질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대학 간의 질적 격차는 더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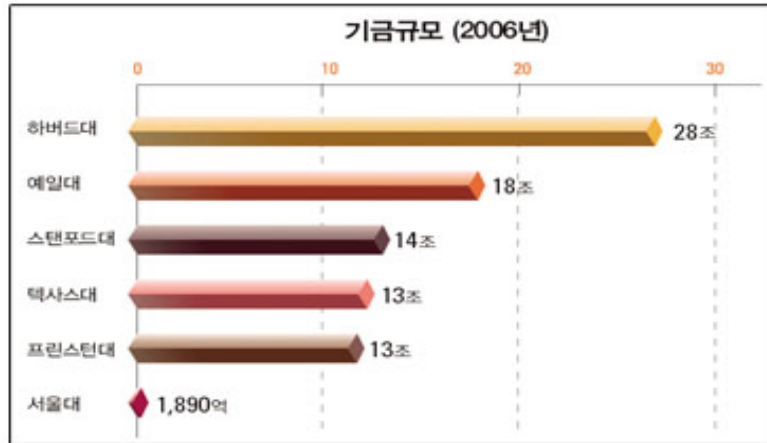
### 가) 재정 규모의 차이



\* 출처 : 서울대학교(2007).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 나) 발전기금(기부금) 현황 차이

- 서울대학교의 축적된 기금규모는 1천8백90억 원으로 하버드대 28조원, 예일대 18조원, 스탠포드대 14조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그림 2> 국내외 주요대학의 기금규모(2006년)

## 2) 연구여건의 차이

- 대학 간의 도서관 장서 수 및 연구 관련 자료의 차이는 결국 연구의 양과 질에 있어 대학 간 차이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큼

<표 5> 외국 대학과의 해외DB 구독 종수 비교

(단위: 종)

구분	국내 대학 평균	서울대	Illinois	Harvard	UC계열 대학	Tshinghua	
해외전자정보 구독 종수	12.1	56	157	250	201	140	
비교	DB(종)	5.9	30	157	-	-	140
	전자저널	5.63종 (서비스기준)	26종 (서비스기준)	9,583종 (개별저널)	-	-	5,200종 (개별저널)

출처: 「2004 교육인적자원부-KERIS 해외전자정보 수요조사」와 해외대학도서관 홈페이지 직접조사(04)

## 바. 국가수준의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 강화 추세

### 1) 대학평가의 목적

- 학생과 학부모 및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학관련 정보 제공
- 대학간 비교분석을 통해 취약점 및 개선방안 파악
- 대학의 책무성 제고 및 차등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 2) 평가의 내용

- 교수, 학생, 재정 및 자원, 국제화, 교수·학습, 평판도, 졸업생 수준, 연구역량 등

## 3) 대학평가의 주체와 종류

- 대학 운영과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자국 대학들의 서열화된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
- 따라서 대학간 연합체나 언론사, 또는 민간전문기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이 많음
- 대학평가 유형 (대표적 사례만 제시)

### 가) 자국 내 대학 평가

- U.S. News & World Report(미국) : America's Best College
- THES(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영국) : The Good University Guide Rankings
- Mclean's(캐나다) : University Rankings
- 중앙일보, 조선일보 대학평가(한국)

### 나) 세계 대학 평가

- THES(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영국)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Shanghai Jiao Tong 대학의 ARWU(중국) : Academ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 Newsweek(미국) : The Top 100 Global Universities
- 조선일보 & QS 아시아대학평가(한국)

## 4) 국가단위 대학 평가기구 설치

- 미국 : CHEA('96), 영국 :QAA('97), 일본 : NIADUE('00), 호주 : AUQA('01)
- 공사립 포함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상 평가
- 기관평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평가도 수행

## 3. 한국 대학의 경쟁력 실태

### 가. 국가 경쟁력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31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7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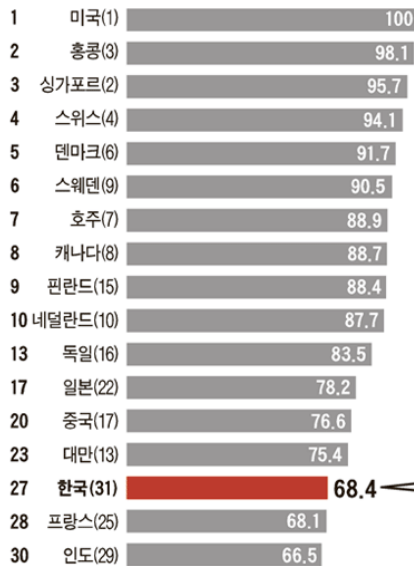
<표 6>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대만
27(31)	1(1)	2(3)	3(2)	13(16)	17(22)	20(17)	21(21)	23(13)

\* ( )안은 전년도 순위

2009년 주요국 경쟁력 순위

※( )안은 지난해 순위, 점수는 1위국을 100으로 계산한 것임.



강점		한국의 강점과 약점		약점	
순위	항목	분야	순위	항목	
1	장기실업률	경제 성과	54	GDP 대비 관광수입 비중	
12	상품 수출액		54	생활비용 지수	
13	경제의 다변화 정도		49	교역 조건	
6	사회결집력	정부 효율성	57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10	소비세율		55	환율 안정성	
13	중앙부처 대외부채		50	관세장벽	
2	고객만족도 강조 여부	기업 효율성	56	노사 관계	
3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56	문화적 개방성	
4	평균 노동시간		52	중소기업 효율성	
1	특허 생산성	인프라	51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4	고등교육 수학률		51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5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50	우수한 엔지니어 배출	

※특허 생산성은 연구인력 대비 특허획득 기준  
자료: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

<그림 3> 2009년 주요국 경쟁력 순위

\*( )안은 지난해 순위, 점수는 1위국을 100으로 계산한 것임.

나. 대학교육의 경쟁력

-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평가 대상 57개국중 4위 유지
- 타 지표들은 매우 미흡(2008→2009 변화)
  - 고급인력 유출(27→48위)
  -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부합도(53→51위)
  -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41→50위)
- 학생정원 미달로 존립자체를 위협받는 대학들이 적지 않음

다. 세계대학 평가 순위

1) 세계 3대 주요 대학평가 결과

<표 7> 세계 3대 주요 대학평가 결과 비교

대학명	뉴스위크 (2006)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2008)	영국 Times (2008)
	100개 대학	500개 대학	200개 대학
하버드대	1	1	1
스탠퍼드대	2	2	17
UC 버클리	5	3	36
MIT	7	5	9
도쿄대	16	19	19
교토대	29	23	25
홍콩대	69	201-302	26
싱가폴대	36	101-151	30
서울대	-	152-200	50
KAIST	-	201-302	95
포항공대	-	303-401	188

## 2) 영국 The Times 평가

-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와 대학평가기관 QS가 실시한 '2008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가 50위를, KAIST가 95위 차지
- 2005년 93위로 한국 대학 최초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던 서울대는 2007년 51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3년 만에 50위권에 진입. 분야별 평가에서 서울대는 자연과학 분야 31위(전년도 38위), 사회과학 분야 33위(" 57위), 생명과학 분야 40위(" 46위), 공학 분야 43위(" 56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순위 상승

## 3) 상하이 교통대학 평가

- 중국의 상하이교통대학이 발표한 2008년 전 세계 500대 대학 평가 순위에서 미국 하버드, 스탠퍼드, UC 버클리가 1~3위 차지
- 미국 대학 8곳과 영국 대학 2곳이 10위권에 포함
-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대가 19위, 반면 서울대는 162위라는 저조한 평가. 베이징대학은 200위권 밖으로 평가

<표 8> 상하이 교통대학 평가의 국내대학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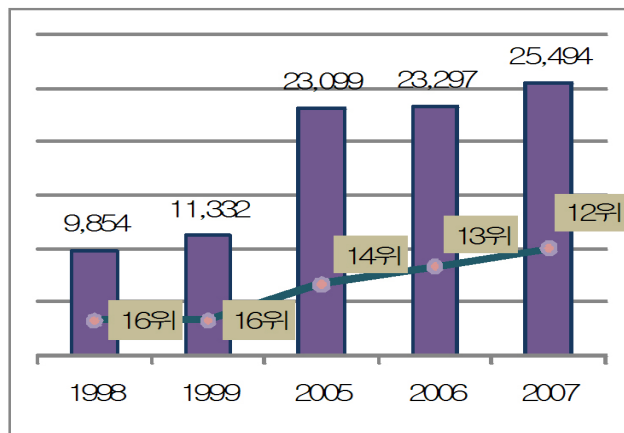
국내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성균관대	한양대
2007년	151-202	203-304	305-402	203-304	305-402	305-402	403-510
2008년	151-200	201-302	303-401	201-302	303-401	303-401	303-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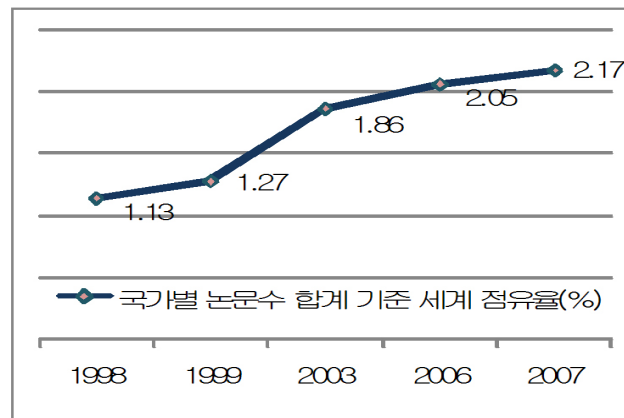
## 라. 교수들의 연구실적

### 1) 국가별 비교

-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 : Science Citation Index) NSI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도 우리나라의 SCI게재 논문수는 25,494편으로 180개국 중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12위
- 또한, 우리나라 SCI 논문이 전 세계 총 논문 수 중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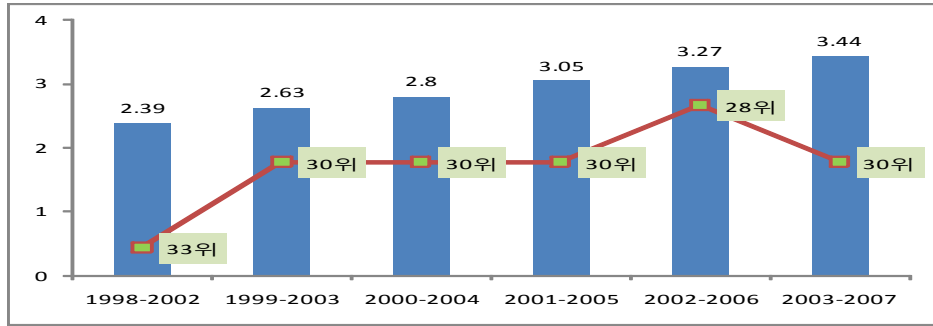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우리나라 논문 수 및 세계 순위(편수)



[그림 5] 연도별 우리나라 논문수 세계 점유율(%)

- 논문 발표 수 상위 12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변동이 없는 가운데 중국(5→3위, 14.34%)과 우리나라(13→12위, 9.43%)가 높은 논문 수 증가율과 함께 순위 상승
- 우리나라 SCI 논문의 5년 주기별(2003~2007)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44회로 전년도(3.27회) 보다 5.2% 증가했으나, 국가 순위는 전년도 공동 28위에서 30위로 하락.



[그림 6] 5년 주기별 우리나라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논문 수 5,000편 이상인 국가(50개국) 중 순위)

## 2) 대학별 비교

- 국내 대학의 대학별 전체 논문수와 세계 순위 : 국내 1위인 서울대가 4,291편, 세계 순위는 24위. 다음으로 96위를 차지한 연세대가 100위권 이내에 처음 진입
-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 현황 : 1위는 10,258편을 발표한 미국 하버드대가 차지하였고, 일본 도쿄대가 7,308편으로 2위, 3~5위는 캐나다 토론토대(6,170편), 미국 UCLA(6,000편), 미국 미시간대(5,962편)

<표 9> 대학별 발표 논문수('07 SCI 기준)

대학명(순위)	Harvard(1)	Tokyo(2)	Toronto(3)	서울대(24)
논문수	10,258	7,308	6,170	4,291

\* 서울대 '97: 1,395편(127위), '99: 1,824편(74위), '01: 2,589편(40위) '06: 3,635편(32위)

- 세계 100위권 대학을 보유한 국가 : 미국 등 22개 국가로, 미국이 49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 7개, 영국 6개, 캐나다 5개, 중국·이탈리아는 각각 4개, 호주·독일·스웨덴·네덜란드가 각각 3개 보유
- 서울대(24위)는 일본의 도쿄대(2위), 교토대(8위) 도호쿠대(20위), 오사카대(23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5번째로 많은 논문 발표

## 마. 국제화 실적

<표 10> 국내 상위 30개 대학의 국제화 추이

(단위 : %)

	2006학년도	2007학년도	증감분
외국인교수비율	10.50	12.23	+1.73
외국인학생비율	2.25	3.50	+1.25
해외파견교환학생비율	1.08	1.49	+0.41
국내방문교환학생비율	1.73	2.71	+0.98
영어강좌비율	7.17	8.51	+1.34

※ 출처: 200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 1) 해외 유학생 수와 국내 외국인 학생 수

-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유학생 수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음
- 국내에 재학 중인 외국학생 대비 해외 유학생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음
- 따라서 유학 연수비 적자가 가장 많아서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음.

<표 11> 총학생수 대비 유학생 비율 국제비교

	한국('08)	미국('05)	중국('05)	일본('04)
국내 유학생(%)	1.79	3.27	0.88	3.03
국외 유학생(%)	6.09	1.19	0.73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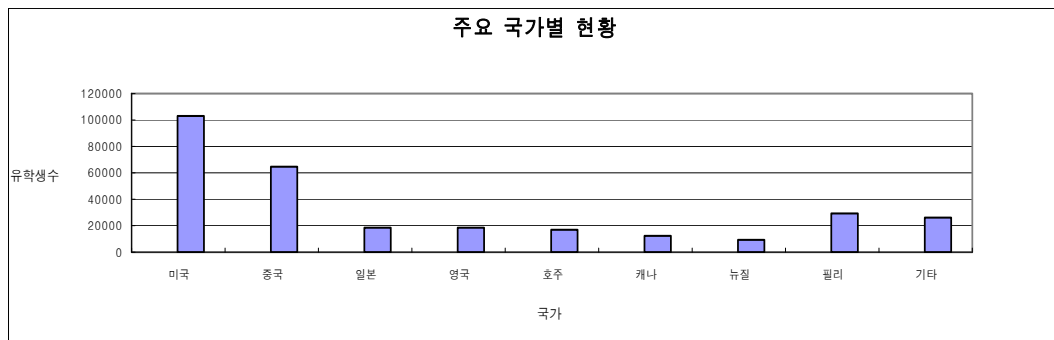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과부 자체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해외 한국인 유학생수

<표 12> 국가별 총유학생수

유학국가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계
인원(명)	103,389	64,187	18,300	16,591	19,056	12,795	8,707	29,112	26,819	298,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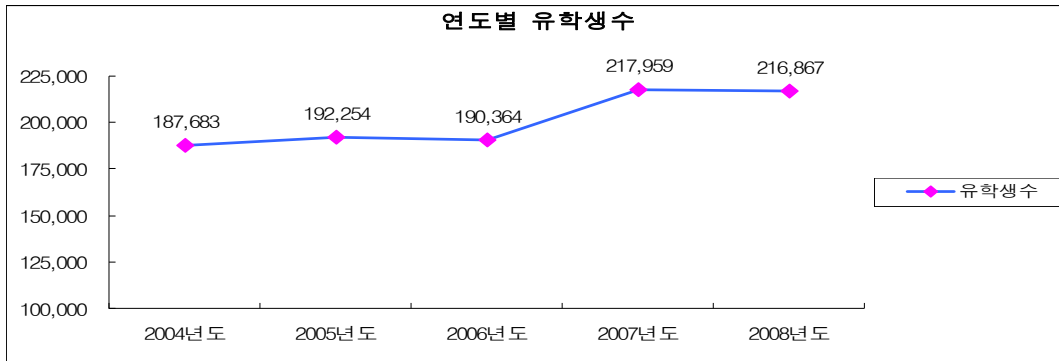
\*출처 : 국제교육진흥원(2008. 10)



<그림 7> 주요 국가별 유학생수

<표 13> 연도별 한국인 유학생수

연 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
유학생수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



<그림 8> 연도별 해외 유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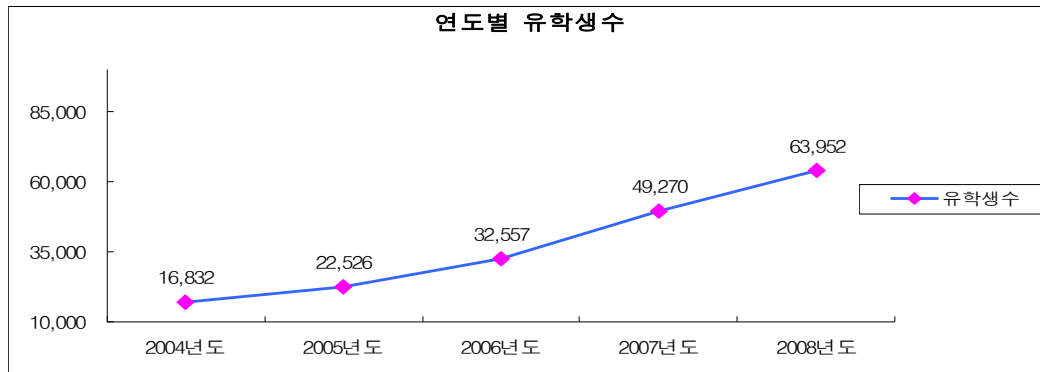
### 3)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표 14> 2008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현황

연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유학생수	16,832	22,526	32,557	50,922	63,952

\* 출처 : 국제교육진흥원(2008. 10.)

※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그림 9>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

<표 15>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수

유학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네팔	기타	계
인원(명)	44,746	3,324	2,022	1,817	1,481	1,158	501	480	449	314	7,660	63,952

\*출처 : 국제교육진흥원(2008. 10.)

#### 4) 유학비용의 수입·지출

<표 16> 유학생 및 유학비용 추이

(단위: 명,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해외 유학생 수	대학교	-	149,933	-	159,903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
	(학위과정)	-	109,151	-	98,331	105,893	100,716	113,735	123,965	127,000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학	-	11,646	-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학위과정)	-	4,336	-	7,981	11,121	15,577	22,624	32,056	40,585
유학.연수 수치	국내수입액	23.0	10.8	16.9	14.8	15.9	12.6	28.0	46.5	-
	해외지급액	957.9	1,070.0	1,426.6	1,854.7	2,493.8	3,380.9	4,514.6	5,009.8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교과부 자체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4. 한국대학의 경쟁력 미흡 원인

##### 가. 분야별 인력수요와 공급간의 괴리

- 노동시장과 괴리된 전공분야 설치로 시장과 전공의 미스매치(mis-match) 심각
- 이공계 학생정원의 비율은 한국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
- 그러나 취업자들의 산업별 분포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제조업 취업자 : 2007년 17.5% → 2010년 16.9%
  - 서비스업 및 SOC부문 취업자 : 68.9%(2000) → 75.9%(2010)

<표 17> 주요국의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생 구성비 비교 (2006)

(단위:%)

구분	이공계 전체	이공계 세부			의료보건	인문, 예술, 교육
		생명/물리 과학/농업	수학/컴퓨터 관련	공학, 제조 및 건축		
OECD평균	24.0	6.9	5.2	11.9	13.3	24.9
프랑스	27.3	8.8	5.9	12.6	8.8	19.1
독일	29.3	8.9	7.8	12.6	10.1	31.0
일본	27.6	7.9		19.7	6.8	23.2
영국	24.1	8.5	6.8	8.8	12.4	27.4
미국	16.3	6.2	3.9	6.2	9.8	28.6
한국	38.7	7.5	5.2	26.0	8.5	26.1

주: 1) 과학분야: 생명/물리/과학/농업, 수학/컴퓨터/과학, 공학, 제조·건축분야를 합한 비율 (의료보건 분야 제외)  
 2) 일본의 경우 '수학/컴퓨터 관련' 수치가 '생명/물리/과학/농업'에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나. 교육·연구 여건의 미흡

###### 1) 교원 1인당 학생수

- 4년제 일반대학 수 : 1970년 71개교 → 2008년 174개교 (약 2.5배 증가)
- 학생 수 : 1970년 146,414명 → 2008년 1,943,437명 (약 13.3배 증가)
- 교수 수 : 1970년 7,779명 → 2008년 56,803명 (약 7.3배 증가)
- 교수 1인당 학생 수 : 1970년 18.8명 → 2008년 27.7명

<표 18> 교원1인당 학생수 비교(초·중·고등교육)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980	47.5	45.1	33.3	31.9	29.7
1985	38.3	40.0	31.0	37.7	35.7
1990	35.6	25.4	24.6	39.0	30.7
2005	25.1	19.4	15.1	75.6	40.7
2008	21.3	18.8	15.5	68.0	37.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조사」, 2008

## 2) 교수의 연구 여건

### 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개발비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총 연구개발비 중 공공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18.5%에서 '07년 13.1%로, 대학의 비중은 '98년 11.2%에서 '07년 10.7%로 감소

<표 19> 기관별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연구개발비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273,457	313,014
공공연구기관 (증감률,%)	20,320 (2.7)	21,602 (6.3)	25,526 (18.2)	26,264 (2.9)	29,646 (12.9)	31,929 (7.7)	34,971 (9.5)	41,024 (17.3)
대학 (증감률,%)	15,619 (9.1)	16,768 (7.4)	17,971 (7.2)	19,327 (7.5)	22,009 (13.9)	23,983 (9.0)	27,219 (13.5)	33,341 (22.5)
기업체 (증감률,%)	102,547 (20.5)	122,736 (19.7)	129,754 (5.7)	145,097 (11.8)	170,198 (17.3)	185,642 (9.1)	211,268 (13.8)	238,649 (13.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업부문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반면, 대학부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20> 기관별 연구개발비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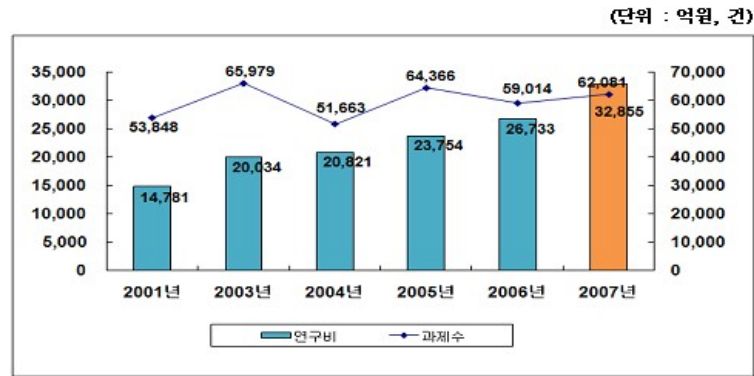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공공연구기관	13.4	16.3	11.4	13.3	18.0	13.0	23.0
대학	9.9	13.6	13.4	16.3	19.1	21.4	10.2
기업	76.7	70.1	75.2	70.4	62.9	65.7	66.8

\* 영국(03년)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04년도 현황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나)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 2007년 대학에 지원된 총 연구비는 6만2081과제에 3조2855억원으로 2006년 연구비 총액인 2조6733억원보다 22.9% 증가(2007)



주) 2002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는 시행되지 않았음

<그림 10> 대학 연구비 규모의 연도별 추이

-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5500만원으로 2006년보다 800만원 가량 증가
- 8개 학문분야별 연구비 백분비율은, 공학 49.0%, 자연과학 18.5%, 의약학 14.4%, 사회과학 5.8%, 농수해양학 4.8%, 인문학 4.1%, 예술체육학 1.9%, 복합학 1.6%



<그림 11> 학문 분야별 연구비 규모

- 대학별 연구비 총액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4229억원, 연세대학교 2137억원, 한국과학기술원 1326억원, 성균관대학교 1265억원, 고려대학교 1159억원 순
- 각 대학의 연구비 총액을 전체 교원 수로 나눈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순

<표 21> 교원 1인당 연구비 상위대학교

(단위 : 억, 초급원)

순위	대학명	전임교원수	연구비	1인당 연구비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1	광주과학기술원	89	49,435	555	1	1
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64	34,374	537	3	3
3	포항공과대학교	237	103,288	436	2	2
4	한국과학기술원	444	132,618	299	4	4
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7	34,752	236	5	5
6	서울대학교	1,821	422,938	232	6	6
7	인하대학교	801	103,231	129	8	10
8	금오공과대학교	191	22,726	118.9	-	-
9	연세대학교	1,798	213,736	118.8	11	11
10	서울시립대학교	350	38,379	110	14	17

※ 전임교원수가 50명 이하 대학은 순위에서 제외함

#### 다) 도서관 관련 인프라

<표 22> OECD 국가 대학도서관 비교

국가명	1개 관당 평균구독종수 (연속간행물)	학생 1인당 소장 책수(권)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유로)	자료구입비 순위
한국	723	44.2	67.9	15/21
미국	21,045	131.0	375.7	1/21
일본	1,001	92.6	328.4	3/21
영국	8,282	96.4	285.4	5/21

출전: 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지원 정책 방향." 2005 전국대학도서관대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주교육문화회관, 2005.6.29-30), p.23.

#### 3) 학생 1인당 경비

- 우리나라 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미국의 1/3, OECD평균의 1/2정도에 불과

<표 23> 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5)

(단위: PPP USD / %)

국가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506	24,370	12,326	7,606	11,512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43	58	41	36	40

자료: 2008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 4) 대학교육 재정 구성비

- 고등교육기관의 재원구조 취약



<표 24> 국·사립 고등교육기관 수입 구조(2007년 결산)

(단위 : %)

구분	등록금 수입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이월금	자산 및 부채수입	기타	계
국립대학	29.7	47.2	0.0	4.6	4.4	0.0	14.1	100.0
사립대학	57.2	8.0	5.5	2.7	9.8	7.7	9.1	100.0

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대학 결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국립대학 결산자료

○ 대학교육재정의 영세성

-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인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에 불과함. (2007)
- 외국의 경우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15~30% 수준으로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 있음.

<표 25> 대학재정 수입구조의 한미간 비교

구분	등록금 및 수강료	전입금 및 기부수입	국고보조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합계
한국(2003)	69.0	20.3	4.0	2.7	4.0	100
미국(2002-03)	34.0	136.	17.6	2.9	31.9	100

※자료: 교육부(2007), '08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 투자계획

**다. 대학간 기능 미분화·특성화 미흡**

-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일류 종합대학을 답습하여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분화되지 않고 기능이 중복되어 재정투자의 비효율 초래
- 특정 일류대학을 모델로 하는 동일한 유형의 양적 성장 추구로 대학교육의 획일성 초래
- 국·공·사립대학 간의 기능 미분화
- 대학 간 비교우위분야 집중육성을 통한 특성화노력 부족

**라. 질적 통제 장치 미흡**

- 교수실적 평가체제 미확립 및 경쟁의지 미약
- 교수·직원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 미비
- 학사관리의 엄정성 부족으로 입학은 어렵고 졸업은 쉬운 현상 만연
- 대학간에 학위수여 기준과 수준이 차이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

#### 마. 국내 대학평가체제의 미흡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한계
  - 대학별, 학문분야별 특성 반영 미흡
  - 투입(input) 중심이어서 교육의 질 평가에 소홀
  - 국제적인 비교 및 평가인정(accreditation)의 한계
- 평가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부족
  - 대학 및 사회의 신뢰도 및 국제적 공신력 미확보

#### 바. 대학 지배구조의 부작용

- 국립대 총장·학장 직선제에 따른 문제점
- 일부 사립대의 폐쇄적 운영과 비리

### 5.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

#### 가. 평등주의·획일주의 정책이념의 탈피

- 대학의 교육·연구 및 운영에 있어 수월성(excellence) 추구
- 개인간·조직간 경쟁을 조장하고 실적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있어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나. 규제완화·자율화

-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하고 권한·업무의 하부 위양
- 대학 및 하부조직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운영)과정에서의 자기통제(self-control) 강화

#### 다. 대학별 창의적 독자적 발전 노력 조장

- 대학공급초과 시대에는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비교우위 분야 또는 기능의 확보 필요
- 발전 모델과 내부역량에 따라 경쟁 가능한 영역을 선택하고 필요한 여건에 집중 투자 필요

## 라. 대학운영상의 책무성 강화

-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확보
- 대학의 책무성 확립은 외부통제 보다는 자율적 평가와 규율(self-control) 강화
- 대학행정이 및 관리자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윤리성 확보

## 마. 대학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 대학의 독자적 발전계획 추진, 기능분화, 유형별 특성화를 조장하는 평가로 전환
- 연구실적, 교육성과 등 산출(output)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
- 학생, 고용주, 재정지원자 등 수요자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
- 국제적 비교와 통용이 가능하도록 국제평가 기준으로 전환

## 6. 경쟁력 강화 전략

### 가. 대학 학생규모의 구조조정

- 학생정원 증원, 건물 신·증축 등 양적 확대위주의 발전 전략 지양
- 인력수급 전망에 부합하는 학생정원 조정
  - 제조업 분야 축소, 현대적 서비스업 분야 확대 등
- 최소 교육여건(입학생, 교수, 시설 등) 미비 대학에 대한 구조 조정

### 나. 대학간 기능분화·특성화

- 국립대와 사립대 기능의 보완적 분화
  - \*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분야, 대규모 투자소요분야, 전략적 육성분야 등에 치중
- 연구중심, 교육중심 대학의 기능 분화
  - \* 연구중심대학
    -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차세대 지도자 양성
    - 교수채용과 평가에서 연구역량과 연구실적을 중시
  - \* 교육중심대학
    - 충실한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할 우수한 인재 양성
    - 교수 채용·평가에서 교육역량과 강의의 질을 중시
- 전국중심대학과 지역중심대학의 기능 분화

\* 전국중심대학

- 전국차원 또는 국제차원에 필요한 인재 배출 및 연구활동에 주력
- 원천 기술개발연구 및 글로벌 교육에 역점

\* 지역중심대학

- 특정지역 및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산학협동형 연구개발에 주력
-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산학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실용적 교육 및 산업화가 용이한 응용 연구에 역점

○ 비교우위를 살린 특성화 대학 육성

- 백화점식 학과개설을 지양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20개 미만의 분야를 집중육성하는 대학 우선 지원
- 대학평가에 있어서도 각 대학의 특성화 노력 및 실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

**다. 학사조직의 유연성 제고**

- 자유전공제 도입, 복수·연합전공 확대, 학·석·박사 연계제도 확대 등
- 수요자 중심의 학사운영
- 학부(학과)간 장벽 제거
- 단과대, 학부(과) 평가를 통한 학사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제도화

**라. 대학교육의 질 향상**

-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 융합적 학문 육성을 위한 학위과정 및 학제적 연구소 증설
- 교육·연구 실적에 따른 연봉제, 성과급제 시행
-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의 강화

**마. 대학의 연구역량 증진**

- 우수연구인력의 확충
  - 정규교수외에 전임연구교수, 박사후 연구원, 실험·실습 조수 등
- 집중지원 연구분야 선정 및 연구의 수월성 위주 지원
- 연구시설·설비, 연구비 등 연구여건의 획기적 확충

#### **바. 대학행정의 자율성·합리성 제고**

-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입시제도 정착
- 의사결정권의 하부 위양 확대
- 평가·환류·차등보상 체제 확립

#### **사. 대학평가기구의 전문성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

- 대학관련 평가기능의 총괄·조정 기구 설치
- 국제적 평가기준의 도입 및 국제평가 인증 기능 수행
- 대학교육의 지속적 질 관리체제 확립

#### **아. 대학재정의 획기적 확충**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대학에 대한 세제상 지원 확대(기부금을 소득공제로부터 세액 공제로 전환 등)
- 대학의 자구적 노력에 비례한 정부지원금 확대(Backup the Success)제도화

#### **자. 대학지배구조 개혁**

- 사립대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장치 확립
- 여건과 희망에 따라 국립대의 법인화·책임운영 기관화

# 정책 추진 보고

발 표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

백정하 대학평가원장

# 정책추진보고 (I)

발 표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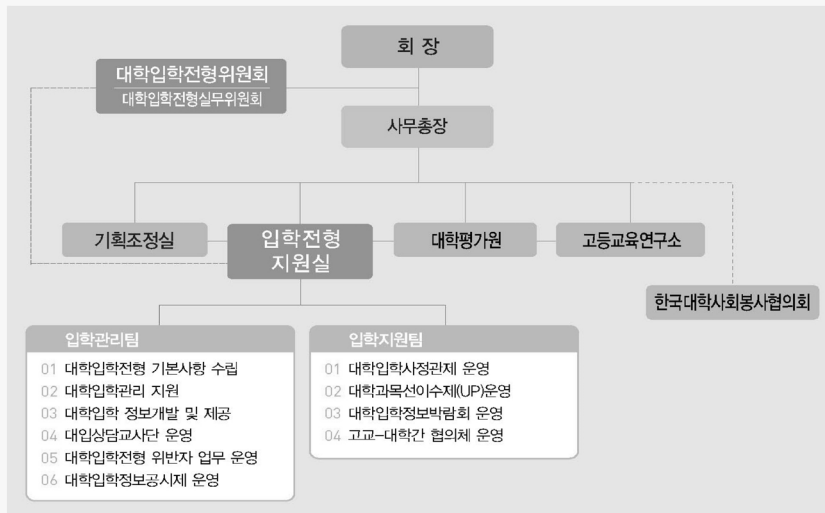
# 대학입학전형업무 주요 추진 사항

www.kcue.or.kr

2009. 7. 2

입학전형지원실

## 1. 조직 및 업무







##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 기본 방향

- ◎ 대학입학전형 자율화의 안정적 추진
- ◎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발전과 운영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입학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
- ◎ 정확하고 신속한 대학입학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 관계자,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
- ◎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학사 운영의 효율성 향상

### 추진 목표

- ◎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 대학입학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
- ◎ 수요자중심의 대입정보 제공
  - 대학입학관리 지원
  - 대학입학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 정보자료 개발 및 배포
  - 대입정보박람회 운영
  - 정보공시 자료 제공
- ◎ 대입전형 방식의 선진화 추진
  -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확대 지원
- ◎ 고교-대학간 연계교육 강화
  - 고교-대학간 협의체 운영
  - 대학과목선 이수제 정착 지원



## 3. 2009년 입학전형 주요 업무 추진 경과


일자	추진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과목선 이수제(UP) 겨울학기 운영</li> <li>○ 대입위반자 시스템 구축</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학년도 추가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발표</li> <li>○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2/27) - 대교협, 한국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li> <li>○ 대학윤리위원회 개최·운영(3회)</li> <li>○ 중앙상담교사단 워크숍 개최</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3/11)</li> <li>○ 2009학년도 최종 등록 현황 확인 및 정리</li> <li>○ 2010학년도 대입정보 119 자료 발간·배포</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교협-교과부 선진형 입학전형 워크숍 개최(4/3)</li> <li>○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개최</li> <li>○ 시도교육청 연계 대입설명회(대전, 대구)</li> <li>○ 입학사정관제 운영 사례발표회 및 입학사정관 직무연수</li> </ul>

일자	추진 내용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안) 공청회(5/22)</li> <li>○ 입학사정관 직무연수</li> <li>○ 시도교육청 연계 대입설명회(광주, 대구, 서울, 제주)</li> <li>○ 논술자료집 발간·배포</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 및 전형위원회 개최</li> <li>○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립 및 발표</li> <li>○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6/16)</li> <li>○ 입학사정관제 국제세미나 개최(6/5) 및 입학사정관 직무연수</li> <li>○ 2009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li> <li>○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특별전형 주요사항 발간·배포</li> <li>○ 시도교육청 연계 대입설명회(인천, 충남, 전북, 울산)</li> <li>○ 고교-대학 협의체 간담회 개최(6/26)</li> <li>-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li> </ul>


#### 4.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 추진 경과

일자	추진 내용
'08. 9.19(금)	○ 기본사항 수립 관련 T/F팀 발족
10월~12월	○ T/F팀 회의(* 집중 작업 포함)
12.31(수)	○ T/F팀 연구 결과 제출
'09. 3.11(수)	○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4.3(금)	○ 설문조사(대학 입학처장, 고교 진학상담교사)
4.10~4.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결과 분석</li> <li>○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안) 작성</li> </ul>
4.22(수)	○ 7차 실무위원회 상정 및 논의
4.28(화)	○ 제3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상정 및 심의



일자	추진 내용
5.11(월)	○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작성
5. 22(금)	○ 공청회 개최
6.18(목)	○ 제8차 대입전형실무위원회 상정 및 논의
6.24(수)	○ 제4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확정·발표

- 
-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시 중요 고려 사항
- 입학업무의 안정적 진행
    - 2010학년도와 큰 틀속에서 내용적 일관성 유지
  - 대입 3원칙(3불)의 기본 틀 유지
  - 200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 선전형 대입전형 도입 근거 확보 :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 전년도 기본사항과 비교한 주요 변경 내용

- (1) '대입전형 선진화' 관련 근거 조항 신설
-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의 명료화
- (3)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내용 추가
- (4) 선발 사정 방법과 관련한 조항의 추가 신설
-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자격기준 설정의 명료화 등



□ 2011학년도 기본사항의 주요 내용

**< 대학입학전형의 기본방향과 원칙 >**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자기소개서, 면접 결과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하여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지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전형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함(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09.2.27; 대교협·교과부 선진형 대입전형 워크숍, '09.4.3 ;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09.6.16)



### <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

- 대학은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험성적(학생부 교과, 수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자료(비교과활동 상황,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실시할 수 있음.
-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 고지하도록 함.



### <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

모집시기 구분	기간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비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 2010.9.8(수)-12.7(화) (91일)	2010.12.12(일)까지	2010.12.13(월)- 15(수)(3일)	학생부기준일: 2010.8.31(화)
정시모집	원서 접수	1) 가, 나, 가나군 : 2010.12.17(금) ~ 22(수) (6일간) 2)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0.12.18(토) ~ 23(목) (6일간)		
	"가" 군 "나" 군 "다" 군	<전형기간> 2010.12.27(월) ~ 2011.1.10(월)(15일) 2011.1.11(화)-20(목) (10일) 2011.1.21(금)-2.1(화) (12일)	·최초 : 2011.2.1(화)까지 ·미등록 총원 합격 : 2011.2.21(월)까지	·정시등록기간 : 2011.2.7(월) ~ 9(수) (3일) ·미등록 총원 등록 : 2011.2.22(화)까지
추가모집	2011.2.23(수)-28(월) (6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 이중등록 금지 >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 대학별 고사 >

-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 논술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08.2.4)).



**□ 주요 활동**

- 대학진학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참여**
  - 모집시기별 대입전형의 주요내용 및 특징분석, 대학입학 전형계획 및 주요사항 일람표, 대입정보 119, 논술길라잡이 등 다양한 정보자료집 발간에 참여
  - 진학지도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학진학정보센터, 대입정보박람회등을 통한 진학상담**
  - 대학진학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상담
  - 대입정보박람회
    - 1일 평균 접수자수 : 4천여건
    - 1일 평균 상담건수 : 23건 내외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진학상담 설명회**
  - EBS 활용 대국민 입시설명·상담 실시
  -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대입 설명회 실시
  - 1:1 맞춤형 진학 상담설명회 개최
  - 교교 견학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명회 개최
- 대입상담교사단 직무연수 실시를 통한 교사 역량강화 추진**
  - 대학입학전형 계획 및 향후 방향, 대학입학제도 및 교육정책 탐구, 진로 전망과 상담의 실제, 문임도의, 소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30시간에 걸친 연수프로그램 운영
  -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대입정보를 동료 교사에게 전달, 장학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교한장의 대입진학 진로상담의 전문성 제고
    - '03년부터 '08년도까지 총 960여명(매년 160여명의 상담교사에게 연수 실시
    - '09년도의 경우 180여명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실시 예정

**□ 최근 대입설명회 개최 현황**

일자	협력교육청	장소	참석인원
'09. 5.20(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청 교육정보관	600여명
5.27(수)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대 10.16기념관	1,000여명
5.28(목)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강당	500여명
5.29(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동국대 본관 중강당	400여명
5.30(토)	제주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200여명
6.16(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550여명
6.16(화)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원	600여명
6.17(수)	경기도교육청	아주대 올곡관	600여명





일자	협력교육청	장소	참석인원
6.17(수)	충북교육청	충북대 계산문화원	600여명
6.18(목)	전북교육청	교육문화회관	1,000여명
6.19(금)	충남교육청	순천향대 대강당	300여명
6.20(토)	경북교육청	포항공대 대강당	900여명
6.25(목)	경남교육청	대강당	500여명
6.26(금)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	600여명



## 7.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

### □ 추진 경과

일시	내 용
2004. 10	○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04.10.28)시 대입 전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 언급
2006. 8	○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08.8)]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운영 권장 내용이 반영
2006 ~	○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 입학사정관제 도입 장안, 정착모형 개발, 공정성 확보 방안 등
2007. 8	○ 대학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 10개교 선정·지원
2008. 8	○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40개 대학 선정

일시	내 용
2009. 2	○ 대통령 라디오 연설 :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점수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잠재력, 창의성,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제도로 개선 필요”
2009. 3	○ 정부, 주요 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
2009. 3	○ 주요 대학, 언론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 발표
2009. 4	○ 대교협, 정부와 ‘선진형 대입전형 워크숍’ 개최 - 24개 대학 총장, 장·차관 등 교과부 간부 14명 -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회
2009. 5	○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선정 공고 안내
2009. 6	○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 20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선정(선도, 계속, 지원)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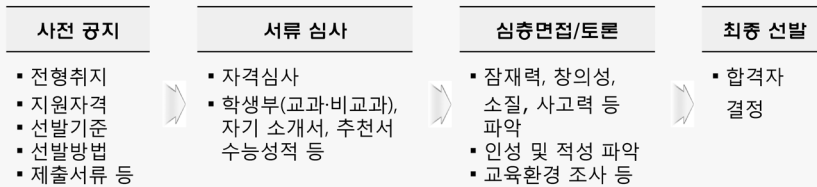
**< 입학사정관 >**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대입전형 전문가

**< 입학사정관제 >**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육성, 채용,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제도

**< 입학사정관 역할 >**  
 평시 :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자료 축적 및 관리, 효과적인 전형방법 연구·개발  
 전형기간 :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  
 입학 후 : 학생의 학업과 학교적응 지원 등 학생 사후관리



□ **공정성 확보 대책 : 공통전형절차 및 전형요소**



요소	주요 내용
학생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적 특성 : 사고력, 적성 및 역량, 표현력 등</li> <li>▪ 정의적 특성 : 인성, 흥미, 태도 등</li> <li>▪ 잠재력, 미래 성장가능성, 전공 적응 가능성 등</li> </ul>
대학 및 모집전형과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학이념 및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li> <li>▪ 리더십전형, 사회적 배려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li> </ul>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환경, 교육여건, 출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특성 등</li> </ul>

05



□ **공정성 확보 대책 : 개별대학 차원**

-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의 사전 고지 및 준수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요강 및 홍보자료 등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자체 관리·통제기구 설치
- '입학사정관 윤리규정 또는 윤리강령'의 제정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전형' 원칙 적용
-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또는 위탁) 교육 실시




□ **공정성 확보 대책 : 개별대학 차원**

- 입학사정관제 개요, 대학별 전형계획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입학사정관제 홈페이지 운영
-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정부지원대상 대학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 평가
- 입학사정관제 운영 컨설팅 실시
- 대입전형 관련 전문직 윤리 기본 틀을 마련하여 대학에 제공
- 입학사정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자율적인 윤리성·전문성 제고 노력 지원
- 고교-대학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 **입학사정관제 관련 주요 추진 일정(6,7월)**

일자	추진 내용
'09. 5.29(금)	○ 2009년 지원사업 계획서 접수 마감
6.3(수)	○ 2009년 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선도), 위촉
6.5(금)	○ 입학사정관 국제세미나
6.8(월)	○ 선도대학 선정 평가 1차 워크숍
6.12(금)~13(토)	○ 선도대학 선정 평가 * 6.12 오전 : 2차 워크숍
6.18(월)	○ 선도대학 선정 통보 ○ 평가위원(계속, 신규) 선정, 위촉
6.19(금)~25(목)	○ 자료 수정, 제출
6.22(월)~24(수)	○ 입학사정관 3차 직무연수



일자	추진 내용
6.26(금)	○ 계속 및 신규대학 선정평가 1차 워크숍
7.1(수)~3(금)	○ 계속 및 신규대학 선정평가 * 7.1 오전 : 2차 워크숍
7.6(월)	○ 정책위원회 개최
7.8(수)	○ 2009년 지원사업(계속, 신규) 선정결과 발표



**감사합니다**

# 정책추진보고 (Ⅱ)

발 표

백정하 대학평가원장

---



**목 차**

**I. 대학자체평가 개요**

- 1. 대학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근거
- 2. 대학자체평가의 의미와 목적
- 3. 대학의 자체평가 추진 현황
- 4. 대학자체평가 지원사업의 필요성

**II. 대학 자체평가 지원사업 내용**

- 1. 2009 대학자체평가 활성화 주요 사업
- 2. 세부 추진 과제
- 3.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평가지표 POOL

## I. 대학자체평가 개요

1

대학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근거

2

대학자체평가 의미와 목적

3

대학의 자체평가 추진 현황

4

대학자체평가 지원사업의 필요성

1

### 대학자체평가의 실시 배경 및 근거

#### →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 변화

##### ▣ 고등교육법 개정(2007.10)

- 고등교육법 제112조의2(평가) 신설
- 주요 내용 : 대학의 자체평가 및 공시 의무화, 외부인증평가 및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제 도입, 평가결과와 행정정 연계 추진 등

##### ▣ 대학교육정보공시제 실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2007.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2008.11)

##### ▣ 자체평가 수행 및 공시에 관한 규칙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및 그 결과 공시에 관한 규칙 제정(2008.9)



2

## 대학자체평가의 의미와 목적

### → 대학자체평가의 의미

▣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대학을 평가단위로 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2009년 12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시해야 함

※ 대학의 자체평가와 별개로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가 수행되며, 대교협은 추후 대학종합평가에 대해 공시 예정

2

## 대학자체평가의 의미와 목적

### → 대학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

-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제고
-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자기 점검 및 결과 공시체제 구축

▣ 대학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기 점검 체제 구축

- 대학의 설립별, 기능별, 특성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체제 구축

▣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및 발전 추구

-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자기 점검
- 성과지표 등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평가체제 정착

3

### 대학의 자체평가 추진 현황

→ 자체평가 준비상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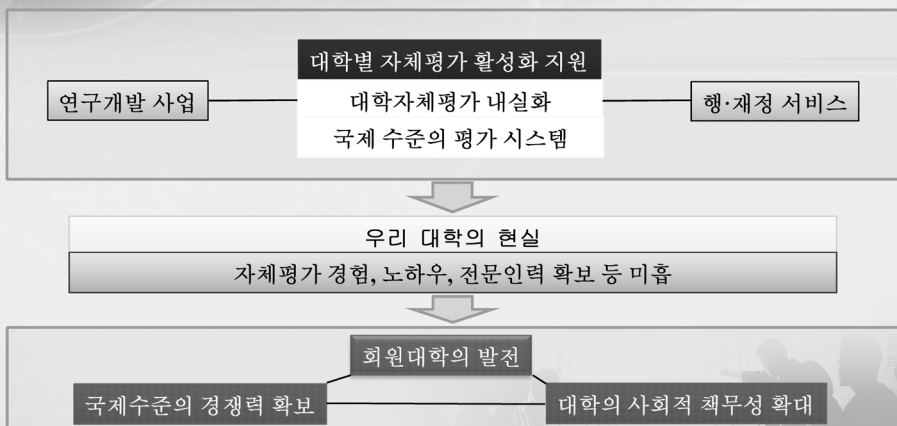
-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여부 : 73개교(34.8%)
- ▣ 전담조직 및 인력 확정 : 98개교(46.7%)
- ▣ 자체평가관련 내부 규정 정비 : 59개교(28.1%)
- ▣ 관련 위원회 조직 : 89개교(42.4%)

※ 설문조사 시기 : 2009년 6월 22일 현재

4

### 대학자체평가 지원사업의 필요성

→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는 대학자체평가 정착



## II. 대학자체평가 지원사업 내용

1

2009 대학자체평가 활성화 주요 사업

2

세부 추진 과제

3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평가지표 POOL

1

### 2009 대학자체평가 활성화 주요 사업

대분류	중분류	세부과제
대학 자체평가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학별 자체평가 지원	- 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 - 자체평가 모니터링 실시 - 대학자체평가 현장 컨설팅 실시 - 대학자체평가 결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정보 제공 서비스 전산시스템 개발 - 대학자체평가 지원 컨설팅 수행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대학 자체평가 담당자 및 평가위원 직무 연수
	- 정보 교류 활성화	- 대학별 우수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대학 자체평가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	- 대학 자체평가 담당자 및 평가위원 직무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대학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국제적 수준의 대학평가 지표 개발 연구	

## 2

### 세부 추진과제

#### → 과제 1 : 대학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자체평가 경험과 노하우 축적되지 못한 대학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별, 추진단계별 주요 과업과 과업 달성을 위한 점검 포인트 등을 포함한 ‘대학자체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2009년 5월 배포 완료

## 2

### 세부 추진 과제

#### → 과제 2 : 대학자체평가 모니터링 실시

- 대학별 자체평가 추진 상황에 대한 주요 항목 중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추진율, 우수사례, 현안 과제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은 물론 대학간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 등 강구
- 대학측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홈페이지 구축
- 5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중

2

## 세부 추진 과제

### → 과제 3 : 대학자체평가 현장컨설팅 실시

-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자체평가 컨설팅팀 구성, 자체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신청대학에 대한 현지방문 컨설팅 실시(2009년 약 30개 대학)
- 추진일정
  - [5월~6월] 컨설팅팀 구성→ 컨설팅팀 워크숍 실시
  - [7월] 현지방문 컨설팅 실시
  - [8월] 결과 보고회 개최(사례대학 컨설팅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2

## 세부 추진 과제

### → 과제 4 : 대학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 대학 현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자체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로 제공
- 대학정보공시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지표 pool을 구축하여 대학별 자체평가 모형과 평가기준 설정에 필요한 현황 통계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정보공시항목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 활용
- 평가지표별로 대학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제공
- 6월 정식 서비스 개시(<http://selfeval.kcue.or.kr>)
- ※ 국제 수준의 평가지표 추가 제공 추진 중

2

세부 추진 과제

→ 과제 5 : 대학자체평가 지원 컨설팅 연구 수행

- 개별대학에 대한 자체평가 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
  - 대학별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 개별 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영역과 정량지표로 구성된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대학자체평가 지표 POOL의 지표 활용)
- 추진일정
  - 23개 대학에 대한 현황 분석 작업 실시 중
  - 7~8월 중 대학별 결과 보고서 완료

2

세부 추진 과제

→ 과제 6 : 대학자체평가 담당자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 대학자체평가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2009년도 상반기부터 업무 담당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 실시
  - 2009년 3월 중순 : 전국 단위 연수 실시 (대학의 자체평가업무 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 대상)
  - 2009년 8월에 대학 특성별 3회 연수(국립, 사립, 교육 및 산업대 등): 세부 프로그램 추후 확정

2

## 세부 추진 과제

### → 과제 7 : 대학자체평가 정착을 위한 우수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 자체평가 우수대학의 사례 발굴 및 보급
- 2009년 상반기(5월) 및 하반기별(11월) 2회 개최
  - 5월: 준비 단계 우수대학 사례 발굴 및 보급
  - 12월: 자체평가결과 단계 우수대학 사례 발굴 및 보급
-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 참가자간 다양한 정보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예정

2

## 세부 추진 과제

### → 과제 8 : 대학자체평가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대학 자체평가 담당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 대학자체평가 추진 관련 직원과 평가위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업무별 장기 및 단기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기간: 5~7월
- 국제적 수준의 대학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
  - 국내 대학자체평가 결과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과제 수행
  - 주요국 및 주요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세부 산출 방식 등과 국제기구의 대학관련 통계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국내 대학자체평가지표와 호환되는 국제적 통용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대학에 보급
  -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며, 대학별로 다양한 수준의 자체평가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5~9월

2

세부 추진 과제

→ 과제 9 : 대학자체평가 결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 대학별로 진행된 2009년 자체평가사업에 대한 종합결과 분석 실시
- 조사결과는 2010년 사업 계획수립에 반영 및 활용
- 대학 관계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업 개선방안 적극 도출
- 11월~12월 중 실시

3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표 POOL

→ 지표 특성

- 지표 구분
  - 총 63개(국제화 5개 포함) : 핵심지표(5개), 기본지표(18개), 확장지표(40개)
- 지표별 통계 현황
  - 평균, 최소값, 최대값, 상하위 15% 점수 상하위 25% 점수 제공
- 통계 제공 분류 내용
  - 설립별(국공립, 사립)
  - 지역별(16개시도), 권역별(서울, 경기인천, 중부, 지방광역시, 강원, 호남, 영남)
  - 대학 특성별(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 규모별(5천명단위구분)



3

##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표 POOL

### 지표 구성 내용

영역	평가지표	구분
핵심(5개)	취업률(%)	핵심지표
	정규직취업률(%)	핵심지표
	취업자의 전공일치 취업률(%)	핵심지표
	재학생 충원율(%)	핵심지표
	전임교원 확보율(%)	핵심지표

3

##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표 POOL

영역	평가지표	구분
학생(13개)	전공 A학점 비율(%)	
	교양 A학점 비율(%)	
	교직 A학점 비율(%)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정원내 모집 신입생 충원율(%)	기본지표
	신입학 경쟁율 (%)	기본지표
	재학율(%)	기본지표
	중도탈락율(%)	기본지표
	외국인학생 비율(%)	국제화지표
	해외대학 학점교류 학생수 비율(%)	국제화지표
	기업인턴십 프로그램 학생 비율(%)	
	기업맞춤형학과학생비율(%)	
	기업맞춤형교육과정학생비율(%)	

3

###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표 POOL

영역	평가지표	구분
교육/연구성과 (12개)	진학률(%)	
	전임교원 1인당 논문_국내 실적(건)	기본지표
	전임교원 1인당 논문_국제 실적(건)	기본지표, 국제화지표
	전임교원 1인당 논문_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포함) 실적(건)	
	전임교원 1인당 논문_SCI급 실적(건)	국제화지표
	전임교원 1인당 지역서 실적(건)	기본지표
	전임교원 1인당 교내 연구비 수혜실적(천원)	기본지표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천원)	기본지표
	전임교수1인당 기술이전건수(건)	
	전임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전임교수1인당 특허출원(건)	
	전임교수 1인당 특허등록(건)	

3

### 자체평가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지표 POOL

영역	평가지표	구분
대학재정/교육비 (19개)	사립대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천원):사학진흥재단 제공	기본지표
	사립대학교 등록금 환원율(%):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사학진흥재단 제공	
	사립대등록금의존율(%:수입료를제외한등록금수입대비교비자금규모):사학진흥재단제공	
	사립대 교비자금 중 법인전입금(경상비, 법정전입금, 자산) 비율(%): 사학진흥재단 제공	
	사립대교비자금중인건비비율(%):사학진흥재단제공	
	국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천원)	
	국립대 세입 중 등록금 의존율(%)	
	국립대 세입 중 기부금 비율(%)	
	국립대 세출 중 인건비 비율(%)	
	장학금 수혜율(%)	기본지표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기본지표
	수혜자 1인당 장학금(천원)	
	교내 장학금 수혜 의존율(%)	
	교내 장학금 의존율(%)	
	수익용 기본자산 확보율(%)	기본지표
	당해 재정지원 수혜 금액(천원)	
	재정지원수혜사업실적(재학생 1인당 당해 연도 재정지원 금액:천원)	
	평균 등록금(천원)	
	등록금 인상률(%)	

영역	평가지표	구분
교육여건(12개)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편제경원 기준)(명)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 기준)(명)	기본지표
	전임교수 중 외국인 비율(%)	기본지표, 국제화지표
	전임교수 중 산업체 경력자 비율(%)	
	20명 미만 소규모 강좌 개설 비율(%)	기본지표
	100명 이상 대규모 강좌 개설 비율(%)	기본지표
	총 개설 강의 중 전임교원 담당 비율(%)	
	총개설강의중시간강사 담당 비율(%)	
	재학생 1인당 장서수(권)	
	교지확보율(%)	
	교사시설확보율(%)	
	기숙사 수용률(%) : 재학생 중 기숙사생 비율	
대학운영(2개)	직원 1인당 재학생 수(명)	기본지표
	직원 1인당 전임교원 수(명)	

지표 화면 예시

**1-1. 취업률**

교양유형 단계 지역별 단계 지역 단계 특성 단계 유무 단계

대상 대학수 : 2009년 대학

구분	2009
대학교	79.5
평균	69.1
최대값	100.0
상위15%	82.2
상위25%	77.5
하위25%	60.5
최소값	0.0

산출기준 : 2009. 4. 1 대학알리미 자료(2009년도 정통공시자료)  
 산출공식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 - (전학자+입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졸업자 - (전학자+입학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 취업자=정통공시 취업자(대학교별) + 비정규직(입사직) + 비정규직(입사직) + 비정규직(사기제, 일용직) + 비정규직(정규가용종사자) + 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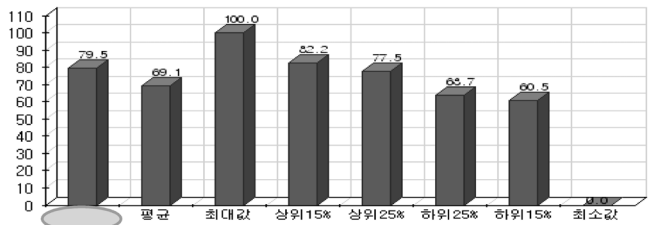


### 1. 핵심지표

#### 1-1. 취업률

설립구분-전체, 지역별-전체, 지역-전체, 특성-전체, 규모-전체

비교 대상 : 2007기 대학



구분	2008
대학교	79.5
평균	69.1
최대값	100.0
상위15%	82.2
상위25%	77.5
하위25%	63.7
하위15%	60.5
최소값	0.0

산출기준 : 2009. 4. 1 대학알리미 자료 (2008년도 정보공시자료)

산출공식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100 ; \* 취업자 = 정규직 + 정규직(대기발령) + 비정규직(임시직) + 비정규직(시간제, 일용직) + 비정규직(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

\* 캠퍼스 분리된 대학의 경우, 각 캠퍼스별 현황을 합산하여 재처리함.



감사합니다.

# 사 례 발 표

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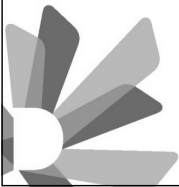
오영교 총장 · 김승용 교수(동국대)

---

# 동국대학교 자체평가 시스템

2009. 7. 2

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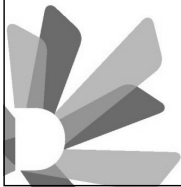


## 목차


dongguk  
UNIVERSITY 

- 1 비전 및 목표
- 2 자체평가 추진 개요
- 3 자체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기준
- 4 자체평가 결과
-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 6 통합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 자체평가 추진 개요



**비전 및 발전 전략**


  
dongguk UNIVERSITY

**비 전**

내부 고객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

**목 표**

2011년 5개 분야 국내 최고, 3개 분야 세계 최고수준 달성

특성화

분권화

국제화

108 Project

<div data-bbox="375 1585 603 1615" style="font-weight: bold;">新 경영 시스템 창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책임경영시스템 구축</li> <li>• 의사결정시스템 혁신</li> <li>•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li> <li>• 조직문화 혁신</li> </ul>	<div data-bbox="676 1585 916 1615" style="font-weight: bold;">교육·연구시스템 혁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혁신</li> <li>• 교육의 국제화</li> <li>• 우수교수 확충</li> <li>• 연구진흥 및 지원시스템혁신</li> </ul>	<div data-bbox="975 1585 1214 1615" style="font-weight: bold;">환경개선 및 재정확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연구환경 개선</li> <li>• 시설인프라 혁신</li> <li>• Fund Raising 역량 강화</li> <li>• 재원확보의 다변화</li> </ul>
----------------------------------------------------------------------------------------------------------------------------------------------------------------------------------------------------------------------	----------------------------------------------------------------------------------------------------------------------------------------------------------------------------------------------------------------------	------------------------------------------------------------------------------------------------------------------------------------------------------------------------------------------------------------------------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방향



### 108 Project

신경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  
시스템 혁신

환경개선 및  
재정확충

#### 분권화를 통한 단과대학 자율책임경영시스템 구축

- 총장-대학장(부서장) 경영계약 체결
-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경영시스템 구축

####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주의문화 정착

- 성과평가(기관/개인), 학과평가, 연구기관평가 시행
- BSC + MBO 방식의 성과평가
- 실시간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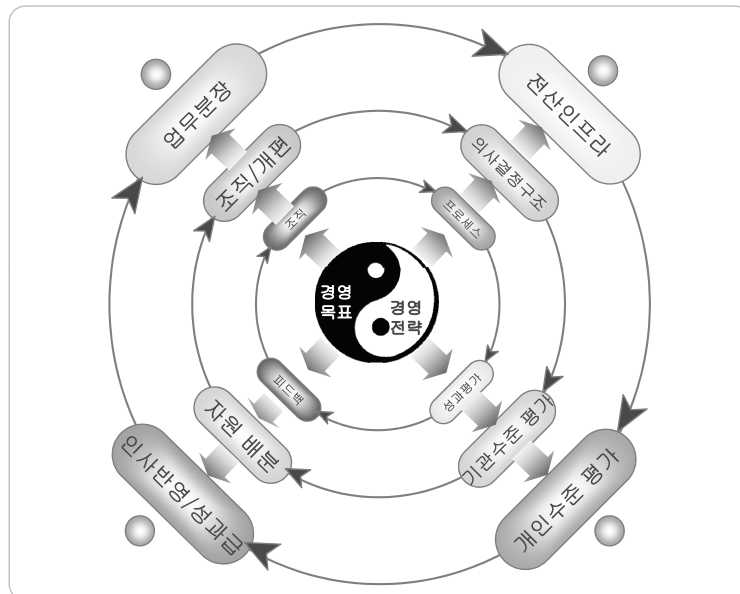
#### 고객만족(CS)경영 도입

- 고객관점 성과평가 시행(고객 만족도 조사)
-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최종 교육수요자에 정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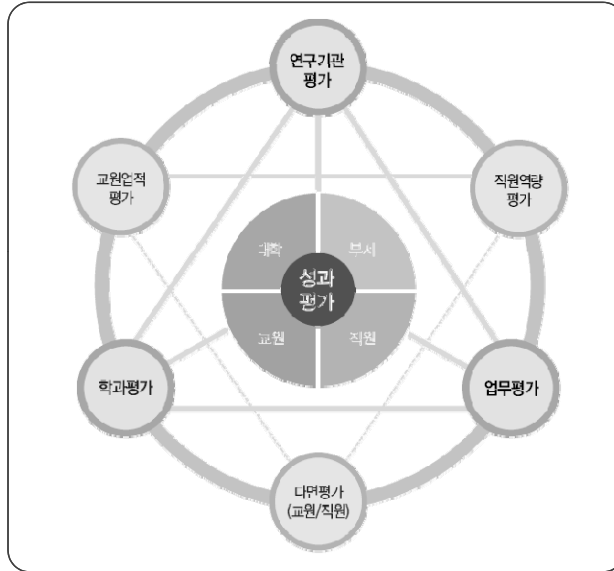
#### 평가에 근거한 차등보상 및 결과 활용

- 성과 평가 : 개인(성과급/인사고과 반영), 단과대학(자율예산)
- 학과 평가 : 학과 정원조정
- 연구소 평가 : 행/재정 지원, 단과대학 성과평가 결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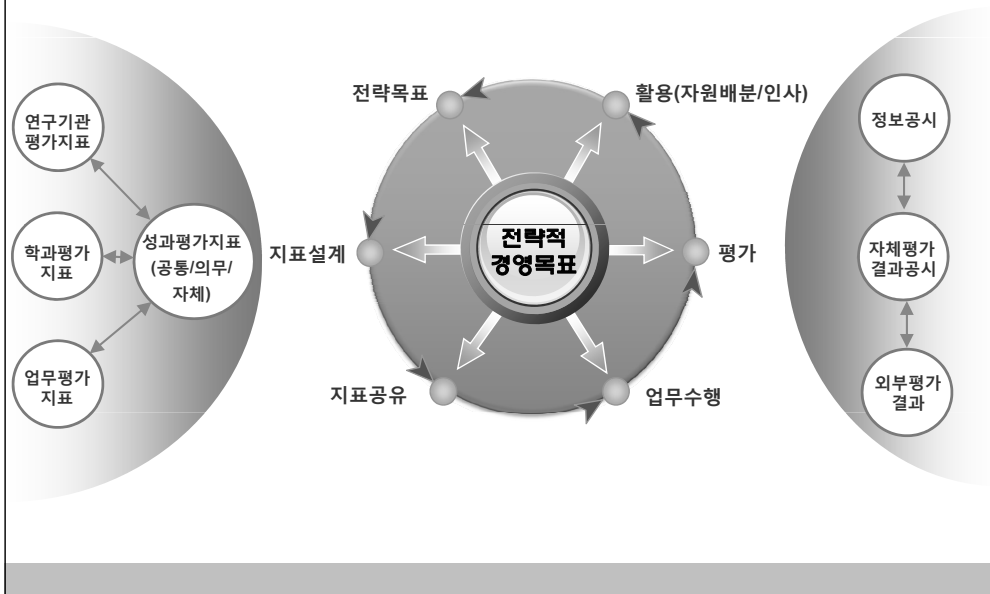
## 新 경영시스템의 네 가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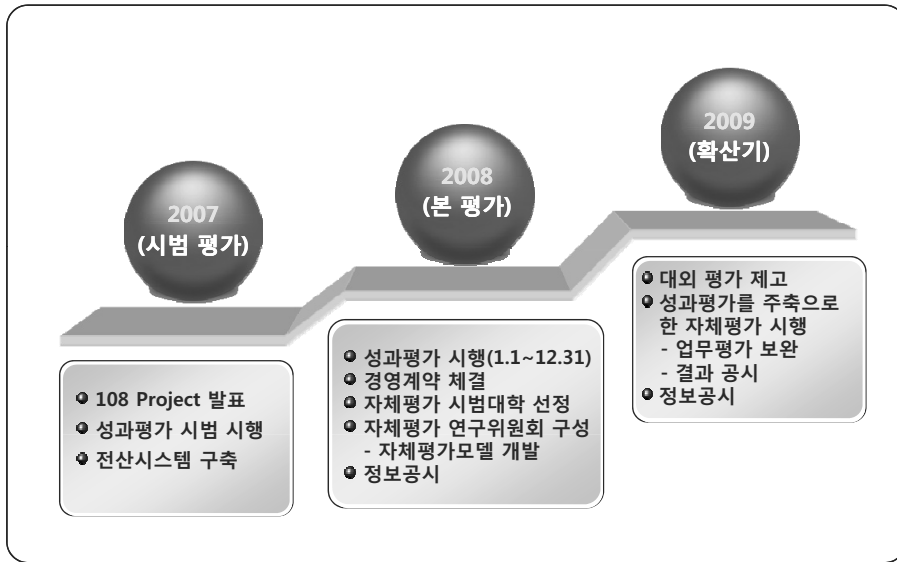


## 동국대학교 자체평가 영역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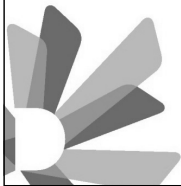


## 자체평가 프로세스





## 2009년 자체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및 기준





성과평가지스템 개요

운영 방향

- 대학 전체와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경영활동의 체계적 연계 강화
- 자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각종 외부평가 등 대학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성 담보

평가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평가 방향 및 원칙

과거

- 특정영역 평가
- 사후실적 평가
- 정기 평가
- 기관위주 평가
- “나눠먹기”식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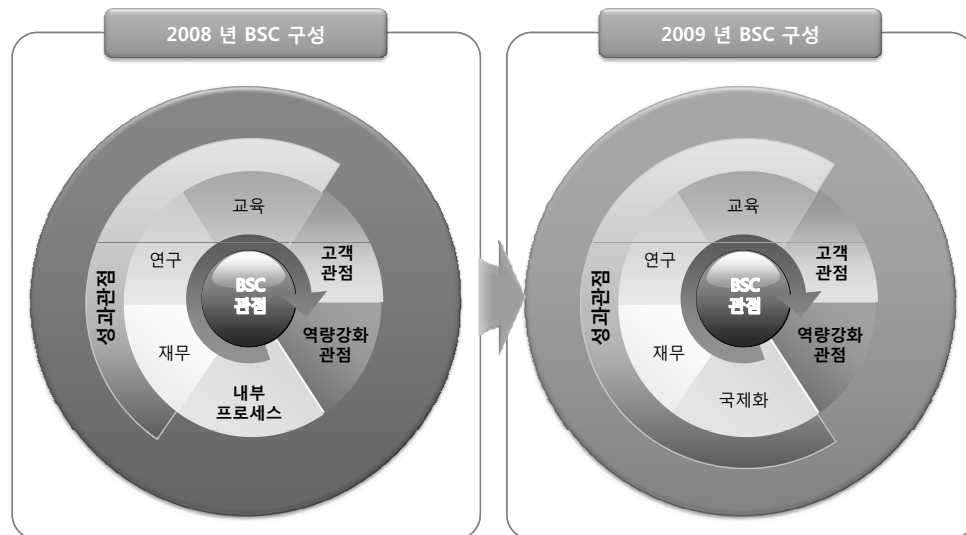
현재

- 복수영역 균형평가(BSC)
- 목표대비평가(MBO)
- 실시간 평가 (웹기반 IT 인프라)
- 기관-개인 수준 연계평가
- 차등 보상

## BSC기반의 지표구성 개념도



## BSC기반의 지표구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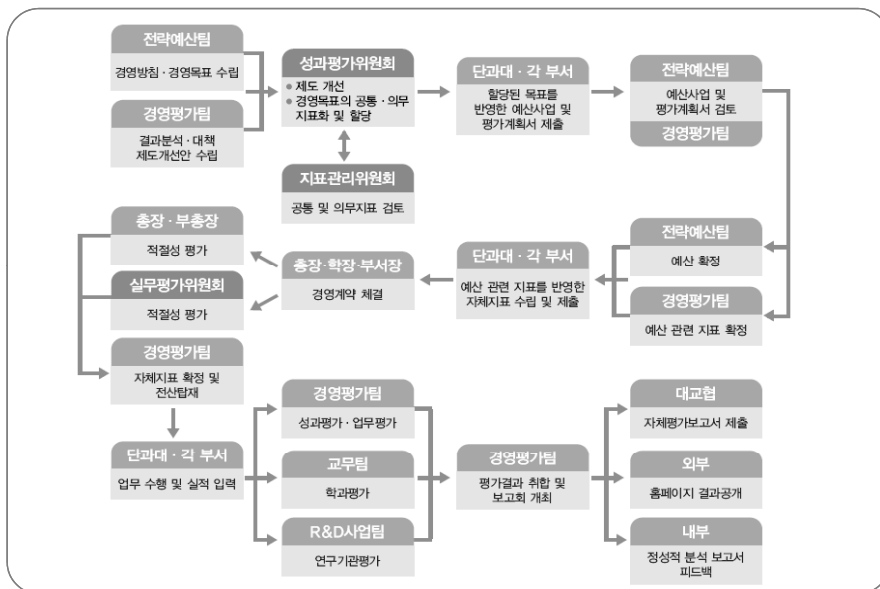


## 성과평가 관련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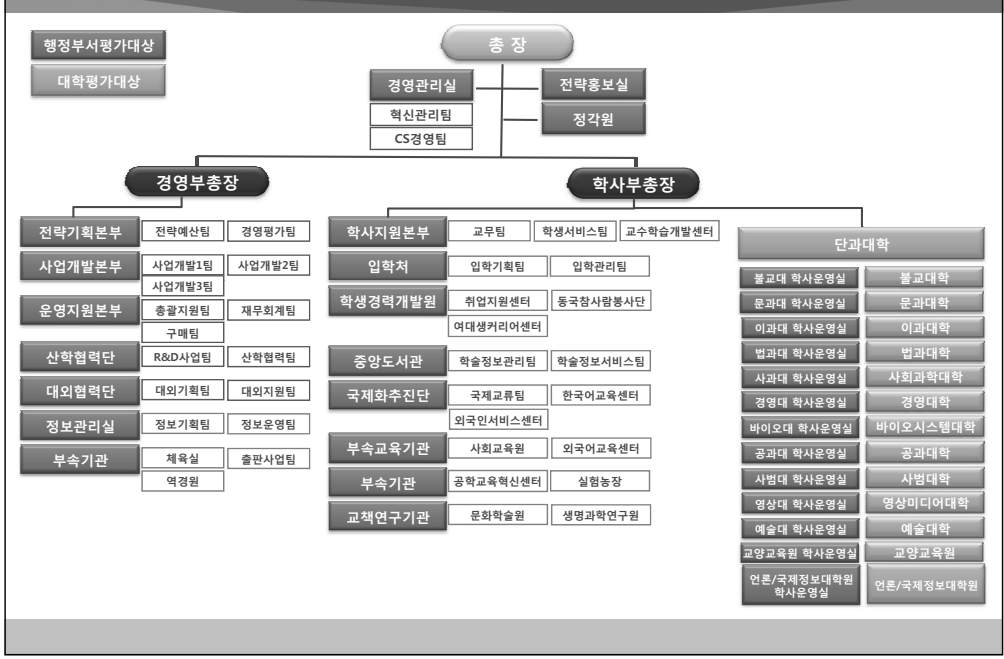


- 평가계획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 총장, 부총장, 각 본부장 (정책조정회의로 갈음 가능)
- 전체학교 관점에서 설정되는 평가지표, 가중치, 목표수준 및 할당 방법을 검토한 후 성과평가위원회에 상정
  - 총장, 부총장, 각 부서장, 각 학장, 각 팀(실)장
- 단위조직 평가지표, 목표수준, 가중치 검토
  - 평가결과 확인 및 검토
  - 정성지표에 대한 S등급 평가
  - 행정부서, 학사운영실, 부속기간의 팀·실장 약간 명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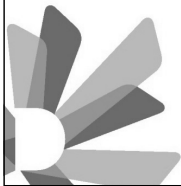
## 성과평가 상세 프로세스상에서의 기관별 역할



# 성과평가 대상 기관 현황



## 2009년 단과대학 평가



## 단과대학 평가대상 기관

### 평가기본단위

- 전임교원이 소속된 단과대학(원) / 교양교육원
- 평가대상 기관 : 총 12개

### 대상단위 현황

NO	대 학	NO	대 학
1	불교대학/불교대학원	7	바이오시스템대학
2	문과대학	8	공과대학
3	이과대학	9	사범대학/교육대학원
4	법과대학/법무대학원	10	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
5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	11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6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12	교양교육원

## 단과대학 평가지표 구성 개념도

### 2009년 단과대학 지표 구성





## 단과대학 평가지표 총괄표



평가지표 (가중치)	관점 및 영역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공통지표 (80)	성과 관점 (70)	교육 (20)	강의평가 (10)
			취업률 (10)
		연구 (20)	저명논문 게재 수 (10)
			외부지원 연구비 (10)
		국제화 (20)	영어강좌 수 (10)
			외국인 교수 수 (5)
			외국인 학생 수 (5)
		재무 (10)	예산집행의 적정성 (5)
	기금모금 실적 (5)		
		고객 관점 (5)	재학생 만족도 (3)
			NCSI (2)
		역량강화 관점 (5)	연구기관 평가 결과 (3)
		외부자원 활용실적 (2)	
자체지표 (20)	지표당 가중치 10 이하 (2개 이상 설정)		

## 단과대학 평가 : 지표관련 부서



단과대학 평가지표	관련 부서	
공통 지표	취업률	각 대학, 각 대학 학사운영실, 취업지원센터
	강의평가	각 대학, 교양교육원
	논문게재 수	각 대학, 교양교육원, R&D사업팀
	외부지원 연구비	각 대학, 교양교육원, R&D사업팀
	영어강좌 수	각 대학, 교무팀
	외국인 교수 수	각 대학, 교양교육원, 교무팀
	외국인 학생 수	각 대학, 입학관리팀
	기금모금 실적	각 대학, 각 대학 학사운영실,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대외협력단
	예산집행의 적정성	각 대학, 각 대학 학사운영실
	재학생 만족도, NCSI	각 대학, 교양교육원 (재학생 만족도만 적용)
	연구소 평가결과	각 대학
	외부자원 활용실적	각 대학, 각 대학 학사운영실, 취업지원센터
	자체 지표	각 대학, 각 대학 학사운영실,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기타

- 단과대학 평가지표의 관련 부서로 확정된 부서에서는 해당지표를 평가지표로 설정 (단, 지표에 따라 핵심성공요인(CSF)을 분석하여 별도의 지표를 설정 가능함)
- 경우에 따라 두 개의 지표를 모두 설정할 수 있음

## 단과대학 평가 : 가산점 항목 및 배점

### 정책 평가

#### 평가 대상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또는 부총장 지시사항
- 과제관리시스템상에서 정책예비과제로 등록된 과제 중 총장 또는 부총장이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과제
- 정책예비과제 등록 기준
  - 연초에 예상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부서 (단과대) 주요 과제
  - 부서 평가지표 관련 과제 및 일상적 과제는 불가
- 매년말 각 기관별로 선정 제출한 2개의 과제

#### 평가자 및 평가시기

- 총장/부총장이 매년 말 평가

#### 평가 방법

- 기관별 평가과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기관별 가점 산출 (최대 2점)

### 국책사업 지원 및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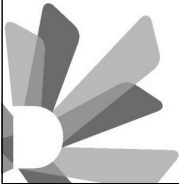
#### 평가 기준

- 대형국책사업 지원 1건당 0.1점, 수주 1건당 0.5점 가산점 부여
- 최대 가산점 2점
- 대형국책사업 기준 : 인문/사회/예체능 1억 이상, 자연 5억 이상

#### 평가결과 적용

- 단과대학 평가에만 적용(학사운영실 제외)

## 2009년 행정부서 평가



## 행정부서 평가 : 평가단위 및 평가지표 구성



### 평가 단위

구분	내용	비고
평가단위	● 일반직 직원이 배치된 팀(실)	전체부서 대상 평가

### 평가지표 구성

관점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고객	● 고객 만족도	8	
	● VOC답변 만족도	2	
성과	● 의무지표 ● 자체지표	70	최소 4개 이상 설정 (지표당 가중치 20 이하)
내부 프로세스	● 과제관리 이행도	7	
	● 업무혁신 실적	3	
역량강화	● 교육훈련 실적	10	

## 행정부서 평가 : 부서별 의무지표



### 취지 및 개요

- 대외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에 대해 각 부서별 전략적 관리를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 지표산식 : 중앙일보 평가산식 적용 원칙
- 아래 의무지표의 가중치와 목표치를 해당 부서에서 반영한 경우 적절성 100점 부여
- 취업률(취업지원센터), Outbound 교류학생수(국제교류팀) → 적절성 110점 부여

### 부서별 의무지표

부서	평가지표	가중치	목표치
전략예산팀	학생당 교육비	7 이상	
경영평가팀	대외평가 종합 순위	10 이상	15위
교무팀	교수확보율	7 이상	
	외국인 교수수	10 이상	50명
	영어강좌 수	10 이상	300강좌

## 행정부서 평가 : 부서별 의무지표



### 부서별 의무지표

부서	평가지표	가중치	목표치
R&D사업팀	국내 저명 논문 수 (인문사회계열)	7 이상	
	국제 저명 논문 수	10 이상	150편
	외부지원 연구비 (입금액 기준)	10 이상	300억원
	대형 국책사업 신규 수주 건수	7 이상	
산학협력팀	특허등록 실적	7 이상	
	기술이전료 수입 (입금액 기준)	10 이상	6억원
학생서비스팀	학생당 장학금 규모	7 이상	
	외부장학금 유치실적 (입금액 기준)	7 이상	
대외협력단	기금모금 실적 (입금액 기준)	10 이상	200억원
국제교류팀	Inbound 교류 학생수	10 이상	200명
	Outbound 교류 학생수	10 이상	2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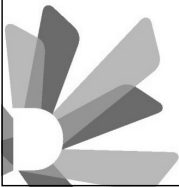
## 행정부서 평가 : 부서별 의무지표



### 부서별 의무지표

부서	평가지표	가중치	목표치
취업지원센터	취업률 <(전체+정규직)*0.5>	10 이상	71.2%
입학관리팀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이상	3.3%
법과대 학사운영실	사법시험 합격자 수	7 이상	
사과대 학사운영실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 수	7 이상	
경영대 학사운영실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7 이상	
	경영대학원(MBA) 총원율	7 이상	
공과대 학사운영실	변리사 합격자 수	7 이상	
사범대 학사운영실	임용고사 합격자 수	7 이상	
학사운영실 공통	예산집행 적정성	10	단과대 목표와 동일
	단과대학 공통지표 중 3개 지표 (취업률, 기금모금 실적, 외부자원활용실적)	각 5 - 10	단과대 목표와 동일

# 2009년 기관 평가 공통사항



## 평가지표 목표수준 설정 방법



### 목표수준 설정 구성 요소 및 방법

- A수준 (목표치)과 C수준 (기준치-현행수준) 을 먼저 결정
- A수준과 C수준의 설정 원칙: 1) 전략적 경영목표 2) 목표대학의 수준 3) 전년도 실적 등
- 기준치 설정시 현재 값 또는 전년 값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예상치 적용
- 정량지표 구간범위는 조정치와 구간범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설정
- 조정치 = (목표치 + 기준치) ÷ 2
- 구간범위 = 목표치 - 조정치
- 정성지표 목표수준 설정 : A등급까지만 설정
- 정성지표 S등급 판정 : 실무평가위원회 참여평가위원 수의 2/3 이상 S등급 판정시 S등급(100점) 부여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정성지표 (단계적 또는 과정적 지표)	기대이상의 목표 수준 또는 목표를 상당히 초과한 경우	기대 목표수준 (전략적 경영목표 와의 적절한 연계 수준 및 목표 대 학 수준)	기대 목표에 약간 미흡한 수준	전년도와 유사한 업무 달성 수준 또는 현재수준	전년도에 비해 업무 달성 수준이 하락한 경우 또는 현재보다 더 악화된 수준
정량지표 (수치화 가능지표)	목표 초과 달성 (<목표치+구간범 위>를 초과한 수 준)	기대 목표수준 (목표치 ~ 목표치 +구간범위)	목표가 약간 미달된 수준 (조정치 이상 ~ 목표치 미만)	현상 유지 (현재수준 이상 ~ 조정치 미만)	현상 악화 (현재수준 미만)

## 지표 적절성 평가



구분	내용
평가자 및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장, 부총장 : 50%</li> <li>실무평가위원회 : 50%</li> </ul>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지표의 대표성 : 부서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 정도</li> <li>평가지표 및 목표수준 난이도(도전성)</li> <li>부서평가지표의 구성원간 개인 가중치 배분의 적절성</li> </ul>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등급 절대평가 : S(100), A(95), B(90), C(85), D(80)</li> <li>평가자별 평가결과 평균치 반영 (단, 위원 소속 기관에 대한 평가 불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별 평가지표에도 적절성 점수 반영</li> <li>부서별 의무지표의 가중치 설정원칙과 목표치를 해당 부서에서 반영한 경우 : 적절성 100점</li> <li>취업률, Outbound 교류학생수 지표 : 적절성 110점</li> </ul>

### 지표 적절성 평가 절차

- (1차)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부서별 자체지표에 대한 검토
- (2차) 실무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부서별 지표 검토/보완
- (3차) 총장 및 부총장, 실무평가위원회 : 자체지표 적절성 평가

## 예산집행의 적정성 평가



### 예산집행의 적정성 평가

구분	내용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액예산제 적용을 받는 각 단과대학(원) 및 각 단과대학(원) 학사운영실</li> </ul>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과대학 : 5</li> <li>학사운영실 : 10</li> </ul>
평가요소/ 반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 절차의 적절성 (30%)</li> <li>예산집행의 적합성 (20%)</li> <li>부당한 집행 또는 예산낭비 여부 (40%)</li> <li>예산절감 노력 (10%)</li> </ul>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집행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li> <li>평가자별 평가결과 평균치 산출 → 해당 점수 반영</li> </ul>

### 예산집행의 적정성 평가표

평가요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 절차가 관련 규정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 비추어 잘 지켜졌는가?	30	24	18	12	6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예산집행 시기는 적절했는가?	20	16	12	8	4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가?	40	32	24	16	8
예산절감 노력이 있었는가 ?	10	8	6	4	2

정책 평가

평가 대상

-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총장 또는 부총장 지시사항
- 과제관리시스템상에서 정책예비과제로 등록된 과제 중 총장 또는 부총장이 정책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과제
- 등록정책예비과제 등록 기준
  - 연초에 예상하지 못하거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부서 (단과대) 주요 과제
  - 부서 평가지표 관련 과제 및 일상적 과제는 불가
- 매년말 각 기관별로 선정 제출한 2개의 과제

평가자 및 평가 시기

- 총장/부총장이 매년 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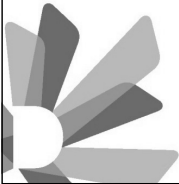
평가 방법

- 기관별 평가과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기관별 가점 산출 (최대 2점)

기 타

- 가산점제로 운영

2009년 교원 / 직원 개인평가



## 2009년 교원개인 평가지표



영역	항목	배점	평가방법
교육	강의평가	최대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당 3회 이상 실시 후 평점 산정</li> <li>◆ 수강생수에 따른 보정 및 영어강의 10% 가산점</li> </ul>
연구	국제논문, 국내논문	제한 없음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에 따름
	외부지원연구비		
교육 및 연구역량강화	교육역량강화실적	최대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역량 강화실적 : 교내외 교육역량관련 프로그램 1회 참석당 5점</li> <li>◆ 연구역량 강화실적 : 교내외 연구모임 (학술대회 포함) 1회 참석당 5점</li> </ul>
	연구역량강화실적		
기타	학사행정참여도	최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참여 각 5점</li> <li>◆ 입시지원 1일당 2점</li> <li>◆ 학교전체교수회의 1회 참석 3점</li> <li>◆ 강의계획서 입력기간준수 1회 2점</li> </ul>
	기금모금실적	제한 없음	◆ 1백만원 당 5점 가산점 부여
	국책사업 지원 및 수주 실적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사업 지원 참여 1건당 30점</li> <li>◆ 국책사업 수주 실적 1건당 100점</li> <li>◆ 국책사업 인정기준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별로 상대평가 적용</li> <li>◆ 5억 이상</li> </ul>

- ◆ 단과대학 공통지표 중 전체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사후 실적평가
- ◆ 교원평가는 교육, 연구, 교육 및 연구역량강화, 기타의 4영역으로 구성
- ◆ 교원평가의 점수는 개인별로 산출되며, 만점이 없음(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별로 상대평가 적용)
- ◆ 기금모금 실적, 국책사업지원 및 수주건수는 가산점 항목임

## 직원 개인평가 : 평가단위 및 평가지표 구성



### 평가 단위

- ◆ 모든 일반직 직원

### 평가지표 구성

관점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고객	◆ 전화 친절도	2	
성과	◆ 개인별 할당 지표(업무)	80	
내부프로세스	◆ 혁신 마일리지 점수	3	
역량강화	◆ 교육훈련 실적	15	

- ◆ 직원보직자 : 개인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부서의 평가점수와 리더십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용
- ◆ 직원 개인평가 지표구성의 각 관점별 비율과 세부지표 설정 및 가중치 등의 주요사항은 경영평가팀에서 검토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직원 개인평가 : 평가점수 구성



### 평가점수 구성

#### 일반

- 팀장 : 팀 실적 80%, 리더십 평가 20%
- 팀원 : 팀 실적 50%, 개인 실적 50%

#### 예외자

- 파견자 : 동일 직급자 평균 점수  $\pm \alpha$  (가감점)
- 겸직자 : 원 소속 부서 점수  $\pm \alpha$  (가감점)
- 특수직무자
  - 대상자 : 경영평가팀, 비서
  - 개인별 평가결과  $\pm \alpha$  (가감점)
- ◆ 가감점 평가 : 총장, 부총장으로 구성된 예외자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 $\pm 5$ 점 범위내)
- 전보자 :  $[(\text{전부서 근무월수}/\text{평가기간}) \times \text{전부서 점수}] + [(\text{현부서 근무월수}/\text{평가기간}) \times \text{현부서 점수}]$

## 직원 개인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 차등지급

- ◆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

### 인사 반영

- 인사반영 비율
  - 팀장 : 50% (팀실적)
  - 팀원 : 40% (팀실적 + 개인실적)
- 인사반영 방법 : 총괄지원팀에서 따로 정함

- 성과평가 결과활용 : 평가대상 개인에 대한 차등보상 및 인사에 활용
- 직원 성과급 차등지급 : 2008년 최대 500만원, 2009년은 최대 600만원 차이
- 9급 직원의 경우 평균연봉 대비 약 12.9%의 급여액 차이(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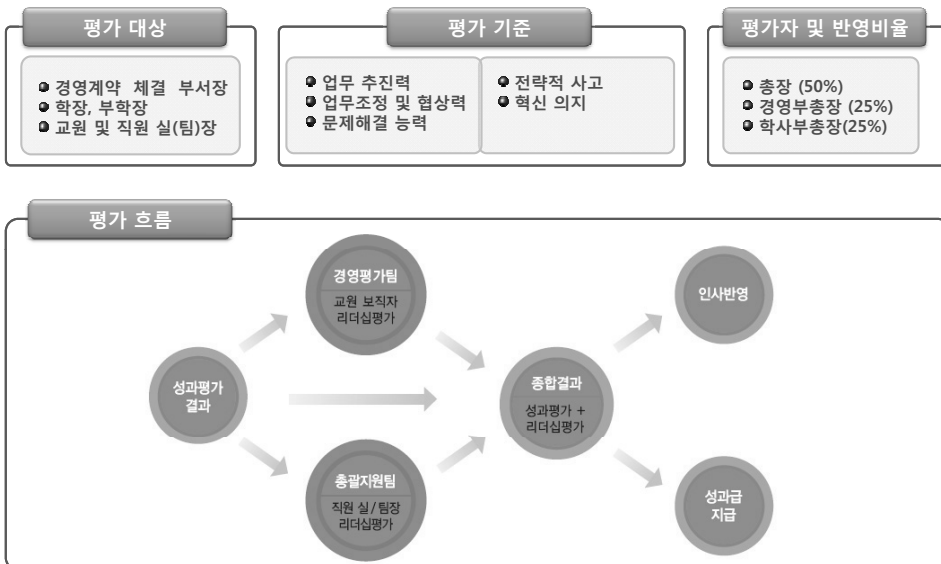
## 보직자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부총장	◆ 각 부총장 산하 부서장 점수 평균
부서장(정각원장 등) 교원 및 직원 실/팀장	● 해당 부서 평가점수 (80%) ● 리더십 평가 (20%)
학장, 교양교육원장, 부학(원)장	● 해당 대학 평가점수 (50%) ● 해당 학사운영실 평가점수 (30%) ● 리더십 평가 (20%)
학과주임교수	◆ 대학평가 40%, 개인평가 50%, 기여도 10%

- 교원보직자 : 개인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부서의 평가점수와 리더십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적용
- 리더십 평가 : 업무추진력, 업무조정 및 협상력, 문제해결 능력, 전략적 사고, 혁신의지 등을 정성평가 (평가자 : 총장, 부총장)
- 학과주임교수 평가요소에 단과대학 점수 반영비율 강화
  - 학장 업무 추진에 있어 학과주임교수의 적극협력 유도
  - 단과대학 평가와 개인평가 연계강화
  - 분권화 강화

## 리더십 평가





구분	지표 내용	비율	비고	
교책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구실적 + (연구교수, 비전임 교원, 연구원 연구실적) × 2</li> <li>연구소 1인당 평균 연구실적</li> </ul>	50%	20% 18%
		50%		
	외부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소 수주 연구비 + 소속 연구원 외부연구비 입금 실적</li> <li>연구소의 1인당 평균 신규 외부연구비 입금 실적</li> </ul>	50%	30% 27%
		50%		
	재정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간접비 입금액</li> <li>연구간접비 증가율</li> <li>연구소 운영 비용 (직원/전임연구원/조교/공간/교비)</li> </ul>	25% 25% 50%	30% 27%
학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진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 보유 여부</li> <li>등재지 보유 노력 (학술진흥재단 평가기준)</li> </ul>	50% 50%	20% 18%	
사업계획 이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대비 이행도 평가</li> </ul>		10%	

## 연구기관 평가 기준

구분	부설연구기관	교책연구기관																		
평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별 사후실적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별 목표대비실적 평가</li> </ul>																		
세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별 상대평점산출</li> <li>총점 기준 등급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등급 (S, A, B, C, D) 절대평가</li> </ul>																		
성과평가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과대학 평가에 공통지표로 연계</li> <li>지표 가중치는 별도 설정</li> <li>복수의 연구소를 보유한 대학의 경우 평균점수를 반영</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0%</td> <td>20%</td> <td>30%</td> <td>30%</td> <td>10%</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S	A	B	C	D	비율	10%	20%	30%	30%	10%	점수	100	90	80	7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행정부서평가 체계를 적용</li> <li>연구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부서장급 평가 요소 적용</li> <li>연구기관 평가지표를 성과관점에서의 평가 지표로 설정</li> <li>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도 설정</li> </ul>
	S	A	B	C	D															
비율	10%	20%	30%	30%	10%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연속 S등급 판정시 교책연구기관 승격 자격 부여</li> <li>2년 연속 D등급 판정시 지원 중단 (공간/조교 /연구원/교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관점 평가가 2년 연속 B 등급 미만인 경우 대학부설연구소로 지원변경</li> </ul>																		
평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li> </ul>																			

## 학과 평가 영역



## 학과 평가 기준 및 활용

### 취지

-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내부 학제에 반영

###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가중치	평가대상기간
입 학	입학성적	15	최근 3년간 자료 기준
	경쟁률	5	
학 생	재학률	40	
교 육	강의평가	10	
졸업생 진로	취업 및 진학률	20	
대학원	교수1인당 학생수	10	

### 결과 활용

정원 조정 대상	조정 내용	2008년 결과 활용
하위 1~4위 학과	정원 15% 하향 조정	정원 조정 대상학과의 정원 36명을 신설학과,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
하위 5~8위 학과	정원 10% 하향 조정	

## 업무평가 영역



## 업무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 조직 구조적/업무절차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성과평가시스템 보완

### 평가 영역

- ◆ 정보공시 항목 중 성과평가/학과평가/연구기관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서 조직구조적으로 혹은 업무절차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적인 효과성의 유지 및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업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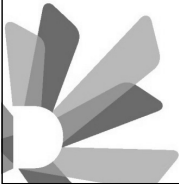
### 평가 기준

- ◆ 업무수행 준비단계, 수행과정, 결과물, 및 그 효과측면에 대해 수행 주체와 수행 내용 및 인프라를 기준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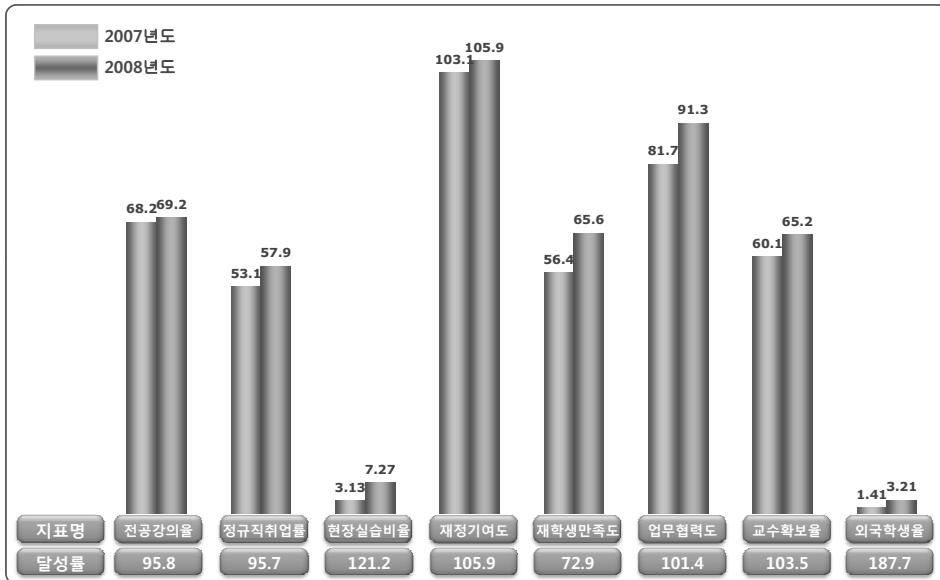
### 결과 활용

- ◆ 업무평가결과를 내부감사 포인트로 활용
- ◆ 행정부서의 성과평가결과 보정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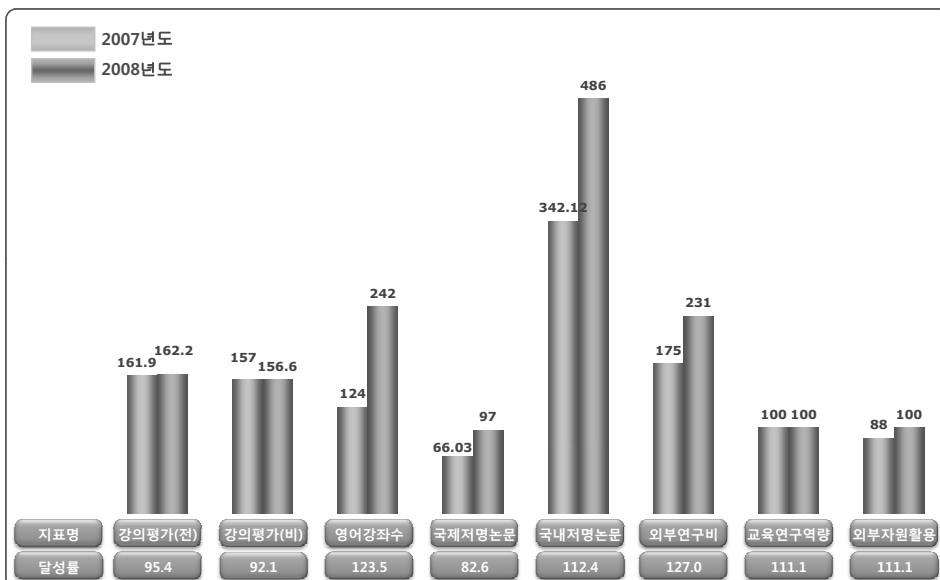
## 2008년 자체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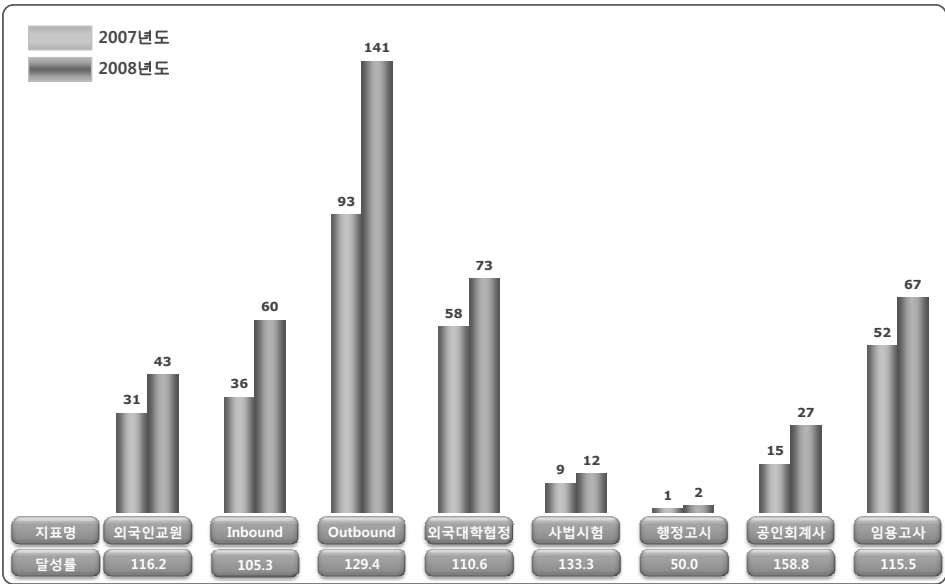
## 2007년 대비 2008년 주요지표 실적 및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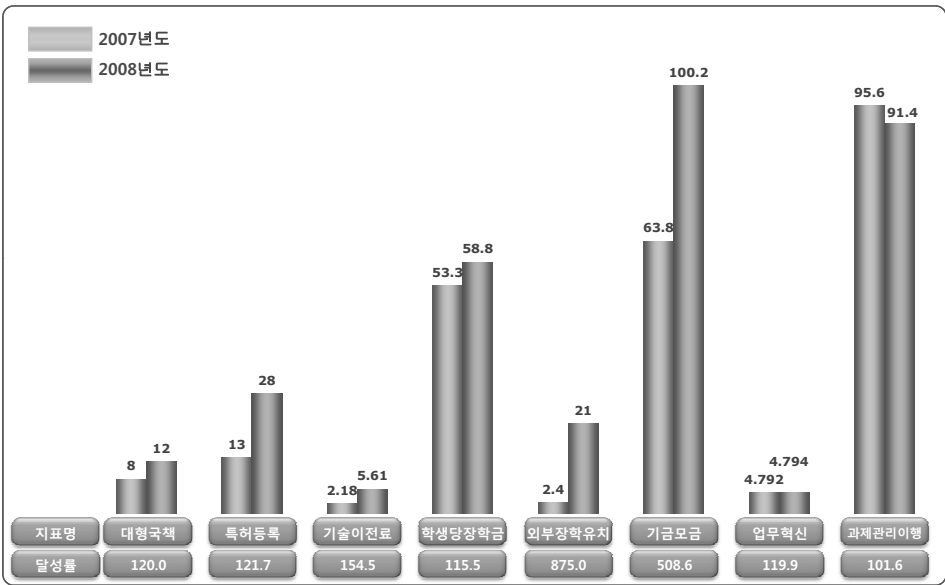
## 2007년 대비 2008년 주요지표 실적 및 달성률



### 2007년 대비 2008년 주요지표 실적 및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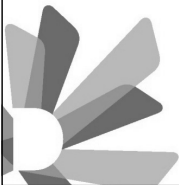


### 2007년 대비 2008년 주요지표 실적 및 달성률





## 2009년 자체평가 결과 활용 개요



### 2009년 성과급 지급 기준



#### 보직자

- 부서장, 팀장(교/직원)      해당 부서 평가(80%) + 리더십 평가(20%)
- 학장, 교양교육원장, 부학(원)장      해당 단과대학 평가(50%) + 학사운영실 평가(30%) + 리더십평가(20%)

#### 교원

- 개인 총점 기준 상대평가에 따른 비율별 차등 보상

#### 총점 산정 구성

일반 교원		학과주임교수	
개인 점수	60%	개인 점수	50%
단과대 점수	30%	단과대 점수	40%
개인의 단과대 기여도	10%	개인의 단과대 기여도	10%

#### 직원

- 총점(개인점수 50% + 팀점수 50%) 기준 상대평가에 따른 비율별 차등 보상

## 2009년 성과급 지급 비율 및 금액



### 교원

구분	A등급 (15%)	B등급 (35%)	C등급 (40%)	D등급 (10%)
일반 교원, 학과주임교수	1,200만원	600만원	200만원	0

※ 한 학기 연구년일 경우 : 해당 성과급의 50% 지급  
비정년트랙(외국인, 연구전담 제외)일 경우 : 해당 성과급의 80% 지급

### 직원

구분	A등급 (15%)	B등급 (35%)	C등급 (40%)	D등급 (10%)
일반직	600만원	300만원	100만원	0
기능직	200만원	100만원	30만원	0
특수직	200만원	100만원	30만원	0

### 보직자

구분	A등급 (15%)	B등급 (35%)	C등급 (40%)	D등급 (10%)
학장, 부서장급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0
부학장, 실/팀장급				

- ◆ 조교수의 경우 평균연봉 대비 약 22%의 급여액 차이
- ◆ 9급 직원의 경우 평균연봉 대비 약 15.5%의 급여액 차이

## 단과대학 성과평가 자율예산



###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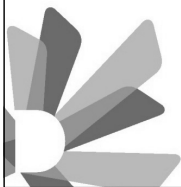
- 기준 : 전년도 단과대학 성과평가 결과 상위 6개 대학에 지급
- 금액 : 매년 별도로 정함

### 집행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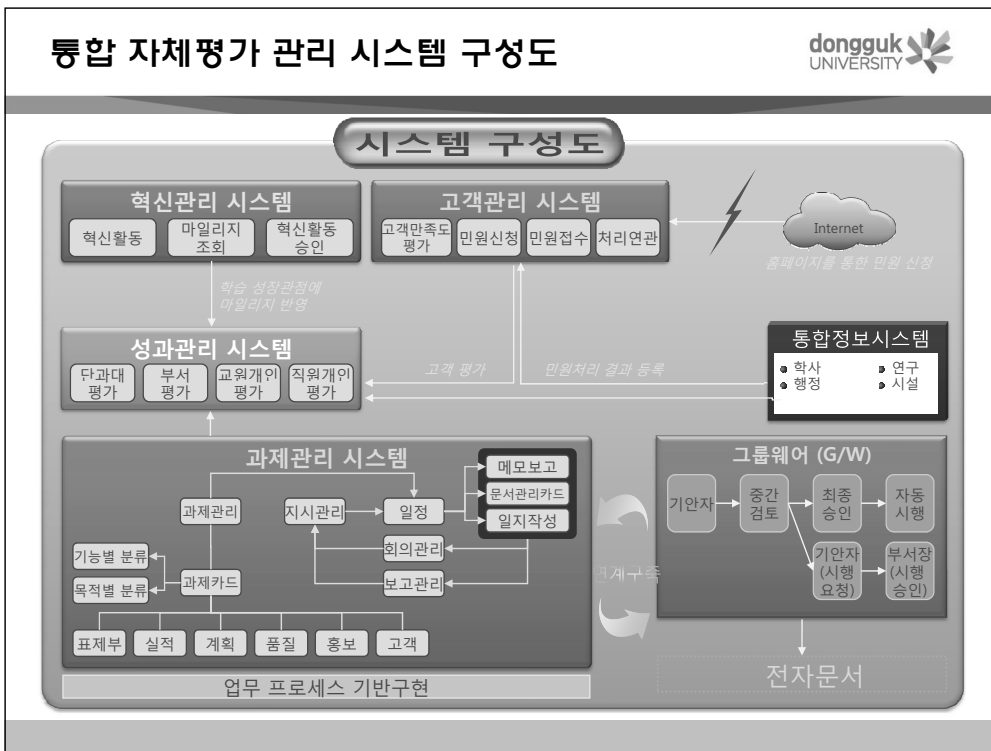
- 성과평가 지표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에 최소 70%이상 사용
- 학과별, 개인별 임의배분 불가
- 해당 단과대학은 추가 자율예산 집행 사업계획서를 작성, 자율집행
- 연말에 예산집행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함

- ◆ 매년 단과대학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자율예산을 지급
  - 2008년 : 상위 3개 대학에 3억 3천 만원 지급
  - 2009년 : 상위 6개 대학에 2억 8천 만원 지급

## 통합 자체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 자체평가 관리 시스템 구성도



# 성과관리 시스템



## 메인 화면

☆ ::BSC 성과관리 시스템::

기간: 경영평가팀 | 기준년월: 2008년 12월 | 분석주기: 년

가관성과 | 모니터링 | 목표/실적 | 적절성평가관리 | 기본정보 | 시스템관리 | 개인성과 | 성과보상

모니터링

- 모니터링
  - 기관별성과관리
  - 기관상세현황
  - 전략체계도
  - 기관성과비교
  - 기관별순위
  - 공통지표별기관순위
  - 지표안과관계
  - 지표적점상우수자료
  - 의견목록조회
  - 계시판

전체성과

고객 | 성과 | 내부프로세스 | 역량강화

• 순위: 단대(서울) | 행정(서울) | 단대(경주) | 행정(경주)

경영평가팀  
예송대학/영희예  
영대학원/영상중  
영학원/영학원  
산학협력팀  
전략예산팀  
총괄지원팀

• 전략순위: 상위 | 하위 | more

- 업무혁신 촉진: 100.00
- 교육역량 강화: 100.00
- 연구기관 평가 시행: 96.88
- 성과평가시스템 정착: 96.41
- 시스템간 연계 구축: 95.63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93.13

• 지표순위: 상위 | 하위 | more

- 업무혁신 실적(절적 평가): 100.00
- 업무혁신 실적(양적 평가): 100.00
- 교육훈련 실적: 100.00
- 피평가기관 지원활동 및 만족도: 96.88
- 교내 연구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96.88
- CS개선 실적: 96.60

사용매뉴얼 다운로드

# 성과관리 시스템



## 부서별 상세 현황 화면

기간: 경영평가팀 | 기준년월: 2008년 12월 | 분석주기: 년

가관성과 | 모니터링 | 목표/실적 | 적절성평가관리 | 기본정보 | 시스템관리 | 개인성과 | 성과보상

0 기관상세현황

종류	고객	성과	내부프로세스	역량강화
94.03	87.17	91.91	94.27	100.00

관점	전략목적	지표	가중치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적합성	점수	상태
고객	고객연속 개고	부서내부 고객 만족도	3	점	100	91	91.00	●	87.00	●
		부서간 업무 협력도	7	점	100	85	85.00	●	85.00	●
		전환 모니터링	4	점	100	93.91	93.91	●	93.91	●
성과	의학전문대학원	CS개선 실적	6	점	100	88.28	88.28	●	88.28	●
		교내 재정수입 확충	10	점	100	100.00	95.00	●	95.00	●
내부	업무관리의 체계...	교역의 예산조정 업무처...	5	%	90	95.39	100.00	●	93.75	●
		성과목표에 기초한 예산...	5	점	100	100.00	91.25	●	91.25	●
		교정비/인력관리 조...	10	점	100	100.00	92.50	●	92.50	●
		외부자원 확충을... 신규 대학재정지원 사업 ...	10	억원	20	25.94	100.00	96.88	●	96.88
내부	업무관리의 체계...	100프로젝트의 ... 100프로젝트 집중관리 ...	10	점	90	90.00	91.88	●	82.69	●
		평가자료의 생산... 정책평가(가산점)	0	점	1.5	01.50	01.50	●	01.50	●
내부	업무관리의 체계...	교재관리 이월도	10	점	100	91.4	91.40	●	91.40	●
		업무혁신 실적(절적 평가)	3	점	80	91.6	100.00	●	100.00	●

## 지표 정의서 화면

0 실적상세

기간	전략대상팀	기준년월	2008년 12월	분석주기	년
전략목적	외부자원 확충을 통한 대학의 자원 활용				
지표	신규 대학재정지원 사업 수(교육부)				
기간Rollup	LAST	가중치	10.00		
목표입력구분	구간단 A/B	지표단위	계량		
입력담당자	이현준	승인담당자	김병중		
단위	억원	목표주기	월	실적주기	월
특보	20억원	실적	25.94억원	합수	96.88%
실적산식	수준액				
특보산식	구간단	특보산식구분	구간단		
기준치	10억원(신규 국고보조금 외적액)				
기준치설명구분	기 국고보조금액(수도권대학특별지원금 25.5억, 국고지원금도 대학 8.9억)을 포함할 경우 34억원에 도달				
목적치	20억원(신규 국고보조금 외적액)				
목표치설명구분	기 국고보조금액(수도권대학특별지원금 25.5억, 국고지원금도 대학 8.9억)을 포함할 경우 34억원에 도달				
실적상세결과					

• 실적상세 세부항목

세부항목	입력구분	실적
수준액	시스템	25.94억원

•특보 구분

구간	사적구간(대상)	종료구간(대안)	환산점수
S	25	1000	100.00
A	20	25	90.00
B	15	20	80.00
C	10	15	70.00
D	0	10	60.00

# 성과관리 시스템



## 개인별 성과 화면

이성재(조장)

기간년도: 2009년 | 성명: 이성재

지표명	단위	가중치	목표	실적	점수
전화 모니터링	점	3	100	93	93.00
CS개선 실적	점	2	100	96.6	96.60
성과평가시스템 정적 만족도	%	12	90	100	96.25
피싱가방 지원활동 및 만족도	%	6	90	97.1	96.86
성과평가시스템과 인식시스템과...	%	6	90	98.5	95.63
대학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	12	93	97.9	93.13
보상일부 평가 종합순위 10위..	위	6	16	28	69.57

## 개인별 순위 및 보상 화면

이성재(조장)

기간년도: 2009년 | 캠퍼스구분: 서울 | 기간: 12월 | 성명: 이성재

구분: 직원 | 세부구분: 팀/실장 | 평가기간: 전체

기간	사번	성명	부처	합계	조정점수	최종점수	등급	금액
문화예술대학원, 예술대학 학사원..	94.09	94.09		94.09	A	600		
매일협력단 대학협력실	94.09	94.09		94.09	A	600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94.04	94.04		94.04	A	600		
전략기획본부 전략제안팀	94.03	94.03		94.03	A	600		
문명기획본부 출장지원팀	93.86	93.86		93.86	A	600		
CS경영팀	93.63	93.63		93.63	B	400		
안전관리팀	93.57	93.57		93.57	B	400		
학생서비스팀	93.15	93.15		93.15	B	400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93.14	93.14		93.14	B	400		
혁신관리팀	93.12	93.12		93.12	B	400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지원팀	92.81	92.81		92.81	B	400		
정보운영팀	92.55	92.55		92.55	B	400		

# 고객관리 시스템



## 메인 화면

DU-CRM VOC/CRM 관리 | 업무진행(추진) | 알림/통계 | 고객관리

고객의 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역별가방(시용) | 공지사항 | 진행중인 협의인

My Works

- 추진과제(화환) [2건]
- 우리팀VOC [2건]
- 우리팀Q&A [2건]
- 우리팀 최후반 [1건]

이행목표 VOC

목적	담당자	발생일	상태
입학금도 환불되는 건가..	민정민	2009-01-14	대기
등록금 환불 간차 안함..		2009-01-09	대기
등록금 인상관련		2009-01-09	대기
등록금 환불을 원합니다.		2009-01-09	대기
등록금 환불해드세요		2009-01-09	대기

우리학교VOC 우수사례

제목	등록자	추진일

CS광장

- 열린 총장실
- 동국 발전소
- 안전 소중한 동국
- CS WebZone 라일락(樂)

CS 라일락(樂) 행사

- 기독교서 기간 동 도시관 이용 안내 2008.10.10
- 시스템 장애 안내 2008.10.09
- 2009년 학생 건강관리요도 조사 결과 2008.10.09
- 2009년 장학 '우수 장학' 신청 안내 2008.11.21
- 유급교사 기간 동 도시관 이용 안내 2008.10.09

# 혁신/지식관리 시스템



메인 화면

혁신관리
나의제안 | 제안관리 | COP | 심사 | 현황관리

### 제안관리

제안명	시작기간	완료기간	상태
2008년 분권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2009-01-12	2009-01-21	진행
2008년 우수혁신실적 일반인평가			

#### 01제안

- 2008년 하반기 CS개선실적
- 2008년 하반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서울캠퍼스)
- 2008년 2분기 동국CS광고 정책제안 평가
- 2008년도 불필요한 일 제거실적(서울캠퍼스)
- CS 서비스프로세스 개선 경진대회(중주캠퍼스)
- 2008년도 상반기 CS개선실적(서울캠퍼스)
-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하기(중주캠퍼스)
- 불필요한 일 제거실적

#### 02제출처(지식유형)

제출처명	제출처	작성자	수정일	점수	사용자평가	조회수
1.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0.5	11	
2.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0.3	5	
3.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1.5	15	
4.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0.3	8	
5.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2	10	
6. 업무처리	대학	김정현	2009-01-07	1.2	8	

# 경영정보(DW) 통계 시스템



메인 화면

경영정보
중점과제 | 고등통계 | 정보공시 | 대외평가 | 학사분석 | 행정분석 | 업무분석 | 내포

### 정보공시

- 1. 교육과정 변경 및 운영
- 2. 학생의 생활 환경 및 안전
- 3. 취업률, 재학생수 등 학생
- 4.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6.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7.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8.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9.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10.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11.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12.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13. 졸업 후 진학 및 취업률

## 동국대학교 경영정보 시스템

#### 명시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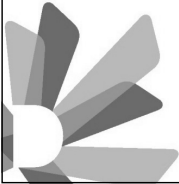
순번	보고사항	조회일자
1	대학입 재학생 현황	2009-01-13
2	신분변동현황	2009-01-13
3	8-4 재결산 현황(예산결산)	2009-01-13
4	공통기표성적현황	2009-01-13
5	학생현황	2009-01-13

#### 암시부 통계

순번	보고사항	조회일자
1	1) 재학생수	2009-01-13
2	1) 총(전)장 및 전임교원현황	2009-01-13
3	1) 총(전)장 및 전임교원현황, 상세	2009-01-13
4	1) 총(전)장 및 전임교원현황	2009-01-13
5	1) 재학생 재학생수	2009-01-13

- 98 -

감사합니다



# 초 청 특 강

발 표

이희성 사장 [인텔코리아]

---



# 특별위원회별 분과회의

발 표	I.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자문교수 허종렬(서울교대)
	II.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자문교수 송기창(숙명여대)
	III.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자문교수 정용상(동국대) · 장재욱(중앙대)
	IV.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자문교수 반상진(전북대)
	V. 사학법대책위원회 자문교수 이시우(서울여대)
	VI.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자문교수 배호순(서울여대)
	VII. 국제화대책위원회 자문교수 권선국(경북대)

# I.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좌 장 노동일 위원장(경북대 총장)
- 발 표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 토 론 강창석 위원(동의대 총장)  
김윤수 위원(전남대 총장)

# 고등교육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의 논의동향

허종렬(서울교대)

## I. 당초 계획과 그동안의 성과, 검토 과제

### 1.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자율화 추진 계획

지난 1월 15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자율화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의 지속적 운영

- 필요시 실무 소위원회 구성 운영 (2009. 1. -3월)
- 회원대학 의견 수렴 및 공청회 (2009. 4월)

#### 정부와 개정 내용 및 절차에 관한 협의 (2009. 5월)

#### 이사회 상정 (2009. 6월)

####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발표 (2009. 7월)

#### 국회 입법 활동 (2009. 7월 이후)

### 2. 성과와 검토 과제

본래 위원회에서 계획한 3월중의 소위 구성, 4월중의 공청회 등을 갖는 것과 6월중의 이사회 등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의 보조 등을 고려하여 일단 유보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1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소개한 개

정안(원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5월 중에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교수가 작성하고 대교협 사무국에서 수정, 보완한 설문으로 회원교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5월 27일 정리).

따라서 이번 7월중 하계대학 총장세미나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다룰 과제는 결국 1월 중에 소개한 대학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방안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회원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전체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제기된 개정안들과 언론에서의 관련 기사, 최근 학계의 연구 성과 등을 같이 검토하여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활용하도록 한다.

## II. 1월 15일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확인

### 1. 그동안의 개정안 작성의 경위

본 위원회가 1월 15일 총회에 발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선행의 학계연구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대교협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세 차례에 걸친 소관 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가 대개 표출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각 대학들이 공히 받아들일만한 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정리한 것이었다.

법안 작성 과정에서 국회에 제안된 고등교육법 관련 법안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관련 문건이 소개되었으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다(예컨대, 2008.11.6의 국회교과위에 제안된 의원입법안 중 산업대학 폐지건이나 2008.11.28의 정부 제출법안 중에 학칙 보고제 폐지건이 그것들임).

혹시 이외에도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17대 국회 관련 법안 58건을 일일이 검색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상당수 법안들은 이미 반영하였거나 이것과 무관하거나 극히 지엽적인 것들이었다.

개정안은 모든 4년제 대학에 공통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등의 특유 과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자율화와 관련하여 각 유형의 대학들에 특유한 사항들은 그 해당 대학들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 2. 1월 15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난 1월 15일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제1조 (목적)의 수정 : 법의 목적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시함.

제5조 (지도감독)의 수정 :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적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은 대학 자율화와 상치되는 측면이 있음.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법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제6조 (학교규칙등)의 수정 : 학칙제정 및 개정시 중요사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예의 보고제 폐지.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대학의 규칙제정권, 학사운영의 자율권 등을 폭넓게 인정함.

#### 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의 의무화

제7조(교육재정)의 수정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함.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제7조의2(수익사업 등)의 신설 : 대학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장려함.

#### 다. 대학운영에서의 구체적인 자율성 보장

제15조 (교직원의 임무)의 수정 : 교수중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수 뿐 아니라 강의전담교수, 또는 산학협력만을 담당하는 교수도 둘 수 있도록 함.

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의 수정 :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등을 학칙에 위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제20조 (학년도등)의 수정 :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컨대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함.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의 수정 : 현행법상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만 근거규정만 있으므로, 국내대학간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함.

### Ⅲ. 개정안에 대한 회원교 설문 결과 분석

#### 1. 설문 내용과 조사 과정

대교협 사무국은 지난 5월 중 자문교수의 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회원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회원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하에서 이 점을 본다.

## 2. 응답자 현황

전체 201개 회원교(2009.1.15 현재) 중 설립별, 규모별, 지역별, 유형별 응답자는 56개교로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설립별	국·공립	17(30.4%)	지역별	수도권	15(26.8%)
	사립	39(69.6%)		비수도권	41(73.2%)
	전체	56(100%)		전체	56(100.0%)
규모별	대규모	23(41.1%)	유형별	일반대	51(91.1%)
	중소규모	33(58.9%)		교육대	4(7.1%)
	전체	56(100.0%)		산업대	1(1.8%)
전체				56(100.0%)	

## 3. 조사결과

(1) 대학의 자율성 개념의 다의성과 현재의 관심사

먼저 대학의 자율성의 개념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대학의 자율성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이것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교육과 연구에서의 수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복수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응답이 나왔다.

문 항	빈도(응답률)
①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혹은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	29(51.8%)
②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총장의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 보장	42(75.0%)
③ 학교법인 혹은 총장의 학교 운영에 교수회 혹은 대학평의원회 등의 참여 보장	8(14.3%)

전체적으로는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총장의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 보장’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국립대학 혹은 학교법인의 자율성도 중시하고 있다. 학내에서의 구성원 참여 관해서는 신중하다.

이하 설립유형 등에 따른 응답결과는 아래 표들과 같다.

(1)-1.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혹은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복수응답)

‘국가로부터 국립대학 혹은 학교법인의 자율성 보장’에 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 대규모와 중소규모, 수도권과 지방 등에서 모두 과반수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교대가 특히 지지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9	17	52.94
	사립	20	39	51.28
규모	대규모	10	23	43.48
	중소규모	19	33	57.58
지역	수도권	8	15	53.33
	비수도권	21	41	51.22
대학 유형	일반대	26	51	50.98
	교육대	3	4	75.00
	산업대	0	1	0.00

(1)-2.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총장의 학교 운영상 자율성 보장(복수응답)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총장의 학교 운영상 자율성 보장’에 관해서는 특히 사립, 대규모, 수도권일수록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10	17	58.82
	사립	32	39	82.05
규모	대규모	19	23	82.61
	중소규모	23	33	69.70
지역	수도권	14	15	93.33
	비수도권	28	41	68.29
대학 유형	일반대	39	51	76.47
	교육대	2	4	50.00
	산업대	1	1	100.00

(1)-3. 학교법인 혹은 총장의 학교 운영에 교수회 혹은 대학평의원회 등의 참여 보장(복수응답)

‘학교법인 혹은 총장의 학교 운영에 교수회 혹은 대학평의위원회 등의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3	17	17.65
	사립	5	39	12.82
규모	대규모	5	23	21.74
	중소규모	3	33	9.09
지역	수도권	3	15	20.00
	비수도권	5	41	12.20
대학 유형	일반대	7	51	13.73
	교육대	0	4	0.00
	산업대	1	1	100.00

(2)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법령의 규제 정도에 대한 인식

대학들이 학생선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회원교의 인식 정도를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 선발방법) 시행령이 학생선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응답률)	2(3.6%)	13(23.2%)	21(37.5%)	19(33.9%)	1(1.8%)	56(100.0%)

이 질문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원교들이 언론 등에 토해내는 표현을 빌면 이런 부분에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이 26.8%, 그렇다고 본 응답이 35.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7.5%이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소극적 부정으로도 들리지만 달리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경우 많이 하는 답변이다.



아래 표는 설립유형 등에 따른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분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0 0.0%	3 5.4%	7 12.5%	7 12.5%	0 0.0%	17 30.4%
	사립	2 3.6%	10 17.6%	14 25.0%	12 21.4%	1 1.8%	39 69.6%
규모	대규모	2 3.6%	6 10.7%	11 19.6%	4 7.1%	0 0.0%	23 41.1%
	중소규모	0 0.0%	7 12.5%	10 17.9%	15 26.8%	1 1.8%	33 58.9%
지역	수도권	1 1.8%	5 8.9%	7 12.5%	2 3.6%	0 0.0%	15 26.8%
	비수도권	1 1.8%	8 14.3%	14 25.0%	17 30.4%	1 1.8%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2 3.6%	12 21.4%	19 33.9%	17 30.4%	1 1.8%	51 91.1%
	교육대	0 0.0%	1 1.8%	1 1.8%	2 3.6%	0 0.0%	4 7.1%
	산업대	0 0.0%	0 0.0%	1 1.8%	0 0.0%	0 0.0%	1 1.8%
계		2 3.6	13 23.2	21 37.5	19 33.9	1 1.8	56 100.0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 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일수록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 (3) 대학입시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회원교에서는 대학 입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의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① 큰틀유지하되 구체 사항은 대학정관/학 칙관련 내규	② 큰틀유지하되 구체 사항은 대학에 일임	③ ②항 찬성,교과부장 관 시행 수능폐지, 대학일임	무응답	전체
빈도 (응답률)	22(39.3%)	30(53.6%)	1(1.8%)	3(5.4%)	55(100.0%)

여기에서 큰 틀이란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관련 조항에 규정된 학생부, 수능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시험고사 및 교과적성, 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 외 자료 등을 활용한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동법시행령은 논술 고사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이 점 역시 예상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 즉, 대학입시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대학에 일임하거나 대학 정관 혹은 학칙이나 내규에 맡길 것을 희망하고 있다. 수능을 폐지하고 완전히 대학에 일임하는 안에 찬성한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아래 표는 설립별 등에 따른 응답의 상이성을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과 사립, 대규모와 중소규모,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비슷한 응답을 하고 있다. 대학 역시 수능 폐지에 따른 입시 혼란을 일단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개혁과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대학측의 사전 준비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구 분		① 큰틀유지하되 구체사항은 대학정관/학칙관련 내규	② 큰틀유지하되 구체사항은 대학에 일임	③ ②항찬성,교과부장 관시행수능폐지, 대학일임	무응답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6 10.7%	10 17.9%	0 0.0%	1 1.8%	17 30.4%
	사립	16 28.6%	20 35.7%	1 1.8%	2 3.6%	39 69.9%
규모	대규모	8 14.3%	13 23.2%	1 1.8%	1 1.8%	23 41.1%
	중소규모	14 25.0%	17 30.4%	0 0.0%	2 3.6%	33 58.9%
지역	수도권	7 12.5%	7 12.5%	1 1.8%	0 0.0%	15 26.8%

	비수도권	15 26.8%	23 41.1%	0 0.0%	3 5.4%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20 35.7%	27 48.2%	1 1.8%	3 5.4%	51 91.1%
	교육대	1 1.8%	3 5.4%	0 0.0%	0 0.0%	4 7.1%
	산업대	1 1.8%	0 0.0%	0 0.0%	0 0.0%	1 1.8%
계		22 39.3%	30 53.6%	1 1.8%	3 5.4%	56 100.0%

(4) 대교협의 입시 관련 권한 행사의 정도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대교협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가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으로 하여금 "회원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교의 응답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① 대교협사항 준수, 위반시 처벌가능	② 대교협사항 자율준중, 처벌 강제없음	③ 대입전형은 대학자율,대교협 관여불필요	무응답	전체
빈도 (응답률)	19(33.9%)	30(53.6%)	5(8.9%)	2(3.6%)	56(100.0%)

표를 보면 회원교의 반응은 대교협이 나서서 입학전형과 관련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교가 자율적으로 존중해가도록 할 일이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아울러 혹 대교협의 방향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점 최근 국회 일부 의원들이 대교협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과 다르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대교협의 관여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회원교가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설립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반응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 있다. 국공립, 설립규모, 소재지역 등에 따른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구 분		① 대교협사항 준수, 위반시 처벌가능	② 대교협사항 자율준중, 처 벌 · 강제없음	③ 대입전형은 대학자율, 대교 협관여불필요	무응답	전 체
설립 유형	국·공립	7 12.5%	10 17.9%	0 0.0%	0 0.0%	17 30.4%
	사립	12 21.4%	20 35.7%	5 8.9%	2 3.6%	39 69.6%
규모	대규모	6 10.7%	14 25.0%	2 3.6%	1 1.8%	23 41.1%
	중소규모	13 23.2%	16 28.6%	3 5.4%	1 1.8%	33 58.9%
지역	수도권	5 8.9%	6 10.7%	3 5.4%	1 1.8%	15 26.8%
	비수도권	14 25.0%	24 42.9%	2 3.6%	1 1.8%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18 32.1%	26 46.4%	5 8.9%	2 3.6%	51 91.1%
	교육대	1 1.8%	3 5.4%	0 0.0%	0 0.0%	4 7.1%
	산업대	0 0.0%	0 0.0%	0 0.0%	0 0.0%	1 1.8%
계		19 33.9%	30 53.6%	5 8.9%	2 3.6%	56 100.0%

#### (5) 대학운영에 대한 구성원 집단의 참여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성원 집단의 참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장이 리더쉽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아예 하나의 제도로써 그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제도 즉 대학자치의 관점에서 회원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대학 운영의 제도상 자율성과 관련해서 대학에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학사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특히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구성원 집단(예컨대 교수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참여(심의 혹은 의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① 구성원의 참여 필요함	② 구성원집단 참여제도화 불필요함	무응답	전체
빈도 (응답률)	26(46.4%)	27(48.2%)	3(5.4%)	56(100.0%)

표를 보면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을 알 수 있다. 회원교 총장들은 대개 학교규칙 제정 등과 관련하여 교수등 구성원 집단의 참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반응은 꼭 그렇지 않고 견해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곳이 약간 많지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대학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설립별 등에 따른 반응은 다음 표와 같다.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수록, 비수도권일수록, 특수목적대일수록 구성원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규모에 수도권, 일반대학일수록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구 분		① 구성원의참여 필요함	② 구성원집단 참여제도화 불필요함	무응답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6 10.7%	9 16.1%	0 0.0%	15 100.0%
	사립	20 35.7%	18 32.1%	3 5.4%	41 73.2%
규모	대규모	21 37.5%	27 48.2%	3 5.4%	51 91.1%
	중소규모	4 7.1%	0 0.0%	0 0.0%	4 7.1%
지역	수도권	6 10.7%	9 16.1%	0 0.0%	15 26.8%
	비수도권	20 35.7%	18 32.1%	3 5.4%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21 37.5%	27 48.2%	3 5.4%	51 91.1%
	교육대	4 7.1%	0 0.0%	0 0.0%	4 7.1%
	산업대	1 1.8%	0 0.0%	0 0.0%	1 1.8%
계		26 46.4	27 48.2	3 5.4	56 100.0

(6) 대학의 수익사업 보장

요즘 대학가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몇몇 대학의 민간 기업 유치는 온권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대학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으로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장려
- (2) 개인 및 기업 등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 출연 시 세제 지원 혜택
- (3) 학교 교육시설의 수익 사업을 위한 활용 허용

이에 대한 회원교의 응답은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장려

국공립의 찬성율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 특히 교육대학의 응답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 찬성율이 적다. 전체적으로는 교대를 제외하고는 반 이상 찬성하는 비율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원교의 신중한 태도를 반증한 것이거나 규정 내용이 선언적인데 불과한 것으로 본 탓이라 하겠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8	17	47.06
	사립	10	39	25.64
규모	대규모	8	23	34.78
	중소규모	10	33	30.30
지역	수도권	5	15	33.33
	비수도권	13	41	31.71
대학 유형	일반대	15	51	29.41
	교육대	2	4	50.00
	산업대	1	1	100.00

(6)-2. 개인 및 기업 등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 출연 시 세제 지원 혜택

이점 대부분의 경우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골고루 절대적인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15	17	88.24
	사립	28	39	71.79
규모	대규모	19	23	82.61
	중소규모	24	33	72.73
지역	수도권	12	15	80.00
	비수도권	31	41	75.61
대학 유형	일반대	38	51	74.51
	교육대	4	4	100.00
	산업대	1	1	100.00

(6)-3. 학교 교육시설의 수익 사업을 위한 활용 허용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든 유형의 대학들에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이 사립보다, 대규모 대학이 중소대학보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일반대가 교육대나 산업대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미 시설과 주변 여건(예컨대, 대학 인근의 수요)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 분		사례수	전체	응답률
설립 유형	국·공립	15	17	88.24
	사립	30	39	76.92
규모	대규모	22	23	95.65
	중소규모	23	33	69.70
지역	수도권	13	15	86.67
	비수도권	32	41	78.05
대학 유형	일반대	41	51	80.39
	교육대	3	4	75.00
	산업대	1	1	100.00

(7) 교원 및 조교 자격기준의 학칙 위임

대학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항을 법령에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대학측의 학칙이나 관련 규정에 상당부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고등교육법은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하여 학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교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대통령령규정 그대로유지	② 대학의전면 학칙에 일임	③ 학칙에 구체적 규정위임, 최소한기준은 대통령령	무응답	전체
빈도 (응답률)	5(8.9%)	12(21.4%)	37(66.1%)	2(3.6%)	56(100.0%)

이 부분에서는 예상했던 바대로의 반응이 나왔다. 전국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의표시로 본다. 학칙에 위임하되, 최소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다. 대학의 학칙에 전면 위임하는 방안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설립별 등에 따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사립, 중소규모, 비수도권, 일반대학등에서 전면 위임을 선호하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지중을 차지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구 분		① 대통령령규정 그대로유지	② 대학의전면 학칙에 일임	③ 학칙에 구체적 규정 위임,최소한기준은 대통령령	무응답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2 3.6%	2 3.6%	13 23.2%	0 0.0%	17 30.4%
	사립	3 5.4%	10 17.9%	24 42.9%	2 3.6%	39 69.6%
규모	대규모	4 7.1%	2 3.6%	16 28.6%	1 1.8%	23 41.1%
	중소규모	1 1.8%	10 17.9%	21 37.5%	1 1.8%	33 58.9%
지역	수도권	0 0.0%	3 5.4%	12 21.4%	0 0.0%	15 26.8%
	비수도권	5 8.9%	9 16.1%	25 44.6%	2 3.6%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5 8.9%	12 21.4%	32 57.1%	2 3.6%	51 91.1%
	교육대	0 0.0%	0 0.0%	4 7.1%	0 0.0%	4 7.1%
	산업대	0 0.0%	0 0.0%	1 1.8%	0 0.0%	1 1.8%
계		5 8.9%	12 21.4%	37 66.1%	2 3.6%	56 100.0%

(8)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정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존폐 문제이다. 이에 회원교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현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포괄적인 사전지도와 사후지도 및 감독권 하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원교의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다.

	① 교과부지도·감독권 삭제, 관련법령위반 하지않는한 국가감독받지않음	② 사전·사후 지도감독 인정, 요건미충족대학 에적용	③ 사전·사후감독 완전삭제,대교협의 자율적통제	무응답	전체
빈도 (응답률)	31(55.4%)	15(26.8%)	7(12.5%)	3(5.4%)	56(100.0%)

표를 보면 처음부터 교과부 지도, 감독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으로만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반응이 과반수이다. 지금처럼 사전 사후지도 감독을 인정하되 대학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만 적용하자는 곳은 많지 않다(26.8%). 아마도 그러한 대학을 선별하기 곤란하다고 보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대학간에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립별 등에 따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사전·사후 감독 완전 삭제, 대교협의 자율적 통제’에 대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립보다 사립, 중소기업보다 대구모, 지방보다 수도권이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눈에 띈다.

구분		① 교과부지도·감독권 삭제, 관련법령위반하지않는한 국가감독받지않음	② 사전·사후 지도 감독권행사인정, 요건미충족대학에 적용	③ 사전·사후감독완전삭제, 대교협의 자율적통제	무응답	전체
설립 유형	국·공립	9 16.1%	5 8.9%	2 3.6%	1 1.8%	17 30.4%
	사립	22 39.3%	10 17.9%	5 8.9%	2 3.6%	39 69.6%
규모	대구모	11 19.6%	8 14.3%	2 3.6%	2 3.6%	23 41.1%
	중소규모	20 35.7%	7 12.5%	5 8.9%	1 1.8%	33 58.9%
지역	수도권	7 12.5%	4 7.1%	4 7.1%	0 0.0%	15 26.8%
	비수도권	24 42.9%	11 19.6%	3 5.4%	3 5.4%	41 73.2%
대학 유형	일반대	28 50.0%	13 23.2%	7 12.5%	3 5.4%	51 91.1%
	교육대	2 3.6%	2 3.6%	0 0.0%	0 0.0%	4 7.1%
	산업대	1 1.8%	0 0.0%	0 0.0%	0 0.0%	1 0.0%
계		31 55.4%	15 26.8%	7 12.5%	3 5.4%	56 100.0%

#### 4. 시사점

(1) 교육과 연구에서의 수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사항은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총장의 학교 운영상의 자율성 보장’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국립대학 혹은 학교법인의 자율성도 중시하고 있다. 학내에서의 구성원 참여 관해서는 신중하다.

(2) 현행 법령이 학생선발 자율성을 보장하는지에 관해서는 예상과 다른 응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회원교들이 언론 등에 토해내는 표현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아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설문 결과 학생선발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곳도 제법 된다.

(3)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바람직한 방향은 대학입시의 큰 틀은 그래도 가져가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대학에 일임하거나 대학 정관 혹은 학칙이나 내규에 맡길 것을 희망하고 있다.

(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가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으로 하여금 "회원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에 관해서는 회원교의 반응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점 한나라당이 대교협으로 하여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법안을 마련한 것과 다르다.

(5) 대학 운영의 제도상 자율성과 관련해서 대학에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학사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상밖의 반응을 보였다. 회원교 총장들은 대개 학교규칙 제정 등과 관련하여 교수등 구성원 집단의 참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반응은 그렇지 않고 견해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

이 점은 (1)번에서 '국가 혹은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총장의 학교운영상의 자율성 보장'을 특히 중시하는 것과 일견 상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번의 설문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대학들이 그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6) 대학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으로 고등교육법에 규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장려에 관한 것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많은 점, 특히 교육대학의 응답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대를 제외하고는 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사례가 없다. 이점 역시 주목할 만한 사인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의 수입사업에 대한 회원교의 신중한 태도를 반증한 것이거나 규정 내용이 선언적인데 불과한 것으로 본 탓이라 하겠다.

둘째, 개인 및 기업 등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 출연 시 세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셋째, 학교 교육시설의 수익 사업을 위한 활용 허용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고등교육법은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하여 학칙에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바대로의 반응이 나왔다. 전국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시표시로 본다.

(8) 현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포괄적인 사전지도와 사후지도 및 감독권 하에 놓여 있는데,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이다. 처음부터 교과부 지도, 감독권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으로만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반응이 과반수이다. 지금처럼 사전 사후지도 감독을 인정하되 대학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만 적용하자는 곳은 많지 않다. 아마도 그러한 대학을 선별하기 곤란하다고 보거나 혹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대학간에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립별 등에 따른 반응은 다음과 같다.

(9)종합적으로는 이러한 회원교의 의견들은 대체로 지난 1월 15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를 정당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부분도 있다 하겠다.

## IV. 대학 자율화 관련 최근 논의 동향

### 1. 국회에서 제안한 최근의 개정안 검토

지난 1월 15일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 법정 관련 법안

##### (1) 안민석 의원 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14, 2009. 2. 13,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9.3.11 상정)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나, 지역·출신 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 정의 및 헌법상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그러나 일부 대학의 입시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의 평가보다는 사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기여입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음.

## (2) 권영길 의원 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85, 2009. 2. 3,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미상정):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생의 지역·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학생 본인 및 친인척 등의 금전·토지·시설·건축물 등의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며,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는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할 것을 법에 명시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 함.

현재 일부 대학들이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함.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공연히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고려한 차등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단계적으로 기여 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비록 학생 선발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된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기는 하나, 학생의 출신 고교나 출신 고교가 속한 지역을 차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상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또한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생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친인척 등의 금전적 기여 여부에 따라 선발해서는 아니 됨. 게다가, 대학진학률이 83%(98학년도 입시기준)인 현실을 미뤄보면 대학입시 정책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 초·중·등 과정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를 출제할 때에 최대한 정규 교과 과정과 수준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음.

## 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주무장관의 조정권

고등교육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676, 2009. 2. 2, 이성헌의원 대표발의, 미상정) : 대학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 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다. 동일대학의 다른 학과 편입 허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79,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6. 18.) :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취득한 자를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로 편입하는 경우는 마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호).<sup>1)</sup>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사편입 경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다른 학과로 학사편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라. 법안에 대한 검토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문제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주무장관의 조정권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한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지역·출신 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취득한 자의 편입을 허용하는 데에서 나아가 같은 학교의 다른 학과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또 한편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것이다.

## 2. 언론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주장과 우려, 제동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 성과에 관한 대학들의 평가, 언론등의 대학에 대한 우려, 정부의 제동 움직임 등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대학측의 자율화 주장

#### (1) 정부의 자율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

“자율화 1년 달라진 게 없다”(중앙일보, 2009년 1월 16일) :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대학 자율화를 본격 추진했다. 교과부는 대학 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기고, 학부제 모집이나 교수 총원 같은 규제를 상당 부분 풀었다. 하지만 총장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일부 총장은 “1년간 뭐가 달라졌느냐”는 비판도 했다. 학사운영을 포함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학 인재선발에 정부규제 없어야”(연합뉴스(중앙), 2009년 6월 11일) : 전북대는 1000여 명의 교수(전임 이상) 중 올해 1학기에 학생을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가 7명 뿐이다. “세계 대학과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글로벌화가 필수인데 교수 채용도 마음대로 못한다”. 전국 46개 국·공립대는 교수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제1호 중 ‘國內·외의 다른 學校’를 “국내·외의 학교”로 한다.”

14개 대학 총장 인터뷰(‘대학 경쟁력을 말한다’ 시리즈)를 분석한 결과(2009. 6. 11) : 대학 총장들은 글로벌화와 대입·학교 운영 자율화를 ‘세계 일류 대학 만들기’ 3대 과제로 꼽았다. 이는 중앙일보가 석 달간(1월 23일~4월 24일) 진행한 14개 대학 총장 인터뷰(‘대학 경쟁력을 말한다’ 시리즈)를 분석한 결과다.

총장들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재정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인 연간 5조원이다.

학위 수여 조건과 커리큘럼 운영, 사학법 개정 등 학교 운영 자율화 요구도 많았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외국 명문대처럼 국내 대학도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어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며 “규제를 확 풀면 세계 일류 대학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2) 대교협의 3불 정책 폐지 추진 (중앙일보, 2009년 1월 15일)

3불(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정책은 2010학년도 대입 시까지만 유지되고, 2011학년도부터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폐지될 전망이다. 또 2013학년도에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대입자율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자율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대학생 선발 규제하는 곳은 사회주의 국가 빼곤 한국뿐”(중앙일보, 2009년 1월23일)

### (3) 손병두 서강대 총장의 인터뷰(중앙일보, 2009년 6월 11일)

“세계화 시대에 한국 대학이 경쟁력 갖추려면 대학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퇴임을 보름 앞둔 손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재 선발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규제가 있는 한 외국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엘빈 토플러는 저서에서 ‘고속도로 상에서 기업이 100마일의 속도로 변한다면 대학은 10마일의 속도로 변한다’고 썼다”며 “특히 한국 대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2~3마일의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 대학 자율화에 대한 우려와 제동

### (1) 대학 자율화에 대한 우려

2009.1.15, 중앙일보, 안병만 교과부 장관 신년인터뷰 [연합] : 대학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사교육의 주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입시부터 대학이 개혁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

2009.1.15 : 중앙일보사설 “대입 자율 확대 바람직하나 대학 책임도 중요하다.”

대입 자율화가 고교 교육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가셔도 곤란하다.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

는 난해한 논술고사를 출제해 학생·교사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학업 성적만 아니라 소질과 잠재력을 고루 평가하는 방식의 입시가 정착될 때 고교 교육도 점수 따기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

## (2) 대입 자율화 제동

정부·대학 입시협의체 (연합뉴스(중앙), 2009년 2월 12일) : 대입이 무질서로 가면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혼자서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과부, 대교협, 교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교육 4주체 협약(중앙일보, 2009년 2월 28일)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교육기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 (3) 대교협에의 대학 제재권 부여 추진

대교협의 대학제재권 조속 추진(세계일보, 2009-2-16) : 정부·여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입학전형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자율화 간섭 논란(중앙일보, 2009년 2월 14일) : 교과부는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대교협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대학, 시·도교육감, 교사,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 언론의 지적 등에 관한 검토

대학자율화를 바라보는 대학측과 언론, 정부 등의 시각은 서로 상반된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이란 본래 쌍방 당사자를 전제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통하여 규율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법에 담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힘의 역학관계, 주장의 타당성 등에 의하여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지금은 그 상황으로 볼 때 대학 자율화를 더욱 추진하자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 할 것이다. 언론도 큰 틀에서 이 점에 동의하고 적극 밀어주고 있다. 다만 자율화에 걸맞는 책임을 성실히 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안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보다 대학 자율화를 위하여 더욱 전형적인 자세로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 지난 1월 15일,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소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것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회원교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참고로 그후 국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법안들 중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자율화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당초 계획대로 본회 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정부, 국회등과의 교섭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발표자는 위의 자료들과 함께 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도 점검하였다. 모두 지난 12월과 금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이미 그 골자는 발표자도 충분히 연구하였다.<sup>2)</sup> 자율화와 다양화의 관점에서 나온 보고서들인데 상당히 참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범하는 어리석음이지만 급하게 사안에 쫓겨 단기 연구에 그치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늘 아쉽게 느껴진다.

향후 본 추진위원회에 연구진을 새롭게 구성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대학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적용받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실체를 확인하는 사례중심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이시우 외, 다양화 실현을 위한 교육법령 개정방향 연구, 2009.2, 자문조사 08-17 ; 김문현 외, 대학자율화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개발사업 2008-위탁-15.

**[부록] 위원 구성 현황**

<b>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23명)*</b>		
<b>구 분</b>	<b>소속기관명</b>	<b>성 명</b>
위 원 장	경북대	노동일
부위원장	국민대	이성우
위 원	고려대	이기수
	경성대	김대성
	금오공과대	우형식
	동서대	박동순
	동의대	강창석
	목포대	임병선
	부경대	박맹언
	상명대	이현청
	상지대	유재천
	서울시립대	이상범
	숙명여대	한영실
	순천향대	손풍삼
	신경대	송문석
	아주대	서문호
	우석대	라종일
	이화여대	이배용
	인천대	안경수
	전남대	김윤수
	차의과학대	박명재
	초당대	김병식
한밭대	설동호	
자문교수	서울교대	허종렬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병주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Ⅱ.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좌 장 임병선 위원장(목포대 총장)
- 발 표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 토 론 박영식 위원(가톨릭대 총장)  
전우수 위원(공주교대 총장)

#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의 과제

송기창(숙명여대)

## I. 서론

2007년 6월 고등교육재원 1조원 확충방침이 제시된 이래 교육계의 고등교육재원 확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교육협의회가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면서 2009년 5월 8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한국교총, 그리고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공동 주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제는 제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립대학육성특별법 대신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반면, 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안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사립대학 위주의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보호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사립간 이해를 둘러싼 이견이 나타남으로써 법제정이 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는 원론적으로 국·사립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차근차근 각론에서의 이견을 조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확인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현행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추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고등교육 재정의 현황 및 과제

### 1. 고등교육재정 현황

고등교육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재원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고등

교육재정의 세입이 동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 가. 고등교육재원 정부부담 부족

국가의 교육예산 규모는 2001년 21.6조원에서 2008년 35.9조원까지 연평균 9.2%씩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부문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고등 교육부문이 5.4%,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8%이며, 부문별 투자 배분을 보면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86.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세의 20%('07년까지 19.4%) 및 교육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2005년에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1.1% 정도를 고등교육비로 정부가 부담했으나, 한국은 0.6%에 불과했다. 2008년에 고등교육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4조 5,634억원(HRD 예산 일부 포함) 규모로서 국내총생산 1,023.9조원의 약 0.45%로, 2005년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예산 가운데 국립대 인건비·운영비·시설비와 학자금·연금기금 등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하면 고등교육재정사업 관련 예산은 고등교육예산의 약 33%인 1조 5,000여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표 1>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발표 년도	기준 년도	국가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2004	2001	한 국	4.8	3.4	8.2	3.5	1.0	4.6	0.4	2.3	2.7
		OECD평균	5.0	0.7	5.6	3.5	0.3	3.8	1.0	0.3	1.4
2005	2002	한 국	4.2	2.9	7.1	3.3	0.9	4.1	0.3	1.9	2.2
		OECD평균	5.1	0.7	5.8	3.6	0.3	3.8	1.1	0.3	1.4
2006	2003	한 국	4.6	2.9	7.5	3.5	0.9	4.4	0.6	2.0	2.6
		OECD평균	5.2	0.7	5.9	3.6	0.3	3.9	1.1	0.4	1.4
2007	2004	한 국	4.4	2.8	7.2	3.5	0.9	4.4	0.5	1.8	2.3
		OECD평균	5.0	0.7	5.7	3.6	0.3	3.8	1.0	0.4	1.4
2008	2005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공공부담비율은 낮지만, 민간부담분을 합하면 GDP 대비 2.4%로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국민 1인당 GDP 수준에 비추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교육의 질이 국민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는 무의미하다. 미국과 비교할 때 학

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31.2%에 불과하며,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66.1%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대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이므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절대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OECD 국가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5)

(단위 : US \$, PPP)

국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문대학	대학	계	
한국	2,426	4,691	5,661	7,765	6,645	3,811	9,938	7,606	6,212
미국	8,301	9,156	9,899	10,969	10,390	-	-	24,370	12,788
OECD 평균	4,888	6,252	7,437	8,366	7,804	-	-	11,512	7,527
한국/미국(%)	29.2	51.2	57.2	70.8	64.0	-	-	31.2	48.6
한국/OECD(%)	49.6	75.0	76.1	92.8	85.1	-	-	66.1	82.5

자료 :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 나.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 과중

국가의 고등교육예산의 영세성은 고등교육기관의 세입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등교육기관의 세입 현황을 보면, 등록금 의존도는 등록금 의존도(2007)는 국·사립 51.8%(국·공립 29.7%, 사립 57.2%)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15.8%(국립 47.2%, 사립 8.0%)이다.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산출하면, 사립대학은 77.0%, 사립 전문대학은 91.1%에 달한다.

<표 3> 국·사립 고등교육기관 수입 현황(2007년 결산)

(단위 : 억원)

구분	등록금 수입	국고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이월금	자산 및 부채수입	기타	계
국립대학	15,498	24,669	-	2,426	2,279	-	7,350	52,222
비율(%)	29.7	47.2	0.0	4.6	4.4	0.0	14.1	100.0
사립대학	120,970	17,015	11,537	5,628	20,769	16,340	19,152	211,411
비율(%)	57.2	8.0	5.5	2.7	9.8	7.7	9.1	100.0
계	136,468	41,684	11,537	8,054	23,048	16,340	26,502	263,633
비율(%)	51.8	15.8	4.4	3.1	8.7	6.2	10.1	100.0

주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대학 결산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전문대학 결산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산학협력단 결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국립대학 결산자료.

우리나라의 등록금 의존도(국립 29.7%, 사립 57.2%)는 외국 대학과 비교해볼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미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공립 18.1%, 사립 34.1%이며, 2005년 영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24.1%였다.

고등교육기관 세입을 과도하게 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해왔고,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 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증가 추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립대	등록금(천원)	2,471	2,654	2,903	3,115	3,426	3,837	4,169
	인상률(%)	7.5	7.5	9.5	7.3	10.1	10.3	8.7
사립대	등록금(천원)	5,109	5,452	5,776	6,068	6,472	6,916	7,380
	인상률(%)	6.9	6.7	5.9	5.1	6.6	6.6	6.7
물가상승률(%)		2.8	3.4	3.6	2.8	2.2	2.5	4.7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배율	국립대	2.7	2.2	2.6	2.6	4.6	4.1	1.9
	사립대	2.5	2.0	1.6	1.8	3.0	2.6	1.4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정보시스템 및 통계청 통계자료

기부금 수입이 외국대학에 비해 저조하고, 사립대학의 법인 전입금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전입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을 합한 비율이 13.5%에 불과하나,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 비율이 47.2%에 달함으로써 사립의 법인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비율과 국립의 국고보조금 비율의 차이인 33.7%가 국·사립 간 등록금 의존도의 차이(27.5%)를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 다. 고등교육기관의 세출구조 문제

고등교육기관의 세출 결산(2007)을 보면, 인건비가 31.5%(국립 34.3%, 사립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영비가 25.5%를 차지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와 기타 회계의 경비는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는 10.7%이다. 산학협력단 회계를 제외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38.4%다.

학생 1인당 기능별 고등교육비를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고등교육활동 자체에 투입하는 학생 1인당 경비는 \$6,674로 OECD 국가 평균의 82.4%이나, R&D 투자는 \$999로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생 1인당 성질별 고등교육비를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상비 비중은 85.7%, 자본적 경비의 비중은 14.3%인 반면, OECD 국가 평균 경상비 비중은 90.4%이며, 자본적 경비의 비중은

9.5%다. OECD 국가의 경우 장기간의 교육 투자를 통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교육비의 대부분이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국·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출 결산(2007년)

(단위 : 억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경비	이월금	산학 및 기타회계	계
국립	17,888	14,454	2,725	1,218	1,797	14,140	52,222
비율(%)	34.3	27.7	5.2	2.3	3.4	27.1	100.0
사립	65,151	52,772	25,584	19,344	15,394	33,166	211,411
비율(%)	30.8	25.0	12.1	9.1	7.3	15.7	100.0
계	83,039	67,226	28,309	20,562	17,191	47,306	263,633
비율(%)	31.5	25.5	10.7	7.8	6.5	17.9	100.0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7년 사립대학 결산자료; 2007년 사립전문대학 결산자료; 2007년 산학협력단 결산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국립대학 결산자료.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43.6%로서 OECD 국가 평균 61.5%에 17.9%p나 낮다. 이는 교원의 보수수준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기보다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학생 1인당 기능별·성질별 고등교육비 비교(2005)

국가별	기능별(US \$, PPP)				성질별(%)					
	교육	기타	R&D	계	경상비					자본적 경비
					인건비			기타 경상비	계	
					교원	직원	소계			
한국	6,574	33	999	7,606	30.3	13.4	43.6	42.1	85.7	14.3
OECD 평균	7,976	502	3,391	11,512	39.3	22.0	61.5	28.9	90.4	9.5
한국/OECD(%)	82.4	6.6	29.5	66.1	77.1	60.9	70.9	145.7	94.8	150.5

자료 :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 라. 정부의 교육재원 배분 구조

고등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를 비교할 경우, 1995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 대비 유·초·중등교육부문 예산 비율은 7.73배였으나, 2007년에는 7.27배로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대비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 비율은 3.91배에서 2.33배로 크게 낮아졌으므로 고등교육기관 대비 유·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비율을 보면, 1995년 1.98배였으나, 2007년에는 3.12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7> 유·초·중등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예산 변화 추이

연도	교육예산 규모(억원)			학생수(명)			1인당 교육 예산(천원)		
	유초중등 부문(A)	고등교육 부문(B)	비율 (A/B)	유·초· 중등(C)	고등교육 (D)	비율 (C/D)	유초중등 (E=A/C)	고등교육 (F=B/D)	비율 (E/F)
1995	112,026	14,494	7.73	9,095,763	2,326,688	3.91	123.2	62.3	1.98
1996	132,141	21,416	6.17	8,997,460	2,526,831	3.56	146.9	84.8	1.73
1997	153,468	24,275	6.32	8,891,659	2,779,162	3.20	172.6	87.3	1.98
1998	147,893	22,892	6.46	8,730,077	2,941,139	2.97	169.4	77.8	2.18
1999	151,627	23,016	6.59	8,641,289	3,148,119	2.74	175.5	73.1	2.40
2000	164,337	29,299	5.61	8,520,866	3,359,788	2.54	192.9	87.2	2.21
2001	186,698	29,024	6.43	8,400,665	3,497,902	2.40	222.2	83.0	2.68
2002	193,753	31,303	6.19	8,348,614	3,575,538	2.33	232.1	87.5	2.65
2003	216,411	31,247	6.93	8,367,446	3,556,654	2.35	258.6	87.9	2.94
2004	229,710	32,634	7.04	8,361,887	3,553,900	2.35	274.7	91.8	2.99
2005	242,594	34,633	7.00	8,361,570	3,547,432	2.36	290.1	97.6	2.97
2006	253,024	32,840	7.70	8,345,417	3,544,130	2.35	303.2	92.7	3.27
2007	268,855	36,987	7.27	8,299,228	3,557,420	2.33	324.0	104.0	3.1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연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교육재원 규모가 법제화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달리 고등교육재정은 국가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그 규모가 확정되므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총액배분·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에는 내국세 규모가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면 고등교육재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마. 설립별 재정 지원의 불균형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경상비와 시설비,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왔으나,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경쟁에 의한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일부를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조, 제8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사립학교법』 제43조)한 반면, 국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부담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학교법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학생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고 난 나머지 모두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게다가 사립대학법인이 부실하여 법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립대학 학생과 국립대학 학생간의 등록금 수준의 차이와 국고보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설립별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을 비교해보면,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연간 772만원을 지원받지만, 사립대학은 74만원으로 국립대학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8> 설립별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 비교(2005)

구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		
	국고지원 (백만원)	학생수 (명)	학생1인당 (천원)	국고지원 (백만원)	학생수 (명)	학생1인당 (천원)	국고지원 (백만원)	재학생수 (명)	학생1인당 (천원)
대학	1,961,848	253,141	7,750	125,188	13,789	9,079	853,341	987,098	864
전문대학	40,900	6,185	6,613	90,058	13,441	6,700	250,759	507,983	494
계	2,002,748	259,326	7,723	215,246	27,230	7,905	1,104,100	1,495,081	738

주: 1) 국고지원액은 국·공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국고지원액과 지자체지원액을 합한 것임.

2) 국립의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사립의 산업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구세군사관학교 등을 제외함.

자료: 박현철 외, 고등교육기관의 재정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 2. 고등교육재정의 과제

현행 고등교육재정의 과제로는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를 확충하는 일, 대학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일, 국립대학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일, 그리고 사립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일이다.

### 가.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 확충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 총량규모가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규모가 법제화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과 달리 고등교육재원은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그 규모가 확정되므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총액배분·예산편성체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에는 내국세 규모가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면 고등교육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 수를 늘리고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강좌당 학생 수를 낮추며, 실험실습기자재와 장서를 확충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교원 연수를 강화하며, 연구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두 교육재원 확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질 제고방안은 고등교육재원 규모 확충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의 등록금 재원을 확대하고, 법인 전입금을 확충하며 기부금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국가로부터 확보되는 고등교육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나. 대학등록금 의존도 감축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대학내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06년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가 정치권의 의제로 들어옴에 따라 대학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개별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상승률의 2~4배씩 인상되어온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정치권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난의 대물림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있었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등록금대책을 내놓은 바 있고,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각정당들은 대학 등록금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당이 공약한 대학 등록금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 확대, 재학기간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유예, 재학기간 중 납부해야 할 등록금 산출 제시 등을 공약하였고, 통합민주당은 정부보증 무이자 및 저리 융자 확대, 학자금 대출제도 다양화, 대학등록금 후불제 및 물가인상률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공약하였다. 자유선진당은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 대출로 전환,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물가상승과 연동,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한 대학 장학금 조성 등을, 민주노동당은 150만원 등록금 실현, 등록금 국가책임후불제 도입,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차등부과제 적용 등을, 창조한국당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장기 무이자 대출제도(10년 거치 10년 상환의 등록금 후불제) 실시와 교육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돈 걱정 없는 대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각정당들이 공약한 등록금 대책들은 대동소이하지만, 정치적으로 내세운 측면도 있으므로 고등교육재원 확충과 사회적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경중을 가려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 다. 국립대학 재정운용 효율화

국립대학 재정운용이 효율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는 두 가지 배경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국립대학의 교육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사립대학의 역할 및 기능과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회계제도 도입이 거론돼왔으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대학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현행 국립대학은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선발정책으로 사회복지적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며, 사립대학과 차별화하여 국가의 미래 전략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며, 사립대학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비용 분야나 소외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국립대학 위주로 지원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국립대학 투자를 부유한 설립자에 의한 차별화된 대학육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모든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우수한 것도 아니며, 투자 대비 성과가 탁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국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국립대학의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지원하는 국립대학 설립자로서의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연구비 등 지원,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과 같은 고등교육 지원·육성자로서의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학금 지원, 연구비 지원, 사업비 지원 등에 있어서도 국립대학에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립대학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는 원점에서 국립대학 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부가적 지원과 저등록금 정책을 지양하고 건전 사립대학 학교법인 수준의 설립자적 지원을 하되, 국·공·사립대학에 대한 공통적인 정부 지원(고등교육 후원자적 입장의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민간이 담당하기 꺼려하는 인문학 분야, 고비용의 이공계·예술계 분야, 국방과학 분야 등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국립대학의 신입생 선발정책을 사립대학과 차별화하여 지역균형 선발, 계층균형 선발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국립대학 효율화 과제를 안고 있다.

## 라. 사립대학재정 확충

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 확충이 최우선적 과제임은 당연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대학총장 의견조사’(2007.12.16)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현안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35.6%), 학생선발권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 대학에 일임(23.6%),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20.8%) 등이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대부분 저수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법인의 전입금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사립대학 회계운영의 투명성 부족으로 사회로부터 기부금을 확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도입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정부 지원에 의한 재정 확충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사립대학들은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GDP의 1% 수준으로 확충해줄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같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도 경상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Ⅲ.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와 반성

#### 1. 현행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구분

현행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설립별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상별로 기관에 대한 지원과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별로 교육에 대한 지원, 연구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에 관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별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설립별, 기능별 지원방식을 구분해보면,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기관지원과 사업지원 및 개인지원을 모두 해왔으나,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 개인지원을 주로 해왔다. 교육과 산학협력에 대하여는 기관지원(주로 국립대학)과 사업지원을 주로 해왔으며, 연구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 개인지원을 주로 해왔다. 연구의 경우에도 간접경비 지원 등과 같이 일부 기관지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규모가 매우 작았다.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과 관련된 쟁점은 기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기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기관지원과 사업지원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은지, 기관지원을 늘릴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면 개인 지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지원은 원칙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설립자로서의 지원을 포함하지만, 주로 사립대학에 대한 기관지원과 사업비에 대한 기관지원을 의미한다.

#### 2. 사업별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와 반성

사업별 지원방식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중 사업단에 대한 지원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개별대학은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단을 구성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응모하고, 정부가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단을 평가한 후 선정된 사업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별 지원방식은 모든 기관에 골고루 지원하는 기관지원방식에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별 대학재정지원 방식은 그 성격상 기관·교원·학생 등 대상 간, 국·공·사립 등 설립 간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형평학생여부가 쟁점은 아니다.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사업과 사업간에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간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한 부서가 전담한다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 교육과 산학협력 등의 배타적 구분이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 중복은 불가피하다. 사업간 중복은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켜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원삭감의 원

인이 된다. 2007년 고등교육재원 1조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의 미비를 이유로 삭감되어 2008년 예산에 반영된 재원규모는 약 7,600억원에 불과하다.

둘째, 사업형태의 재정지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부 전공이나 학과의 경쟁력 제고에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고등교육재원의 총량 규모를 늘리고 사립대학 재정을 확충하며, 등록금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데는 실패하였다. 사업단 집중 투자를 위하여 대학에 대응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오히려 대학 전체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셋째, 정부가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대학을 끌고 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고등교육재정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 등에 따라 대학 특성화 방향을 수시로 바꾸도록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특성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은 정부와 대학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관계로 고착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넷째, 교육을 사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질적 성과지표로 판단해야 할 교육의 성과를 양적 산출지표로 잘못 판단해왔다. 주요 사업목표인 석·박사 인력 배출 인원과 SCI 급 논문 수는 재원을 투입하면 당연히 산출되는 지극히 단순한 양적 지표지만, 양적 지표에 ‘우수한’, ‘세계적인’ 등의 수식어를 붙여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위장하고 있다.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이며,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사업비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다섯째, 전공·학과·학부 등 기존의 교육조직과 별개로 임시적인 사업단 조직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끊기면, 즉 투입이 없으면, 인력양성이 안되고 논문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조직(전공·학과·학부)에 지원하지 않고 사업조직(사업단)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조직이 교육조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단도 해체되어 사업의 성과가 교육이나 연구로 스며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학원생 장학금과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 인건비 등과 같이 경상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된 후 인력양성이 지속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비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단을 지원해야 할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은 높이지 못함으로써 사업단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곱째, 사업비의 총액지원에 따라 재원이 낭비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재원은 매년 예산심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단 지원사업은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하도록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총액 지원함으로써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평가 등을 통해 부진사업단을 탈락시키기도 했지만 낭비가 이미 발생한 후 탈락시키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사전 통제수단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 IV.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쟁점과 개선방안

### 1.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쟁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고등교육재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이며,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의 개선이다.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다.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국고에서 고등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및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한 대학등록금 의존도 감축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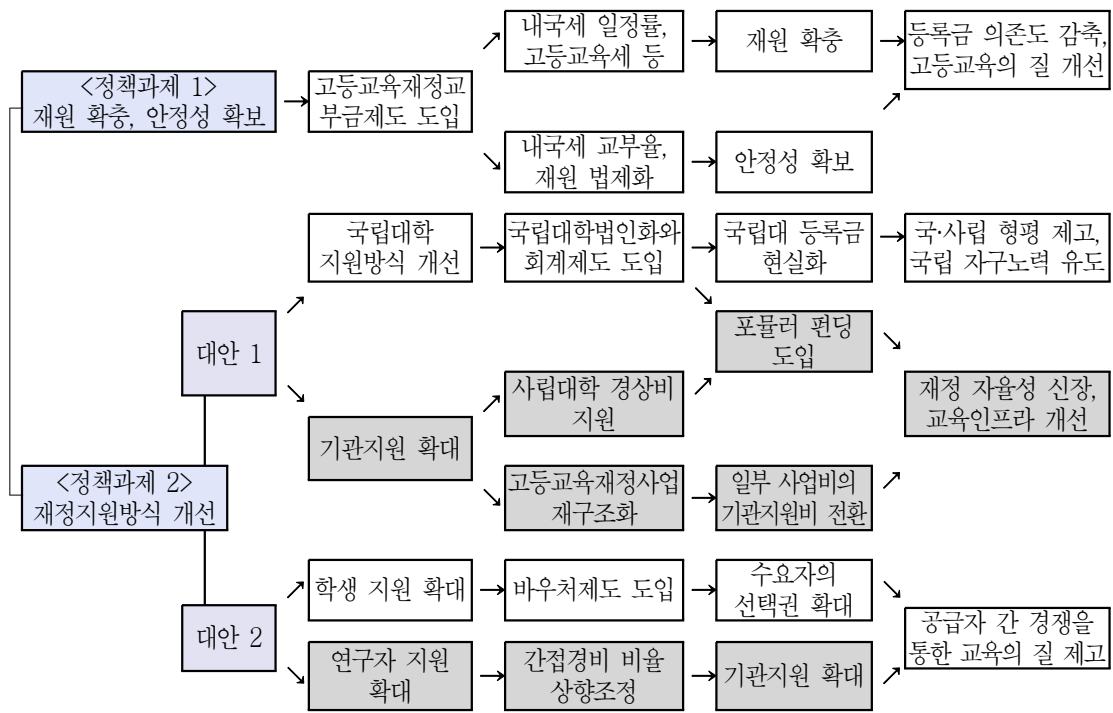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의 대안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립대학 지원방식을 바꾸고 기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관지원을 가능한 한 줄이고 학생지원과 연구자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사업비 중심, 국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자는 요구는 기존 지원방식의 개선(국립대학 포물러 펀딩 도입, 기관지원 확대 등) 요구와 추가 확충분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식(사립대학 경상지원 신설, 기관지원 신설 등) 요구로 요약된다. 기관지원 신설 및 확대 요구는 사업별 지원이 늘어나도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서 출발하며, 사립대학 경상지원 신설 요구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해도 학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 지원규모 확대 요구는 국·사립대학 간 기능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 우선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데 근거한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제도로 전환 요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는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학자금, 장학금)을 늘릴 경우 학생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대학재정확충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는 사회복지 확충방안이지 대학재정 확충방안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연구비 중 간접경비 지원 비율 확대 요구는 연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릴 경우 간접경비 비율이 낮아 대학재정 확충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과 연구비 지원의 성과평가 용이성을 활용하여 기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관련 쟁점과 대안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고등교육재정 정책과제의 논리구조

## 2.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 개선방안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통한 국·사립 형평 제고 및 국립대학 자구노력 유도, 둘째, 포플러펀딩 제도 확대를 통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사립대학경상비 지원, 셋째,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일부 사업비의 기관지원비 전환으로 고등교육기관 교육인프라 개선, 넷째, 기관지원을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 유도, 다섯째, 연구자 지원 확대와 간접경비 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연구 성과 제고와 간접적인 기관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인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통한 국·사립 형평 제고 및 국립대학 자구노력 유도 과제는 국립대학 내에서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과제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며, 네 번째 과제인 기관지원을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제는 어느 정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진 다음에 검토할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 가. 포플러펀딩 제도의 확대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으로 포플러 펀딩(Formular Funding)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국립대학에 대한 사업별·항목별 지원방식을 포물러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업지원과 구별하여 경상비는 포물러에 의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세영·이선호(2002: 150-151)는 포물러 펀딩이란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 필수 교육비 소요판단에 근거한 재정배분의 표준을 공식화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것으로 교육필요와 교육조건간의 표준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필요충족배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책임지는 정부와 재정을 사용하는 학교간의 계약적 성격에 주목하여 포물러 펀딩의 장점으로, 첫째, 정부와 학교간의 계약이므로 재원확보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둘째, 한정된 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셋째, 같은 학교의 같은 학생은 같은 필요를 갖는다고 가정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넷째,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 1) 국립대학에 대한 포물러 펀딩 방식 도입

국립대학의 회계는 기성회 회계와 일반 국고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수업료와 입학금 수입, 실습수입, 재산수입 등은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 동기가 부족하게 되고, 일반 국고회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예산규모가 결정됨은 물론 예산편성도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므로 개별대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되기 어렵다.

교육시설 확충과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교과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회 교과위원회 등에 로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은 정치적 산물이며, 경쟁의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재원의 총액이 사전에 정해지는 현행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등교육재원 총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부 대학이 로비를 통해 예산을 더 확보할 경우 다른 대학의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적 필요보다는 로비력에 의해 예산이 배분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고재원 배분방식이 사업별·항목별 배분방식에서 총액배분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총장에게 부여되어야 하고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공립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법인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학교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도입을 국립대학 법인화의 전단계로 인식하는 국립대학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도입은 국립대학 재원의 총액배분, 즉 포물러펀딩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총액배분제도는 배분받는 기관이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총액배분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부기관의 현실적 재정수요를 가능한 한 충실히 항목별로 반영하여 수요를 산정한 다음, 지원할 때는 총액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포물리를 만들어, 포물리에 의해 산출된 재원 총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재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해줌으로써 국립대학간 재정격차의 발생을 억제하고 대학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항목별·사업별 배분과 동일한 수요 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어렵고, 현재의 재정상황을 영속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사전에 제시하는 포물리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포물리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개별대학의 자구노력 등을 유도할 수 있고, 재원배분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간 재정격차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총액배분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전자 방식보다는 후자 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국립대학에 대한 포물리 펀딩이 제안된 것이다.

포물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학과 또는 계열별로 교육비차이도 지수를 산출한 후, 학과별 또는 계열별 재학생 수에 학과별 또는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 지수를 곱하여 학과별 또는 계열별 가중학생수를 산출하고, 각각의 가중학생수를 합산하여 대학별 가중학생수를 산출한 후, 대학별 가중학생수를 합하여 총 가중학생수를 산출하고, 가용재원에 대학별 가중학생수를 곱한 후 총 가중학생수로 나누어 대학별 배분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배분과정이 단순하고 학생수에 따라 방식은 배분함으로써 대학기구 설치나 교직원 정원 증식은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비차이도 지수를 산정할 때 현수준의 교육비 지출을 반영할 것인지, 표준교육비를 설정한 후 표준교육비를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확보율과 같은 투입지표나 취업률이나 연구실적과 같은 산출지표를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수학습센터나 취업지원센터 등과 같이 특정 조직의 설치 여부를 반영할 수도 있고, 학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원확보율을 반영할 경우 전임교원 확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취업률이나 연구실적을 반영할 경우 취업률과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한 개별대학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2) 포물리 펀딩 방식에 의한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요구는 다음 몇 가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사업별 지원이 늘어나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해도 고등교육기관 수의 86%, 학생 수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사업별 지원이 늘어날 경우 특정 사업의 성과는 나타날지

모르나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기관지원, 즉 경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별 지원이 늘어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데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업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립대학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 개별대학 측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수시로 발전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특성화 계획을 바꿔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친 후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특정사업비가 오히려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되,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경상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셋째, 국·사립대간 기능적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대학 우선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국립대학 등록금이 사립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국립대학 우선지원은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국립대학에 다니건, 사립대학에 다니건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면 국가의 학생에 대한 지원도 동일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설립별 차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바우처 대신 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학생에 대한 학자금과 장학금을 늘릴 경우 학생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대학재정확충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는 사회복지 확충방안이며 대학재정 확충방안은 아니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지 않는 한, 과도기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70%를 상회하면서 고등교육의 성격이 엘리트 교육에서 보통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도 고등교육기관 평가의 준거로 취업률을 강조해왔고, 기업도 자신들의 필요를 반영한 고등교육과정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정부도 기업도 고등교육기관을 더 이상 상아탑이나 학문의 전당으로 보지 않고 취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학생들도 대학생활 동안 가장 큰 관심은 취업이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종래에는 사설학원에서 개설함직한 강좌들이 대학의 정규 강좌에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다. 고등교육의 성격이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보통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역할이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특성화 분야 전임교수 임용을 확대하여 비교 우위 확보를 통해 특성화 분야가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인건비(실제인건비가 표준인건비보다 높을 경우 표준인건비, 낮을 경우 실제인건비)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공식을 마련하여 차액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포물러 펀딩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HEFCE는 일정한 배분공식에 의해 대학별 배분액을 결정하고, 지원금 총액이 결정되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크게 교육보조금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보조금으로 구분되며, 교육보조금은 학생 수, 과목 관련 요인, 학생 관련 요인, 기관 관련 요인을 고려한 표준재원과 전년도 교육보조금, 인플레이션과 같은 요소, 학생 수업료 수입 등을 고려한 추정재원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연구보조금은 연구의 양과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별·학과별로 배분된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 경상비 지원 성격의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와 사업별 지원 성격의 사립대학 교육연구 고도화 추진 특별보조로 구분된다.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는 전임교원과 전임직원 인건비의 50%와 시간강사 인건비의 40%, 교직원 복리 후생비의 40%, 교육연구경상비와 후생지도비와 연구여비의 50%를 기준으로, 사립대학 교육연구 고도화 추진 특별보조는 대학원 고도화 추진 특별경비, 학술연구 추진 특별경비, 대학교육 고도화 추진 특별경비, 고도정보화 추진 특별경비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교급별 교육비차이도지수에 따라 산출된 가중학생수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사업재정수요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 등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 후 학교사업비, 재정결합보전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 나. 재정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기관지원사업 확대

### 1)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 현황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분야 예산 중 주요 고등교육재정사업 예산 및 사업 성격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이는 국립대학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경상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종합한 것이다.

<표 9> 주요 고등교육재정사업 예산 및 사업 성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8 예산	사업 성격 구분		
		설립별	대상별	기능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290,683	공통	개인	교육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272,116	공통	사업	연구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NURI)	256,300	공통	사업	교육/산학
사립대학교교직원연금국고대여금	237,379	사립	개인	기타

이공분야학술연구 조성	207,595	공통	개인	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173,065	공통	개인	연구
전문대 특성화	168,000	공통	사업	교육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100,000	공통	기관	교육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	100,000	공통	기관	연구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70,072	국립	기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70,000	공통	개인	교육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69,000	공통	사업	산학
- 산학협력중심대학	48,000	공통	사업	산학
- 학교기업	15,000	공통	사업	산학
- 커넥트 코리아	3,000	공통	사업	산학
-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3,000	공통	개인	교육
수도권대학 특성화	59,930	공통	사업	교육
대학구조개혁 지원	50,000	공통	기관	교육
교육차관사업	42,649	공통	기관	교육/연구
지방대학 특화분야 육성	40,000	공통	사업	연구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	35,000	공통	기관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 지원	31,351	국립	기관	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17,276	국립	기관	교육/연구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12,800	공통	사업	교육
지방대학생 장학금 지원	12,500	공통	개인	교육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10,000	공통	사업	연구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9,738	공통	사업	연구
대학정보화지원	8,501	공통	사업	기타
전문대 Work-Study 프로그램 운영	8,000	공통	개인	교육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6,340	공통	사업	연구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	3,000	공통	사업	교육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3,000	공통	사업	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2,613	공통	사업	교육
고등교육평가운영	2,500	공통	사업	교육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	2,360	공통	사업	교육
도서관활성화	2,087	공통	사업	교육/연구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은행식출제	2,000	공통	사업	교육
원격대학경쟁력강화	1,950	공통	사업	교육
대학자율역량기반조성	1,871	공통	사업	교육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1,439	공통	사업	교육/산학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1,000	공통	사업	교육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	1,000	공통	사업	연구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지원	838	공통	사업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운영	450	공통	사업	연구
대학재정정보분석 및 시스템운영	350	공통	사업	기타
서울대 AID차관사업	229	국립	사업	교육/연구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선발	60	공통	사업	연구
소계	2,385,042			

설립별로 보면, 국·공·사립 공통 사업비는 2조 287억 3,500억원(85.1%), 국립 사업비는 1,189억 2,800만원(5.0%), 사립 사업비는 2,373억 7900만원(9.9%)이며, 대상별로 보면, 개인 대상사업 1조 22억 2,200만원(42.0%), 기관 대상사업 4,463억 4,800만원(18.7%), 사업단 대상사업 9,364억 7,200만원(39.3%)이고, 기능별로 보면, 교육 8,243억 9,600만원(34.6%), 교육/산학 2,577억 3,900만원(10.8%), 교육/연구 622억 4,100만원(2.6%), 기타 3,193억 200만원(13.4%), 산학 660억원(2.8%), 연구 8,553억 6,400만원(35.9%)이다.

다음 <표 10>과 <표 11>은 설립별·대상별·기능별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국립지원사업의 경우 대상별로는 주로 기관 지원사업이며, 기능별로는 교육 또는 연구 지원사업이다. 반면, 사립 지원사업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연금 국고대여금 한 건이며, 이는 개인지원사업에 속한다. 국·공·사립 공통지원사업은 개인에 대한 연구지원과 교육 또는 교육/산학협력을 위한 사업단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인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대상의 교육지원사업, 교수 대상의 연구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사업과 연구지원사업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단 지원사업의 경우 국·공·사립 공통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교육지원사업, 교육/산학지원사업, 연구지원사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0> 설립별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대상별·기능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별			기능별						계	
	개인	기관	사업	교육	교육/산학	산학	교육/연구	연구	기타		
설립별	공통	764,843	327,649	936,243	793,045	257,739	66,000	44,736	855,364	11,851	2,028,735
	국립	-	118,699	229	31,351	-	-	17,505	-	70,072	118,928
	사립	237,379	-	-	-	-	-	-	-	237,379	237,379
계	1,002,222	446,348	936,472	824,396	257,739	66,000	62,241	855,364	319,302	2,385,042	

<표 11> 대상별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기능별 분류

(단위 : 백만원)

구분	기능별						계	
	교육	교육/산학	산학	교육/연구	연구	기타		
대상별	개인	384,183	-	-	-	380,660	237,379	1,002,222
	기관	181,351	-	-	59,925	135,000	70,072	446,348
	사업	258,862	257,739	66,000	2,316	339,704	11,851	936,472
계	824,396	257,739	66,000	62,241	855,364	319,302	2,385,042	

## 2) 기관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설립별로 보면 국·공·사립 공통 지원사업이 8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별로 보면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수에 대한 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 지원사업이 4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기관 지원사업은 18.7%, 사업단 지원사업은 39.3%였으며, 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 지원사업과 연구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사업단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사업과 연구 지원사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관 지원사업과 사업단 지원사업을 비교할 때, 1대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사업단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단 지원사업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단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다. 연구간접비 지원비율 조정을 통한 기관지원 확대

간접비란 연구사업 수행지원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를 말한다.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간접비 지원제도는 과학기술처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를 시행하면서 1995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었으며(조성표·권선국·박구선, 1997: 52), 2001년 3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전 부처로 확대됐고, 정부출연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간접비가 고등교육재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맥락이다. 하나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 지원이 늘어날수록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대학이 부담하는 간접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간접경비가 늘어나면 대학은 우수연구자를 유치할 동기가 생기고, 우수연구자 유치경쟁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재정지원의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개인 지원인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면 간접비 지원도 늘어나게 되어 기관지원을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20호, '09.6.18)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은 되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의 합에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8년에는 간접비의 용도로 간접경비(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는 간접비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소요 원가를 반영한 통합 간접비 계상방식을 도입하고 주관연구기관 차원의 능률성과급 지급을 허용하는 등 간접비의 집행용도를 “당해 과제 지원 부문 소요경비”에서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 확대확대하였다. 즉, 간접비는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인력지원비와,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등 연구지원비, 그리고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성과활용지원비로 세분화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간접비 지원비율 25%를 2012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방식에 의한 간접비 지원비율(2008년 기준,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60개 대학의 간접비율은 21 ~ 28%(1개교 21%, 3개교 23%, 15개교 24%, 36개교 25%, 2개교 27%, 3개교 28%)이며,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301개 대학의 간접비율은 5~20%(21개교 20%, 36개교 15%, 29개교 10%, 나머지 215개교 5%)다.

현행 연구간접비 지원비율이 낮아 연구자 개인지원에 의한 기관지원의 효과가 미흡하며, 우수연구자 유치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간접비의 집행용도를 계속 확대해왔지만 ‘연구 활성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기능은 대학의 고유기능 중의 하나이며, 연구 기능을 교육 기능과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간접비는 용도의 제약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연구 관련 경비로 쓰지 않을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연구관련 경비 지출이 낮아지면 연구역량이 줄어들어 간접비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에 맡겨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또한, 연구간접비 비율을 높여 연구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을 넘어 연구간접비 지원제도를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의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간접비 지원제도를 확대하면 기관지원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관지원 기준을 둘러싼 이해잡단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은 이유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외국 대학에 비해 교수자원의 질이 낮다거나 인센티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교수들의 동기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전반적으로 학생의 질이 낮다거나,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이 엄격하지 않아 졸업생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유효하다. 그러나 국가의 고등재정지원 규모와 고등교육기관 재원의 총량규모가 영세한 것 또한 사실이다.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자본적 경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높고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낮은 데다가 경상적 경비 중 인건비의 비중과 R&D의 비중도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이 밝혀졌다. 이는 교수확보율이 낮고 연구비 지원이 미흡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고등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등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원, 연구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 즉 고등교육재원의 영세성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병주(1996),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는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제84호.
- 김윤태(1992), “사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당위성,” 교육재정경제연구, 창간호.
- 나민주(2003), “영국대학재정지원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12(2).
- 반상진 외(2005), 고등교육재정 지원제도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지원 연구보고서.
- 송기창(1998), “국가의 사립대 지원책도 병행돼야,” 새교육, 제523호.
- 송기창(2000),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의 논리와 방향,” 대학교육, 7/8월호.
- 송기창·김병주·박정수·정태화(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유현숙 외(2006),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윤정일(2001), 대학재정지원방식 개선, 교육재정경제연구, 10(2).
- 일본문부과학성(2007),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사립대학교육연구 고도화추진 특별 보조) 배분기준.
- 일본사립대학진흥·공제사업단(2007),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배분기준.
- 일본사립대학진흥·공제사업단(2007),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취급요령.
- 조성표·권선국·박구선(1997),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하에서의 간접비 개념 및 산정 방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 조성표·권선국·황준영(1998),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 천세영·이선호(2002),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에 기초한 학교비 배분모형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1(2), 149-173.
- HEFCE(2007), Funding Higher Education in England-How HEFCE Allocates its Funds(July 2007/20 Guide). [www.hefce.ac.uk](http://www.hefce.ac.uk)

**[부록 1]**

**대학경쟁력 기반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지**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설문 영역 -

1.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9.5.14(목)~5.26(화)
- 조사대상 : 회원대학, - 조사방법: 이메일
- 응답대학 : 56개대학

구분	설립별		규모별		지역별		유형별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수도권	지방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학교수	17	39	23	33	15	41	51	4	1
%	30	70	41	59	27	73	91	7	2

2. 설문응답 결과(1): 빈도분석

<표 1>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견해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무응답	계
응답수	4	3	7	12	29	1	56
%	7.1	5.4	12.5	21.4	51.8	1.8	100

<표 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견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무응답	계
응답수	2	4	7	6	36	1	56
%	3.6	7.1	12.5	10.7	64.3	1.8	100

<표 3> 교육자원 배분구조의 문제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응답수	0	1	6	23	25	1	56
%	0	1.8	10.7	41.1	44.6	1.8	100

<표 4>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무응답	계
응답수	10	23	11	7	3	2	56
%	17.9	41.1	19.6	12.5	5.4	3.6	100

<표 5> 한국장학재단설립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무응답	계
응답수	0	1	3	25	26	1	56
%	0	1.8	5.4	44.6	46.4	1.8	100

<표 6> 소득연계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무응답	계
응답수	0	0	5	31	18	2	56
%	0	0	8.9	55.4	32.1	3.6	100

### 3. 설문응답 결과(2): 교차분석

#### 가. 설립별

<표 가-1>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견해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4 (23.5)	2 (11.8)	3 (17.6)	3 (17.6)	5 (29.4)	0 (0)	17 (100)	14.523 *
	사립	0 (0)	1 (2.6)	4 (10.3)	9 (23.1)	24 (61.5)	1 (2.6)	39 (100)	
전체		4 (7.1)	3 (5.4)	7 (12.5)	12 (21.4)	29 (51.8)	1 (1.8)	56 (100)	

\*p<.05

<표 가-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견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2 (11.8)	4 (25.5)	3 (17.6)	4 (23.5)	4 (23.5)	0 (0)	17 (100)	24.767*
	사립	0 (0)	0 (0)	4 (10.3)	2 (5.1)	32 (82.1)	1 (2.6)	39 (100)	
전체		2 (3.6)	4 (7.1)	7 (12.5)	6 (10.7)	36 (64.3)	1 (1.8)	56 (100)	

\*p<.05

<표 가-3>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

(단위: 빈도, (%))

변인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0 (0)	1 (5.9)	3 (17.6)	9 (52.9)	4 (23.5)	0 (0)	17 (100)	7.100*
	사립	0 (0)	0 (0)	3 (7.7)	14 (35.9)	21 (58.8)	1 (2.6)	39 (100)	
전체		0 (0)	1 (1.8)	6 (10.7)	23 (41.1)	25 (44.6)	1 (1.8)	56 (100)	

\*p>.05

<표 가-4>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1 (5.9)	5 (29.4)	5 (29.4)	5 (29.4)	1 (5.9)	0 (0)	17 (100)	10.424*
	사립	9 (23.1)	18 (46.2)	6 (15.4)	2 (5.1)	2 (5.1)	2 (5.1)	39 (100)	
전체		10 (17.9)	23 (41.1)	11 (19.6)	7 (12.5)	3 (5.4)	1 (1.8)	56 (100)	

\*p>.05

<표 가-5> 한국장학재단설립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0 (0)	1 (5.9)	0 (0)	9 (52.9)	7 (41.2)	0 (0)	17 (100)	4.559*
	사립	0 (0)	0 (0)	3 (7.7)	16 (41.0)	19 (48.7)	1 (2.6)	39 (100)	
전체		0 (0)	1 (1.8)	3 (5.4)	25 (44.6)	26 (46.4)	1 (1.8)	56 (100)	

\*p>.05

<표 가-6> 소득연계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설립별	국공립	0 (0)	0 (0)	2 (11.8)	8 (47.1)	6 (35.3)	1 (5.9)	17 (100)	.964*
	사립	0 (0)	0 (0)	3 (7.7)	23 (59.0)	12 (30.8)	1 (2.6)	39 (100)	
전체		0 (0)	0 (0)	5 (8.9)	31 (55.4)	18 (32.1)	2 (3.6)	56 (100)	

\*p>.05

#### 나. 규모별

<표 나-1>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견해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2 (8.7)	2 (8.7)	3 (13.0)	5 (21.7)	11 (47.8)	0 (0)	23 (100)	1.770*
	중소규모	2 (6.1)	1 (3.0)	4 (12.1)	7 (21.2)	18 (54.5)	1 (3.0)	33 (100)	
전체		4 (7.1)	3 (5.4)	7 (12.5)	12 (21.4)	29 (51.8)	1 (1.8)	56 (100)	

\*p>.05

<표 나-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견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1 (4.3)	2 (8.7)	3 (13.0)	2 (8.7)	15 (65.2)	0 (0)	23 (100)	1.058*
	중소규모	1 (3.0)	2 (6.1)	4 (12.1)	4 (12.1)	21 (63.6)	1 (3.0)	33 (100)	
전체		2 (3.6)	4 (7.1)	7 (12.5)	6 (10.7)	36 (64.3)	1 (1.8)	56 (100)	

\*p>.05

<표 나-3> 교육자원 배분구조의 문제

(단위: 빈도, (%))

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0 (0)	1 (4.3)	2 (8.7)	9 (39.1)	11 (47.8)	0 (0)	23 (100)	2.405*
	중소규모	0 (0)	0 (0)	4 (12.1)	14 (42.4)	14 (42.4)	1 (3.0)	33 (100)	
전체		0 (0)	1 (1.8)	6 (10.7)	23 (41.1)	25 (44.6)	1 (1.8)	56 (100)	

\*p>.05

<표 나-4>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방식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5 (21.7)	11 (47.8)	2 (8.7)	3 (13.0)	1 (4.3)	1 (4.3)	23 (100)	3.294*
	중소규모	5 (15.2)	12 (36.4)	9 (27.3)	4 (12.1)	2 (6.1)	1 (3.0)	33 (100)	
전체		10 (17.9)	23 (41.1)	11 (19.6)	7 (12.5)	3 (5.4)	2 (3.6)	56 (100)	

\*p>.05

<표 나-5> 한국장학재단설립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0 (0)	1 (4.3)	1 (4.3)	10 (43.5)	11 (47.8)	0 (0)	23 (100)	2.234*
	중소규모	0 (0)	0 (0)	2 (6.1)	15 (45.5)	15 (45.5)	1 (3.0)	33 (100)	
전체		0 (0)	1 (1.8)	3 (5.4)	25 (44.6)	26 (46.4)	1 (1.8)	56 (100)	

\*p>.05

<표 나-6> 소득연계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규모별	대규모	0 (0)	0 (0)	2 (8.7)	14 (60.9)	6 (26.1)	1 (4.3)	23 (100)	.728*
	중소규모	0 (0)	0 (0)	3 (9.1)	17 (51.5)	12 (36.4)	1 (3.0)	33 (100)	
전체		0 (0)	0 (0)	5 (8.9)	31 (55.4)	18 (32.1)	2 (3.6)	56 (100)	

\*p>.05

#### 다. 지역별

<표 다-1>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견해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0 (0)	1 (6.7)	3 (20.0)	3 (20.0)	7 (46.7)	0 (0)	15 (100)	5.307*
	비수도권	4 (9.8)	2 (4.9)	4 (9.8)	9 (22.0)	22 (53.7)	1 (3.0)	41 (100)	
전체		4 (7.1)	3 (5.4)	7 (12.5)	12 (21.4)	29 (51.8)	1 (1.8)	56 (100)	

\*p>.05



<표 다-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견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1 (6.7)	0 (0)	3 (20.0)	2 (13.2)	8 (53.3)	1 (6.7)	15 (100)	6.182*
	비수도권	1 (2.4)	4 (9.8)	4 (9.8)	4 (9.8)	28 (68.3)	0 (0)	41 (100)	
전체		2 (3.6)	4 (7.1)	7 (12.5)	6 (10.7)	36 (64.3)	1 (1.8)	56 (100)	

\*p>.05

<표 다-3> 교육자원 배분구조의 문제

(단위: 빈도, (%))

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0 (0)	0 (0)	2 (13.3)	6 (40.0)	6 (40.0)	1 (6.7)	15 (100)	3.335*
	비수도권	0 (0)	1 (2.4)	4 (9.8)	17 (41.5)	19 (46.3)	0 (0)	41 (100)	
전체		0 (0)	1 (1.8)	6 (10.7)	23 (41.1)	25 (44.6)	1 (1.8)	56 (100)	

\*p>.05

<표 다-4>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2 (13.3)	8 (53.3)	4 (26.7)	0 (0)	0 (0)	1 (6.7)	15 (100)	5.708*
	비수도권	8 (19.5)	15 (36.6)	7 (17.1)	7 (17.1)	3 (7.3)	1 (2.4)	41 (100)	
전체		10 (17.9)	23 (41.1)	11 (19.6)	7 (12.5)	3 (5.4)	2 (3.6)	56 (100)	

\*p>.05

<표 다-5> 한국장학재단설립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0 (0)	0 (0)	1 (6.7)	7 (46.7)	6 (40.0)	1 (6.7)	15 (100)	3.366*
	비수도권	0 (0)	1 (2.4)	2 (4.9)	18 (43.9)	20 (48.8)	0 (0)	41 (100)	
전체		0 (0)	1 (1.8)	3 (5.4)	25 (44.6)	26 (46.4)	1 (1.8)	56 (100)	

\*p>.05

<표 다-6> 소득연계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지역별	수도권	0 (0)	0 (0)	1 (6.7)	9 (60.0)	4 (26.7)	1 (6.7)	15 (100)	.938*
	비수도권	0 (0)	0 (0)	4 (9.8)	22 (53.7)	14 (34.1)	1 (2.4)	41 (100)	
전체		0 (0)	0 (0)	5 (8.9)	31 (55.4)	18 (32.1)	2 (3.6)	56 (100)	

\*p>.05

라. 유형별

<표 라-1>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견해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3 (5.9)	2 (3.9)	6 (11.8)	11 (21.6)	28 (54.9)	1 (2.0)	51 (100)	17.753*
	교육대	0 (0)	1 (25.0)	1 (25.0)	1 (25.0)	1 (25.0)	0 (0)	4 (100)	
	산업대	1 (100)	0 (0)	0 (0)	0 (0)	0 (0)	0 (0)	1 (100)	
전체		4 (7.1)	3 (5.4)	7 (12.5)	12 (21.4)	29 (51.8)	1 (1.8)	56 (100)	

\*p>.05

<표 라-2>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의견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2 (3.9)	2 (3.9)	5 (9.8)	5 (9.8)	36 (70.6)	1 (2.0)	51 (100)	27.752*
	교육대	0 (0)	2 (50.0)	2 (50.0)	0 (0)	0 (0)	0 (0)	4 (100)	
	산업대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전체		2 (3.6)	4 (7.1)	7 (12.5)	6 (10.7)	36 (64.3)	1 (1.8)	56 (100)	

\*p<.05

<표 라-3> 교육자원 배분구조의 문제

(단위: 빈도, (%))

변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0 (0)	1 (2.0)	6 (11.8)	19 (37.3)	24 (47.1)	1 (2.0)	15 (100)	3.791*
	교육대	0 (0)	0 (0)	0 (0)	3 (75.0)	1 (25.0)	0 (0)	4 (100)	
	산업대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전체		0 (0)	1 (1.8)	6 (10.7)	23 (41.1)	25 (44.6)	1 (1.8)	56 (100)	

\*p>.05

<표 라-4>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방식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10 (19.6)	21 (41.2)	10 (19.6)	6 (11.8)	2 (3.9)	2 (3.9)	51 (100)	6.306*
	교육대	0 (0)	1 (25.0)	1 (25.0)	1 (25.0)	1 (25.0)	0 (0)	4 (100)	
	산업대	0 (0)	1 (100)	0 (0)	0 (0)	0 (0)	0 (0)	1 (100)	
전체		10 (17.9)	23 (41.1)	11 (19.6)	7 (12.5)	3 (5.4)	2 (3.6)	56 (100)	

\*p>.05

<표 라-5> 한국장학재단설립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0 (0)	1 (2.0)	3 (5.9)	21 (41.2)	25 (49.0)	1 (2.0)	51 (100)	3.073*
	교육대	0 (0)	0 (0)	0 (0)	3 (75.0)	1 (25.0)	0 (0)	4 (100)	
	산업대	0 (0)	0 (0)	0 (0)	1 (100)	0 (0)	0 (0)	1 (100)	
전체		0 (0)	1 (1.8)	3 (5.4)	25 (44.6)	26 (46.4)	1 (1.8)	56 (100)	

\*p>.05

<표 라-6> 소득연계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단위: 빈도, (%))

변인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결측치	계	$\chi^2$
유형별	일반대	0 (0)	0 (0)	4 (7.8)	28 (54.9)	17 (33.3)	2 (3.9)	51 (100)	11.151*
	교육대	0 (0)	0 (0)	0 (0)	3 (75.0)	1 (25.0)	0 (0)	4 (100)	
	산업대	0 (0)	0 (0)	1 (100)	0 (0)	0 (0)	0 (0)	1 (100)	
전체		0 (0)	0 (0)	5 (8.9)	31 (55.4)	18 (32.1)	2 (3.6)	56 (100)	

\*p>.05

**[부록 2] 위원 구성 현황**

대학재정대책위원회(33명)*		
구 분	소속기관명	성 명
위원장	목포대	임병선
부위원장	-	-
위 원	가야대	이상희
	가천의과대	송석구
	가톨릭대	박영식
	감리교신학대	김흥기
	강남대	윤신일
	건양대	김희수
	경기대	최호준
	경인교대	정동권
	경일대	이남교
	공주교대	전우수
	관동대	박희종
	그리스도대	고성주
	금강대	성낙승
	대구가톨릭대	소병욱
	동명대	이무근
	동신대	정기언
	부산대	김인세
	서울여대	이광자
	송실대	김대근
	신라대	정홍섭
	안양대	김승태
	영산선학대	남궁규
	예수대	서광수
	을지대	박준영
	인천가톨릭대	이석재
	중부대	최희선
	한국산업기술대	최준영
	한라대	이정무
	한림대	이영선
	한북대	김병철
	한서대	함기선
한신대	윤응진	
자문교수	숙명여대	송기창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정희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Ⅲ.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좌 장 이기수 위원장(고려대 총장)
- 발 표 정용생(동국대 법과대학장) · 장재욱(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토 론 최세훈 부장검사(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함정민 변호사(서울변협 홍보이사)

#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

정용상(동국대 법과대학장)

## 1. 머리말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은 7월 28일 공포, 9월 28일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고, 이후 2008년 2월 로스쿨 예비인가, 8월 29일 본인가절차를 거쳐 12월 5일 로스쿨합격자 발표과정을 거쳐 3월 1일 개원 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그 시행령을 성안 중에 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수준의 인가기준에 더하여 총정원을 2,000명으로 통제함으로써 올바른 로스쿨제도의 정착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은 사회개혁의 근간으로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며, 법조인양성시스템은 물론이고, 법학교육 및 법학학제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주요한 사안이므로, 결코 실패해서는 안된다.

한국고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교에서는 바람직한 로스쿨,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설계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여 로스쿨 정책수립을 견인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이하 ‘특위’라 함)를 가동하면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제시를 위해 2008년 10월부터 활동하였다. 그 방안의 골자는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과 “로스쿨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우수한 법률가 양성체제구축”이다.

## 2. 합리적 총정원 증원의 당위론 -로스쿨 총정원 3,000명 구조 확립-

### 1)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구현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로스쿨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과도한 통제, 규제는 반로스쿨적인 정책방향이다.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실무가양성 목적 외에 학문후속세대양성 기능까지 가진 완벽한 로스쿨을 위해서는 총정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1%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부록, <표1>참조).

### 2) 전문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실현을 위한 전제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120-160강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정원 40명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양질의 특성화교육과 법률실무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적정정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7%가 최소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부록, <표2>참조).

### 3) 법률시장개방대비

법률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조인 숫자의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무변촌해소를 위한 공익변호사, 사회전반의 특수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송무변호사 외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기업, 세무, 노동, 특허, 환경, 문화예술 전문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법조인 비율이 최하위(30위)인 상태에서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는 불가능하다. 변호사수의 증가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명 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1/50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1/10 수준으로 변호사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 4) 실질적 지방발전, 지역균형의 구현

로스쿨인가시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지방에 고루고루 로스쿨을 인가하였으나, 그 기준이 불공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차별 또는 지역 간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한 면도 있다.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정책 선 시행, 서울출신의 지방로스쿨 역류방지책, 해당 지역출신 입학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봉사기회부여, 변호사자격취득 후 해당지역 공익변호사로 활용하는 방안(서울로의 회귀방지), 지방 로스쿨의 지역수요에 맞는 로스쿨교육실시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총정원의 증원이다.

### 5)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논거

먼저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합리적, 합목적적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고, 전문화·다양화·특성화된 로스쿨교육의 실현을 위해,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정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총정원 3,000명 주장은 과학적·통계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로스쿨 인가기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7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의 대학에서 총정원 4,100명 이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로스쿨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조인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무변촌이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 122개(52%)에 이르고,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입률은 선진국의 9.5배, 국민소득대비 및 인구대비 소송건수는 일본에 비해 각 20배와 24.9배나 높으며, 의료서비스와 대비해 볼 때 법조인 수는 1/10에도 미달하는 등, 수많은 논거가 법조인증원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는 객관적 법조현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따라서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주장은 기존의 법률시장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치일 뿐 법률시장 수요를 감안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수치는 아니다.

### 3. 합리적 총정원 증원을 위한 방법론

#### 1) 로스쿨개정입법을 통한 해결

로스쿨제도는 필연적으로 법조인을 양산하게 되는 체제이다. 로스쿨 총정원은 입법사항은 아니나, 로스쿨정책 당국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결정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여 현행 법조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2) 사회적 공감대구축을 위한 대책 필요

로스쿨 총정원의 문제는 사법개혁,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사안이지, 기존 법조체제의 보완이나 법조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 법학계·법조계는 물론 사회공익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총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법조일원화(유사법조지역통합) 차원에서의 총정원 증원논의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발전적으로 법률관련지역의 통합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지역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지역통합을 위한 대전제는 로스쿨을 통한 법률가배출의 일원화이다. 모든 법률가는 로스쿨을 통해야 한다면, 로스쿨 총정원이 고도로 통제된 현재의 로스쿨구조로는 불가능하다. 로스쿨교육을 통한 법조지역 통합을 위한 변호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법학계, 사회단체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 4) 로스쿨정책의 변화를 통한 총정원 통제완화

현재 로스쿨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로스쿨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중에는 사정판결이긴 하지만 로스쿨선정과정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정부(교육부)의 로스쿨정책의 변화를 건인하는 판결이다.

현재 로스쿨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총정원의 과도한 통제 때문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로스쿨인가 및 대학별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기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 4. 로스쿨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1)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

로스쿨법의 목적과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법학자 양성을 추가하여 법학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전문가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법률가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2) 사전심사, 예비인가제도

무모하고 무리한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인가기준의 조정 및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로스쿨의 설치인가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로스쿨 인가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배려조항 추가

로스쿨의 설치인가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한 전국에 고루 사법복지서비스가 미치도록 하되, 지역균형이 수도권 또는 지역간의 소재대학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두도록 한다.

##### 4) 인가기준의 격상 -장관지침을 시행령화-

현재는 장관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로스쿨의 설치인가 및 예비인가기준을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가양성이라는 국가의 중요 문제에 관련된 로스쿨의 설치인가기준과 예비인가기준을 그 중요도에 걸맞는 법형식으로 규율하여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 5) 총정원의 최저한도 입법에 규정(3,000명부터)

현재는 로스쿨의 총정원에 관하여 로스쿨법에 아무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총정원의 최저한도의 기준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그 범위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정원을 정하도록 한다.

로스쿨 입학 총정원은 3천명 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정하고, 내년 입학준비를 준비하는 2011학년도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입학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최초 입학년도 이후 6년 동안은 3천명의 입학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4천명까지 증원하도록 정한다.

#### 6) 로스쿨평가기관의 복수화

현행법에서는 로스쿨평가기능을 변협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대교협과 변협이 함께 가지도록 해야 한다.

### 5. 구체적 실행방안

대교협 로스쿨특위산하 대외협력소위원회는 총정원의 증원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전국 권역별로 법조계와 법학계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협력소위원회는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로스쿨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 교육위, 법사위, 각 당 정책위, 원내대표단 등에 그 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위 로스쿨주무부처인 교과부의 장관 주재 하에 관련기관 및 단체대표(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를 포함한 대교협 특위위원들과의 간담회개최, 학계의견통일을 위한 로스쿨선정대학간, 로스쿨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간의 이견해소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비율의 적절성유지 및 공유의제의 발굴·확산(신규진입용이 및 과소정원해소, 지역균형원칙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총정원 증원의 정당성·당위성, 명분확산을 위해, 유사법조지역의 통합을 위한 조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 유관단체(대한변협,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의 총정원의 증원논의가 필요하므로 대한변협, 대한변리사회 등과 꾸준히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정한 사법발전과 법조발전을 위한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로스쿨법 개정을 통한 총정원 증원 노력과 함께 정부의 로스쿨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실무차원의 의견개진의 장을 마련하고, 특히 실질적 지방발전·지역균형의 구현을 위해 로스쿨이 그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제도 개선방안을 각 지역별 대표성을 띤 법조계·법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 6. 맺는 말

올바른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총정원 통제를 풀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인 자율과 경쟁, 그리고 철저한 평가에 따른 진입과 퇴출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추가진입을 허용하고 과소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 적정정원을 추가배정 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객관적·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정한 선정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된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반듯한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이 필수적이다.

대교협 로스쿨특위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입법과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대교협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법학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절실하다. 결국 대교협이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 총정원의 증원”만이 로스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이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대전제이다.

#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제

장재욱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I. 머리말

- 로스쿨은 오직 시험만에 의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체제의 폐해(대학 법학교육의 부실화, 법조인의 경쟁력 저하, 고시낭인의 양산, 독점적·고비용 구조의 법률서비스시장의 형성, 폐쇄적인 법조문화와 조직의 형성)에서 벗어나고자 도입된 제도임.
- 내실있는 법학교육(“점수에 의한 선발에서 프로세스에 의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국제화·개방화·광역화의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법률가 양성하라는 시대적 요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따른 것임.

기존 제도		로스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기 힘든 학부 교육의 한계</li> <li>○ 사법시험 과목 위주의 교과목 편성</li> <li>○ 법학부의 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 실무 교육의 이원화</li> </ul>	<b>법학 교육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성화된 법률가 양성</li> <li>○ 시험 과목 이외의 다양한 전문과목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배양</li> <li>○ 로펌, 기업 등 업무 협조를 통한 다양한 실무과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li> <li>○ 장기간 수험기간의 고시낭인 발생</li> <li>○ 암기식 위주의 시험 준비</li> <li>○ 고시 관련 산업의 과대화</li> </ul>	<b>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적성시험을 통해 법조인 자질 검증</li> <li>○ 엄격한 입시 기준에 의한 선발</li> <li>○ 시험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분야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충분한 지식 부족</li> <li>○ 사회의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되지 않음</li> </ul>	<b>전문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특성화 교육 실시</li> <li>○ 다양한 학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직역 확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의 수임료로 충분한 법률 서비스 이용에 부담</li> </ul>	<b>법률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수임료와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고시 준비로 인한 국가적인 인력낭비</li> </ul>	<b>국가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시장 개방 대처</li> <li>○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li> </ul>

(출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발간, 로스쿨홍보자료, 2009.3)

## II.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충실한 내용의 교육과정 운영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정 운영 필요

이에

- ① 실무와 연계된 교육체제의 구축
- ② 특성화의 취지 살리는 교육과정
- ③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각 로스쿨은 이 요구에 부응하여 ①법률문장작성, 모의재판, Legal Clinic, 산학연계 실무실습과정, ② 80-100개 과목의 전문법률과목 개설 ③ 국제기구연수, 외국대학과의 협동과정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III. 제도적 지원 방향

###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 실무법조인의 양성에 한정하고 있는 로스쿨교육이념을 확장하여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법학자 양성기능 추가, 총정원의 최저한도(3,000명) 등을 입법화하고 있는 박선영의원안 참조
  - 개별입학정원의 확보는 충실한 내용의 교육을 위한 필수적 전제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최저교원수 20명, 교원 1명당 학생 수 12명의 취지를 보면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수 240명, 최저 입학정원 80명을 확보하는 로스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4-50명의 입학정원 배정은 입법의사를 위반한 것임.
  - 총입학정원을 국가가 통제하여 법조인의 진입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의 소지도 있음. 헌법적으로 진입장벽을 정당화하는 부득이한 사유, 즉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임. 이러한 정당화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입장벽을 설치한 정부 측에서 부담함.
- 학내법무법인설치의 근거마련: 학생들의 소송실무교육을 돕고 공익활동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내로펌을 둘 근거를 로스쿨법에 명시함.

- 판검사과건제근거마련: 판검사의 현장감있는 실무 경험을 학생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에 의한 판검사과건의 근거를 로스쿨법에 둬.

## 2. 「변호사시험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 변호사시험법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느냐 못살리느냐의 시금석이 됨. 변호사시험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을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험 방법·시험과목, 합격결정방법 등에서 문제가 있음.

### 1) 시험방법·시험과목

- 실무능력배양 및 특성화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과목이 모색되어야 함.
  - 교육과정이 변호사시험 준비과정만 된다면 로스쿨 취지 살릴 수 없음.
  - 일본에서 특성화과목을 개설하고도 실제로는 변호사시험과목으로 변칙운영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가.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는 안

① 선택형시험(객관식시험)은 학생들을 문제해결능력과는 상관없는 지엽적 지식에 매달리게 할 뿐 아니라 법이 정하는 객관식 과목이 사법시험체제보다도 더 많음(상법, 행정법, 소송법등)

- 시험 과목 수가 많음으로써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시험 중심의 학습이 될 수 밖에 없음.
- 제8조를 개정하여 선택형시험(객관식시험)을 배제하고 통합논술형시험이 되도록 해야 함.

② 전문적 법률과목(선택과목) 중 시험의 대상이 되는 선택과목에만 수강이 집중됨으로써 특성화의 취지가 사라지고 시험의 대상이 아닌 과목은 고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2항<sup>3)</sup>에 단서를 두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법률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와 같이 일정 전문법률과목의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3)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양한 선택과목(기본과목 이외의 전문과목들)을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이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로스쿨의 특성화·전문화를 수월하게 하고 소수의 기본과목위주로 강좌가 개설되는 것을 방지해야함. 시행령안은 7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sup>4)</sup> 전문 법률과목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하는 한 선택가능한 과목이 7개 과목이 아니라 설령 20개라 하더라도 그 20개 과목외에 다른 과목은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을 것임. 로스쿨신청서에 80-100개 과목의 전문선택과목을 개설하기로 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수강을 유도하고 로스쿨 나름대로 특성화 과목 설강이 자유롭도록, 제한된 시험과목이 아니라 보다 많은 과목 학점의 이수를 시험응시 요건으로 할 필요 있음. 그리하여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반영한 영역의 일정학점(예컨대 15학점) 이상과 그 외 분야(실무분야포함)의 선택과목으로 일정학점을 이수하게 하여 총 2개분야 이상 일정학점 이상 이수를 응시요건으로 할 필요 있음.
- 「시행령안」처럼 선택과목을 두고 이를 몇 개의 과목으로 한정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이들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이는 법무부가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둔 취지로 밝힌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선택과목제도를 둔다는 것과<sup>5)</sup>도 상치됨.

## 나. 시행령에 반영하는 안

- 시행령(안) 별표 4의 1(각 과목별 배점비율(제8조 제3항 관련))에서는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5할’로 하는 배점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 더 선택과목의 비중을 더욱 낮춰야 할 것임.
-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들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시험관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따라서 각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 이수를 어떠한 형태로든 변호사시험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예컨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밖에 시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특성화과목 포함)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4) 변호사시험법「시행령안」 별표 1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일본 신사법시험은 도산법 추가하고 있음.

5)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 또는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시험과목이 아닌 전문법률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합격결정의 최저조건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위의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은 시험이 치러진 뒤의 합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음. 법개정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제10조 제1항이 밝히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를 살린 합격의 결정”이라는 큰 틀속에서 다양한 교과목이수가 가능하도록 일정과목 이수를 합격의 전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임.

※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과목 학점이수를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할 필요 있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로스쿨인가 비인가를 막론하고 68.9%에 달함(부록, <표11>참조).

## 2) 합격의 결정(합격률)

- 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성공적 정착의 핵심사안으로서 변호사 시험법 부칙에 첫 해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이상으로 명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나, 적어도 대통령령에서라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합격률이 낮아져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과목을 이수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사법시험체제에서처럼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폐해는 없어야 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하는 학업향상을 위한 경쟁이어야 함.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합격률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제8조 제4항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또 다시 법무부령에 위임하려고 하고 있음.
- 『시행령』에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순으로 응시자수의 80%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sup>6)</sup>라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

※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로스쿨인가대학은 응답자의 12.5%가 90%이상, 62.5%가 80%이상의 합격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로스쿨 비인가대학은 응답자의 10.8%가 90%이상, 27.0%가 80%이상, 40.5%가 70%이상의 합격률이 적당하다는 응답이었음(부록, <표13>참조).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서』, 2008.11.3.

### 3. 기타 관련현안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호)], [이종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9호)]: 현행 법률이 세무사 및 변리사자격을 자동 취득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공동대리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변호사직능을 저하시키는 개정 법률안이 계류중임.

-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안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보다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재 손실이며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임.
- 법조 인접 직역 통합으로 국가적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사법제도선진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된 법을 정비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분야를 양분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임.

#### 2) 병역제도관련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규정에 의거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편입 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으로 하는 제한연령은 국방부에서 병무청과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협의중에 있음.
  - 그 제한연령이 29세로 논의되고 있어 군입대를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효과가 단절될 우려와 현재 30세로 되어 있는 사법연수원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사법연수원은 2년 과정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 과정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의 경우 30세 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임.
  - 현재 로스쿨 군미필자 149명의 평균연령이 26세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연령이 29세임을 감안하여서도 30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 공무원휴직제도 관련

-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여도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이 불가능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임.

- 공무원 임용규칙(제82조)을 개정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포함해야 함.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대학원, 사법연수원, KAIST, MBA 등은 휴직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형평성에 어긋남.
  - 해외 로스쿨 진학 시 JD 과정은 물론 휴직연장(2년)으로 SJD과정까지 수료가 가능한데 비해 국내 로스쿨은 휴학대상이 아님.
  
- 국가공무원법(제72조6항) 및 지방공무원법(제64조7호)을 개정하여 휴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기간은 3년으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휴직기간 2년에 부합되지 않음.
  - 해외에서 유학하게 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한데 비해, 국내 연수 시 휴직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로스쿨 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IV. 재정적 지원 방향

### 1. 예산 지원 필요성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 등의 책무)에는
  -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학금을 충분히 확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정시 여야합의 되었음.
  
- 로스쿨은 ‘공공이익’에 이바지함
  -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및 법조시장 경쟁력 강화
  
- 강한 국가 통제에 의한 ‘인가주의’에 의해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므로 국가의 개입 강도에 비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엄격한 물적·인적 인가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대학의 재정상태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취지

에 따른 최소 입학정원 8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정원의 배정이나 총입학 정원의 통제에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전이 국가로부터 있어야 할 것임.

※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체의 6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부록, <표 5>참조).

## 2. 예산 지원의 내용과 기대효과

-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든지 법조인이 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됨.
-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있음으로써 학교별 특성화 및 전문화의 취지를 살려가고, 실무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충실하여짐.
- 로스쿨 제도 유지를 위한 체제정착금 지원함으로써 로스쿨 시설·관리 운영의 안정화, 교원 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
- 법학적성시험 응시료 지원
  - 타 국가시험의 응시료에 준하는 적정 수준의 응시료를 지원(출제경비에 해당하는 지원)함으로써 지원자 부담과 고액응시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경감하고 로스쿨 지원률 상승 효과를 이끌어 우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

## IV. 맺음말

-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 역시 과도한 정부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규제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순기능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로스쿨의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한 시험이 되어야 하고, 특히 시험 방법, 시험과목, 합격률 등에 있어서는 실무능력배양, 특성화, 국제화 등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 다양한 실무연수경험, 국제기구활동경험, 특성화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변호사시험점수가 아닌 로스쿨 학생의 특성화·전문화 정도나 연수·봉사경력과 같은 지표에 의해 진로·취업이 정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변호사시험이 다양한 실무연수경험, 국제기구활동경험, 특성화노력 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로스쿨인가 비인가대학을 막론하고 전체의 97.8%가 찬성의견을 보여 새로운 법조인 양성체제하에서는 사법시험체제에서와는 다른 평가지표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음 (부록, <표 9>참조).

- 그밖에도 법조직역확장을 위한 관·학·법조계의 노력 요망됨.
  - 공공기관·지자체의 로스쿨출신자 의무채용제, 부동산거래의 정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가 공증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임.

## 변호사시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 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 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 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록 1]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쟁점과 과제’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설문 조사는 198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09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56개 대학(26.8%)이다. 또한 응답한 대학 중 로스쿨 인가대학은 8개 대학이며, 이는 25개의 로스쿨 인가대학 중 32.0%에 해당한다. 응답한 대학의 특성과 설문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응답한 대학의 특성

구 분		대학 수	구성비(%)	구 분		대학 수	구성비(%)			
로스쿨 인가대학	설립별	국공립	3	37.5	로스쿨 비인가 대학	설립별	국공립	14	29.2	
		사립	5	62.5		규모별	규모별	34	70.8	
	규모별	대규모	7	87.5		규모별	대규모	16	33.3	
		중소규모	1	12.5			유형별	유형별	32	66.7
	지역별	수도권	4	50.0		지역별	수도권	11	22.9	
		비수도권	4	50.0			비수도권	비수도권	37	77.1
	유형별	일반대	8	100.0		유형별	일반대	43	89.6	
		교육대	0	0.0			교육대	교육대	4	8.3
		산업대	0	0.0			산업대	산업대	1	2.1
	합 계		8	100.0		합 계		48	100.0	

■ 설문 구성 내용

<표번호>	설문 구성 내용
1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
2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
3	로스쿨 선정 방식
4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의 지역 분배 정책
5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
6	개별 로스쿨에 국고 예산 지원시, 예산 규모
7	로스쿨에 대한 기대 효과: 로스쿨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임
8	2009년 3월, 설립된 로스쿨의 현 운영 상황
9	로스쿨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실무연수 경험, 국제기구활동 경험, 특성화 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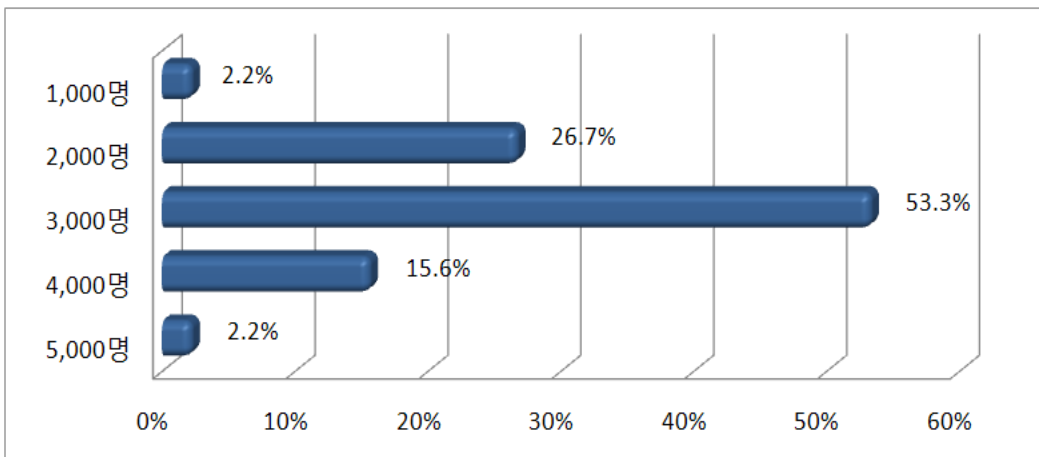
10	로스쿨의 기능: 유사 법조 직역(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통합을 위한 재교육
11	시험 응시 요건: 많은 과목 학점 이수
12	예비시험제도 도입
13	변호사시험의 적절한 합격률

○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3%가 총정원은 30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0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18.9%나 되었다. 즉, 응답자의 71.1%는 로스쿨 총정원이 3000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표 1>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5,000명	4,000명	3,000명	2,000명	1,000명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1 12.5%	0 0.0%	4 50.0%	3 37.5%	0 0.0%	8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0 0.0%	7 18.9%	20 54.1%	9 24.3%	1 2.7%	37 100.0%
전체	1 2.2%	7 15.6%	24 53.3%	12 26.7%	1 2.2%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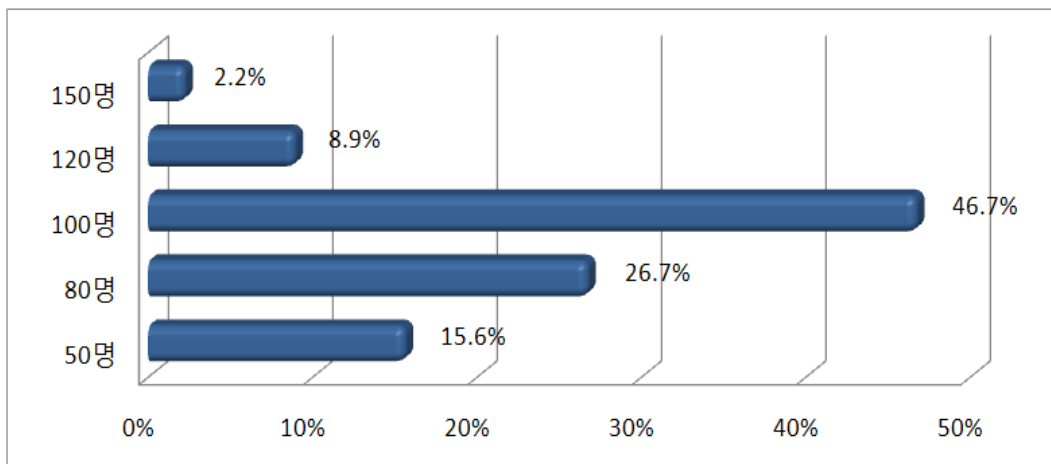
[그림 1] 바람직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

○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최소 100명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0명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26.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25개의 로스쿨 중 절반이하(13개)가 70명 이하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문제는 충분히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50명	80명	100명	120명	150명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2 25.0%	0 0.0%	5 62.5%	1 12.5%	0 0.0%	8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5 13.5%	12 32.4%	16 43.2%	3 8.1%	1 2.7%	37 100.0%
전체	7 15.6%	12 26.7%	21 46.7%	4 8.9%	1 2.2%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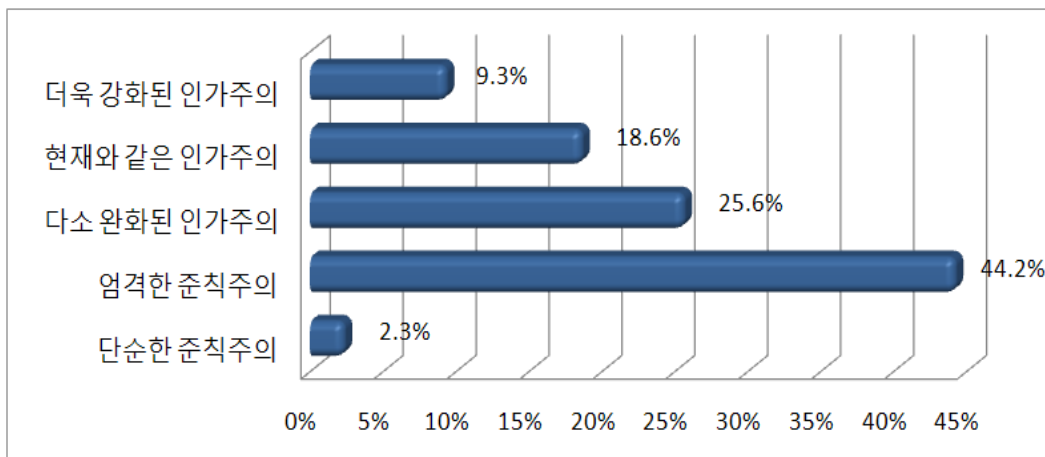
[그림 2]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

- 로스쿨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엄격한 준칙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소 완화된 인가주의', '현재와 같은 인가주의'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들이 로스쿨 선정방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인가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뒷받침 해준다.

<표 3> 로스쿨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단순한 준칙주의	엄격한 준칙주의	다소 완화된 인가주의	현재와 같은 인가주의	더욱 강화된 인가주의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0 0.0%	3 50.0%	1 16.7%	1 16.7%	1 16.7%	6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1 2.7%	16 43.2%	10 27.0%	7 18.9%	3 8.1%	37 100.0%
전체	1 2.3%	19 44.2%	11 25.6%	8 18.6%	4 9.3%	43 100.0%



[그림 3] 로스쿨을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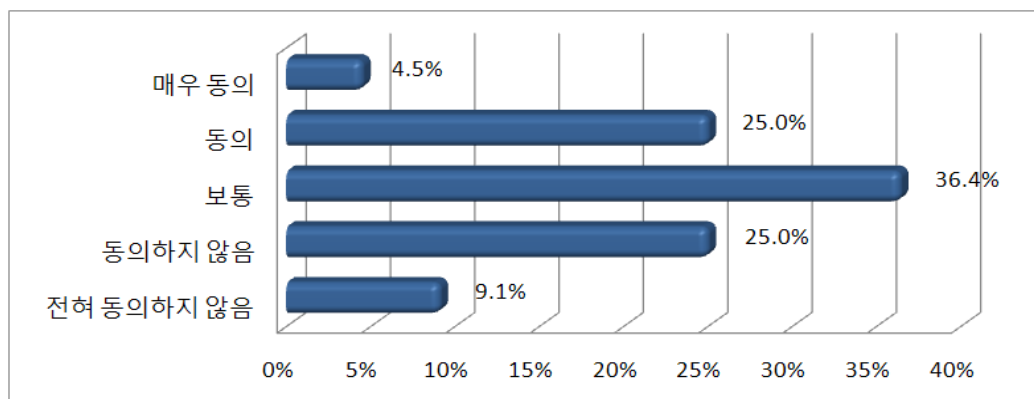
○ ‘로스쿨 지역 분배 정책이 지역발전에 순기능을 가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29.5%)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34.1%)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인가여부별로 보면, 로스쿨 인가대학의 경우, 로스쿨 지역 분배 정책의 지역발전 순기능 역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며, 이는 로스쿨 비인가대학의 의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지역발전 순기능에 대해 대부분(83.3%) 동의하지 않는데 반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로스쿨 지역 분배 정책의 지역발전 순기능 역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3 37.5%	1 12.5%	3 37.5%	1 12.5%	0 0.0%	8 100.0%	2.25	1.165	-2.076 *
로스쿨 비인가대학	1 2.8%	10 27.8%	13 36.1%	10 27.8%	2 5.6%	36 100.0%	3.06	0.955	
수도권	4 33.3	6 50.0	1 8.3	1 8.3	0 0.0	12 100.0	1.92	0.900	-4.819 *
비수도권	0 0.0	5 15.6	15 46.9	10 31.3	2 6.3	32 100.0	3.28	0.813	
전체	4 9.1%	11 25.0%	16 36.4%	11 25.0%	2 4.5%	44 100.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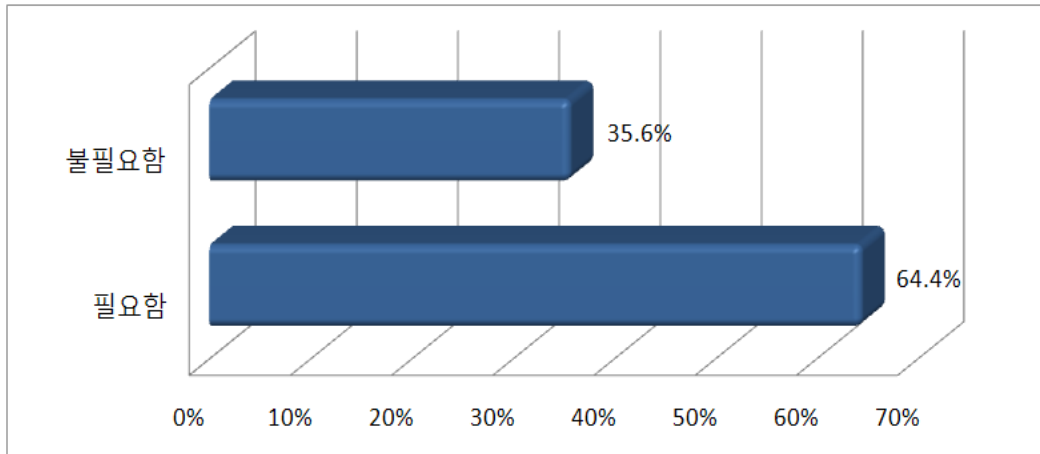
[그림 4] 로스쿨 지역 분배 정책의 지역발전 순기능 역할에 대한 의견

-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4%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로스쿨 인가대학의 경우 대부분(87.5%)이 입학정원의 제한 등으로 로스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의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표 5> 입학정원의 제한 등으로 로스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필요함	불필요함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7 87.5%	1 12.5%	8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22 59.5%	15 40.5%	37 100.0%
전체	29 64.4%	16 35.6%	45 100.0%



[그림 5] 입학정원의 제한 등으로 로스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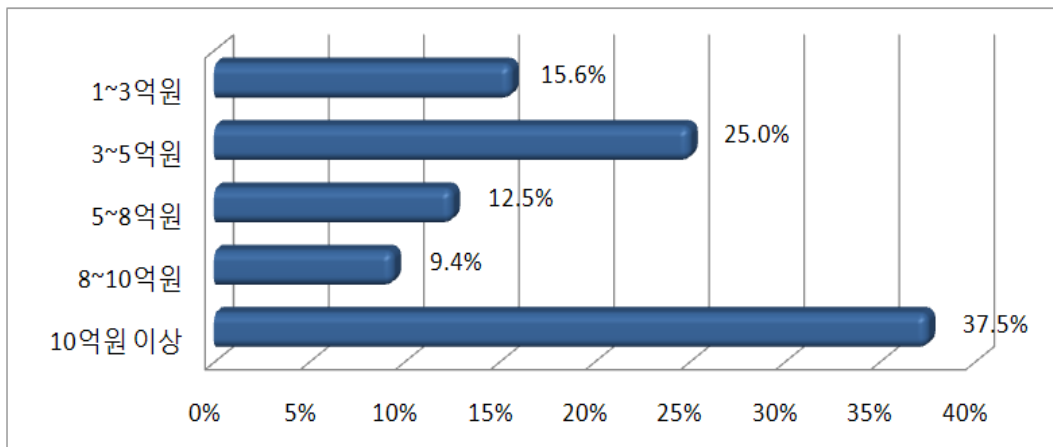


- 또한, 국고 지원시 개별 로스쿨에 10억원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표 6> 개별 로스쿨에 국고 예산 지원시, 적절한 예산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0억원 이상	8~10억원	5~8억원	3~5억원	1~3억원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5 83.3%	0 0.0%	0 0.0%	1 16.7%	0 0.0%	6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7 26.9%	3 11.5%	4 15.4%	7 26.9%	5 19.2%	26 100.0%
전체	12 37.5%	3 9.4%	4 12.5%	8 25.0%	5 15.6%	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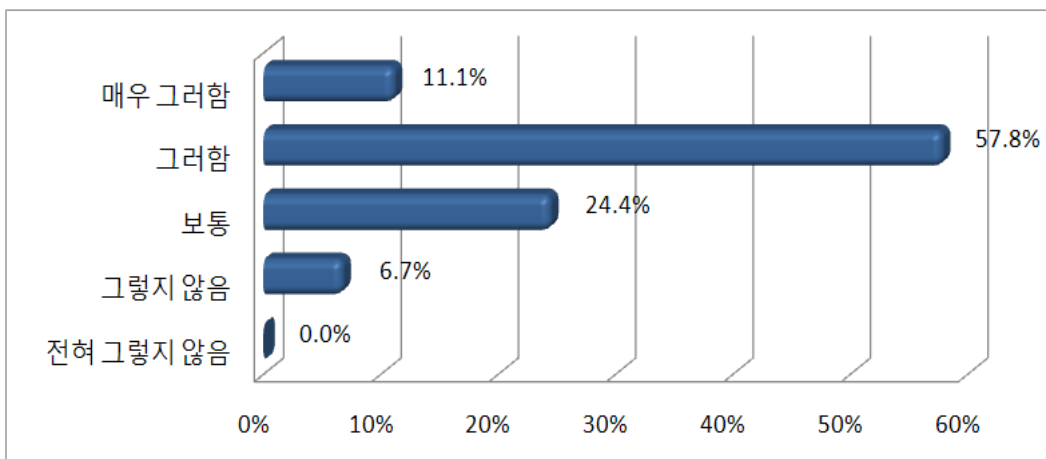
[그림 6] 개별 로스쿨에 국고 예산 지원시, 적절한 예산에 대한 의견

- '로스쿨이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6.7%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로스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측면들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로스쿨이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0 0.0%	1 12.5%	0 0.0%	5 62.5%	2 25.0%	8 100.0%	4.00	0.926	1.111
로스쿨 비인가대학	0 0.0%	2 5.4%	11 29.7%	21 56.8%	3 8.1%	37 100.0%	3.68	0.709	
전체	0 0.0%	3 6.7%	11 24.4%	26 57.8%	5 11.1%	45 100.0%			



[그림 7] '로스쿨이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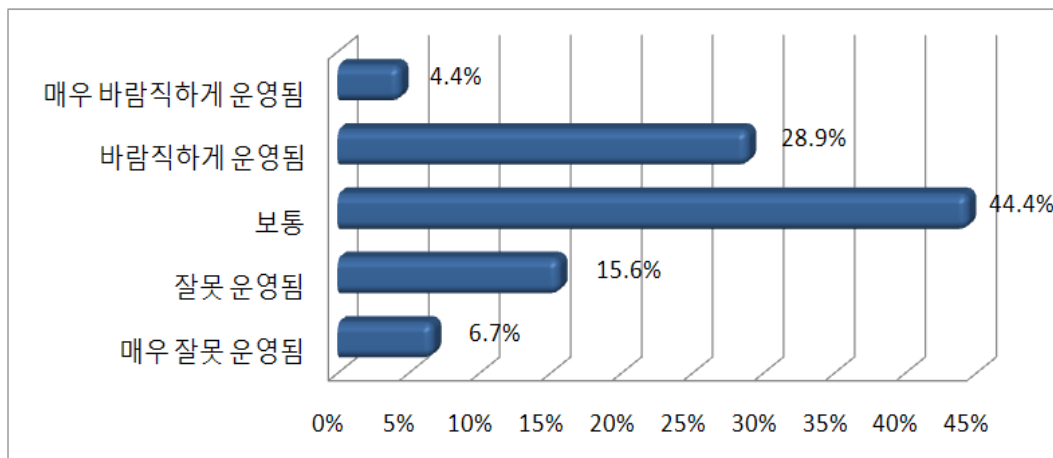
○ 2009년 3월에 설립된 로스쿨의 운영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33.3%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2.3%나 되었다. 또한,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사이에는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스쿨 인가대학의 경우, 응답자의 전원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인가대학의 경우, 응답자의 18.9%만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표 8> 현재의 로스쿨 운영 상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잘못 운영됨	잘못 운영됨	보통	바람직하게 운영됨	매우 바람직하게 운영됨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0 0.0%	0 0.0%	0 0.0%	6 75.0%	2 25.0%	8 100.0%	4.25	0.463	4.611*
로스쿨 비인가대학	3 8.1%	7 18.9%	20 54.1%	7 18.9%	0 0.0%	37 100.0%	2.84	0.834	
전체	3 6.7%	7 15.6%	20 44.4%	13 28.9%	2 4.4%	45 100.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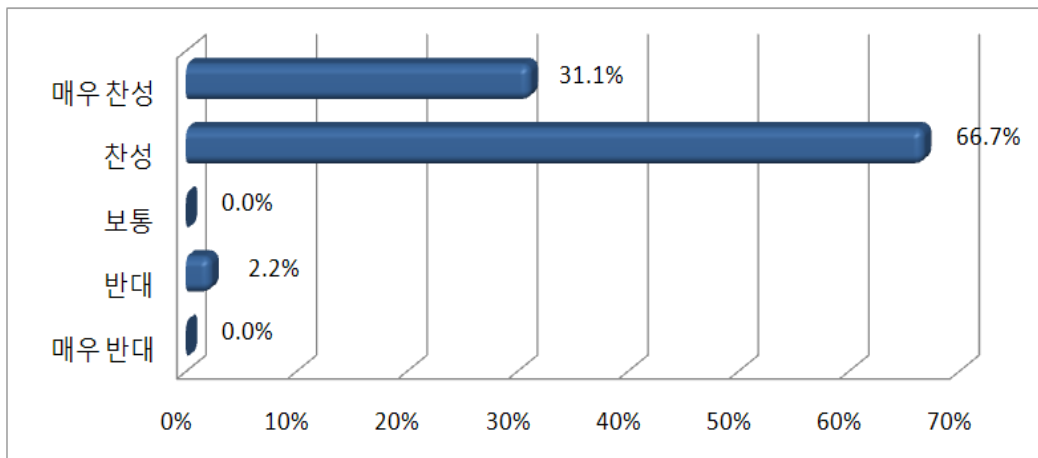
[그림 8] 현재의 로스쿨 운영 상황에 대한 의견

- 로스쿨 교육과정이 ‘다양한 실무연수 경험, 국제기구활동 경험, 특성화 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97.8%가 찬성하고 있다.

<표 9> ‘다양한 실무연수 경험, 국제기구활동 경험, 특성화 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0 0.0%	1 12.5%	0 0.0%	3 37.5%	4 50.0%	8 100.0%	4.25	1.035	-0.089
로스쿨 비인가대학	0 0.0%	0 0.0%	0 0.0%	27 73.0%	10 27.0%	37 100.0%	4.27	0.450	
전체	0 0.0%	1 2.2%	0 0.0%	30 66.7%	14 31.1%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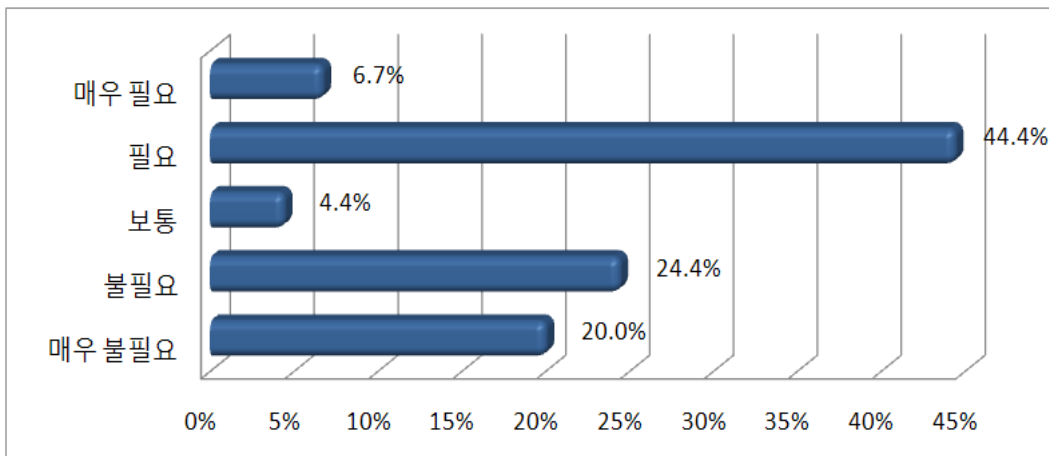
[그림 9] ‘다양한 실무연수 경험, 국제기구활동 경험, 특성화 노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유사 법조 직역(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통합을 위하여 로스쿨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예컨대 로스쿨에서의 단기 법률교육 후에 변호사 자격 부여)’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1%가 찬성하는 편이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44.4%나 차지하였다.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가대학이 인가대학에 비해 위와 같은 주장에 좀 더 찬성하고 있다.

<표 10> ‘유사 법조 직역(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통합을 위하여 로스쿨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4 50.0%	0 0.0%	1 12.5%	2 25.0%	1 12.5%	8 100.0%	2.50	1.690	-1.010
로스쿨 비인가대학	5 13.5%	11 29.7%	1 2.7%	18 48.6%	2 5.4%	37 100.0%	3.03	1.258	
전체	9 20.0%	11 24.4%	2 4.4%	20 44.4%	3 6.7%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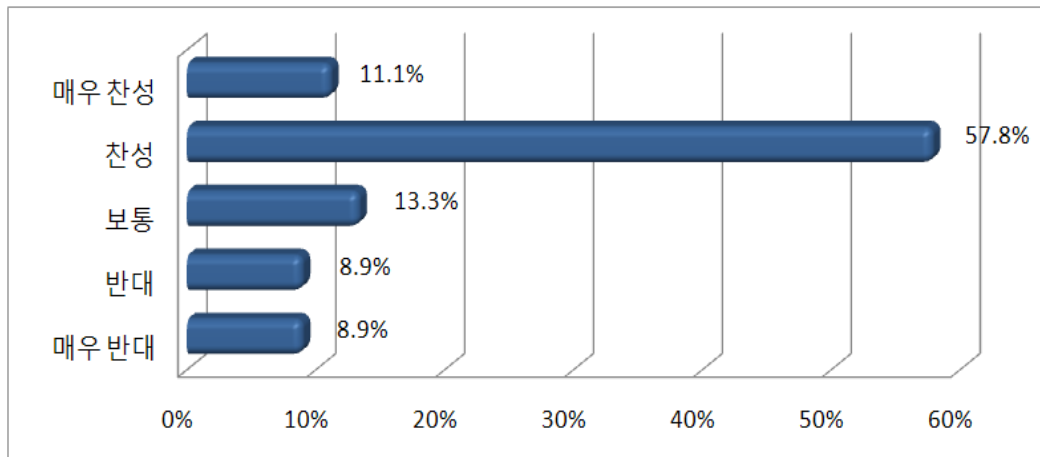


[그림 10] ‘유사 법조 직역(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통합을 위하여 로스쿨이 그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변호사 시험법 응시 자격으로 '많은 과목 학점 이수를 시험 응시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8.9%가 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11> '많은 과목 학점 이수를 시험 응시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 찬성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3 37.5%	0 0.0%	0 0.0%	5 62.5%	0 0.0%	8 100.0%	2.88	1.553	-1.924
로스쿨 비인가대학	1 2.7%	4 10.8%	6 16.2%	21 56.8%	5 13.5%	37 100.0%	3.68	0.944	
전체	4 8.9%	4 8.9%	6 13.3%	26 57.8%	5 11.1%	45 100.0%			



[그림 11] '많은 과목 학점 이수를 시험 응시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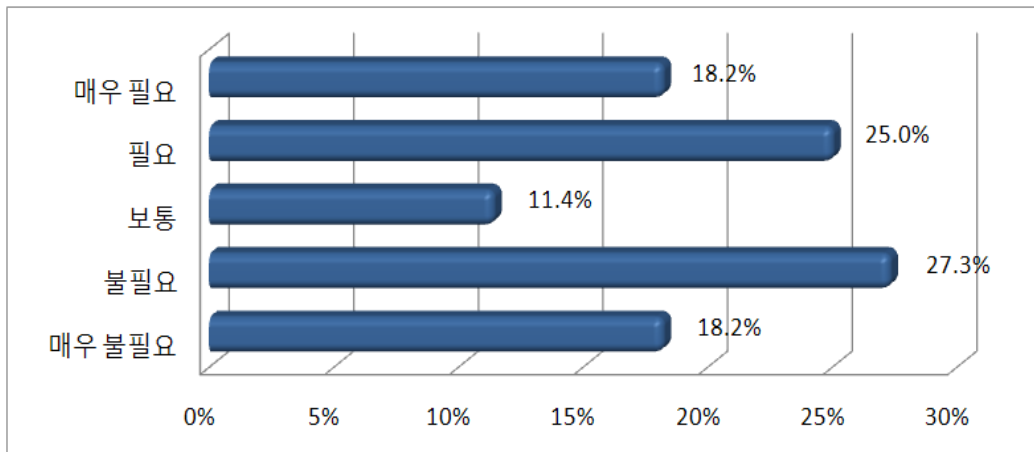
○ 예비 시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 사이에는 분명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로스쿨 인가대학은 응답자 전체가 예비 시험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로스쿨 비인가대학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비 시험 제도가 로스쿨 비인가대학에서는 ‘법학과’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비해, 로스쿨 인가대학에게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12>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
로스쿨 인가대학	4 57.1%	3 42.9%	0 0.0%	0 0.0%	0 0.0%	7 100.0%	1.43	0.535	-3.537*
로스쿨 비인가대학	4 10.8%	9 24.3%	5 13.5%	11 29.7%	8 21.6%	37 100.0%	3.27	1.347	
전체	8 18.2%	12 27.3%	5 11.4%	11 25.0%	8 18.2%	44 100.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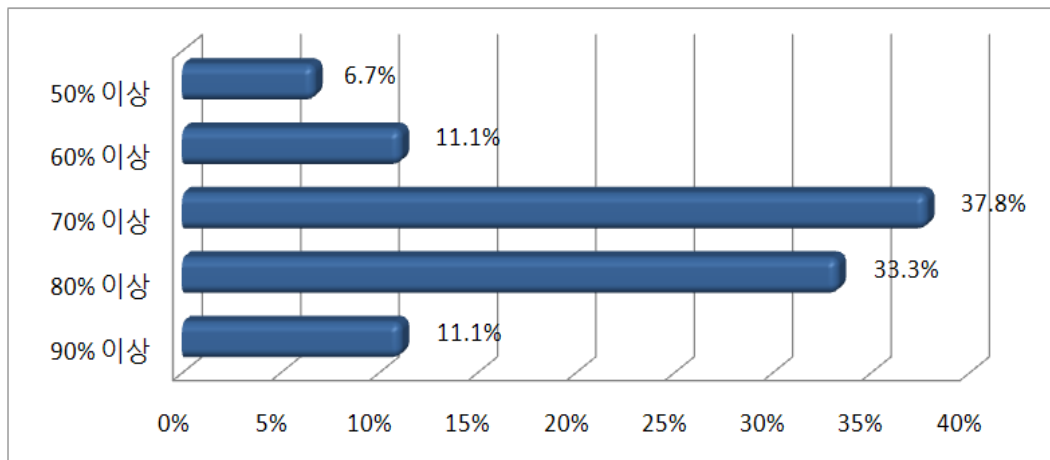
[그림 12]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합격률이 7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하였으며, 8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4.4%나 되었다. 또한 로스쿨 인가대학이 비인가대학에 비해 높은 합격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변호사시험의 적절한 합격률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전체
로스쿨 인가대학	1 12.5%	5 62.5%	2 25.0%	0 0.0%	0 0.0%	8 100.0%
로스쿨 비인가대학	4 10.8%	10 27.0%	15 40.5%	5 13.5%	3 8.1%	37 100.0%
전체	5 11.1%	15 33.3%	17 37.8%	5 11.1%	3 6.7%	45 100.0%



[그림 13] 변호사시험의 적절한 합격률에 대한 의견



**[부록 2] 위원 구성 현황**

<b>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18명)*</b>		
<b>구 분</b>	<b>소속기관명</b>	<b>성 명</b>
위 원 장	고려대	이기수
부위원장	영산대	부구욱
위 원	경상대	하우송
	단국대	장호성
	대진대	이천수
	동국대	오영교
	동아대	조규향
	명지대	유병진
	서남대	김응식
	선문대	김봉태
	울산대	김도연
	인하대	이본수
	제주대	최치규
	조선대	전호종
	청주대	김윤배
	한양대	김종량
	한중대	이승일
	홍익대	권명광
자문교수	중앙대	장재욱
자문교수	동국대	정용상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혜림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IV.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좌 장 서거석 위원장(전북대 총장)
- 발 표 반상진(전북대 교수)

# 국립대학 주요 정책 쟁점 사항 진단과 과제

반상진(전북대)

## 1. 현 정부 대학개혁의 추진방향과 정책

### □ 추진방향

- 대학자율화의 지속적 추진
- 대학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 주요 정책과제

#### 가.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 학생선발 다양화·특성화; 입학사정관제 등 재정지원 확대
- 대입업무 대교협/전문대교협으로 이양
- 중·장기적으로, 수능 응시과목 축소 등 대입 완전자율화 추진

#### 나.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 강화

-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 추진 ; 『국립대학 법인화』
  -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은 예산편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임해규 의원 입법 준비중)
- 학사운영 규제개혁 추진 ; 최소 기준 제외하고 대학에 포괄적 권한 이양
- 정보공시제 도입 및 대학 자체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

#### 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 대학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확대 ; 포물리(지표) 활용, 재원 차등 지원
-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 「5+2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거점대학 20개 육성
-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고급인력 양성
  - 법률, 경영, 의·치의학 분야 전문대학원 체제 본격 가동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지식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원 육성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장학 프로그램(MEST Scholarship) 추진
- 외부자금 유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대학내 민간기업 입주 허용 등

#### 라. 대학·출연(연)의 연구 역량 강화

- 연구성과에 연계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 WCU 사업
-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
  - 인문사회분야의 창의적 연구지원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의 확대 및 학문분야별 특화 사업의 내실화
  - 학문간 융합추세를 반영하여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문사회 학자와 과학기술자의 공동연구 사업
-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 BK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 Post-doc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연수기회 대폭 확대
  - 의과학자 과정생에게 장학금 지원 및 공동 교육프로그램 제공
-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 정부 R&D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 출연(연) 재도약을 위한 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편
- WCI(World Class Institute)를 통해 출연(연) 핵심 연구집단 육성
- 대학과 출연(연)간 협력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대학 및 출연(연) R&D사업 및 인력교류의 연계 강화
  -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유망기술 DB 구축
-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 대학의 특허출원, 보유기술의 DB화, 기술평가 및 특허관리 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 간접경비 지원 확대

#### **마.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 확대
- 효율적 관리 및 윈스톱 서비스를 위한 ‘(가칭)국가장학재단’ 설립

#### **바.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사학 재정확충 강화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사. 교육·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내실화
-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 대학·출연(연) 공동 인재양성 및 연구거점 마련
  - 출연(연) 연구역량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해 특화전문 대학원 설립과 학연협력연구센터 확대 추진

#### **아. 논의**

-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는 다르게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가 없어 교육개혁 관련 control tower가 없음.
  - 인수위에서 발표된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주로 교과부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틀이 선명하지 않음.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개혁은 교육복지적 차원보다는 시장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따라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음.
- 하지만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지방 대학 육성 사업, 학생 복지의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음.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성은 대학시장의 저변(fundamental)이 튼튼할 때 그 효과가 가중됨을 간과해서는 않됨.

## 2. 국·공립대학 관련 주요 핵심 쟁점 정책

### 가. 국·공립대법인화

#### □ 배경 및 추진경과

- 현행 국립대학 시스템으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에 국립대학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 요구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문서상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출발
  - ※ “원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특수법인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이들 특수법인화된 학교들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1998년 12월,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 수립
- 2000년, 국립대학발전계획,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 사업
- 2002년,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시 기획예산처는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 2003~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사례연구와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대비한 법제연구’ 추진
- 2005년 5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 혁신 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법인화 방안 대통령께 보고
- 2005년 8월, 「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2005년 9월, 학계 대표, 대학 관계자, 경제계 인사, 언론계 인사 등으로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
- 2005년 11월,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에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포함하여 대통령께 보고
- 2005년 12월,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
- 2006년 9월, 「국립대학법인의설치운영에관한특별법」(안) 초안

- 2007년 6월, 「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안) 국무회의 최종 심의·의결
  - 정부의 발의로 국립대법인화법(2007.6)이 사회적 의제로 부각
- 현재 교과부는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특별법과 시행령)으로 추진
  -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에서 법인화(안) 발표(2009.6.1)
  - 울산대는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2009년 개교
  - 인천대는 의원입법(조전혁 의원)으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

#### □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의 기본방향

-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선택에 의한 법인화 추진; 개별법으로 추진
-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범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 추진
- 국공립대학법인화는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자율화·다양화 기반 마련

#### □ 서울대 법인화 방안의 주요내용(2009.3.25발표안)

- 운영체제
  - 이사회 (최고의결기구) 구성·운영
    - 제1안 : 총장이 이사장 겸임, 내·외부인사 5:5 구성
    - 제2안 : 총장과 이사장(외부) 분리, 내·외부인사 6:4 구성
    - \* 총장과 이사장 겸임안 확정 발표(2009. 6. 1 주요 언론 보도)
  - 총장선출
    - 평의회에서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와 초빙위원회를 각각 거치고, 교직원 투표 후 이사회에서 선임
    - 임기 : 4년 및 연임/ 6년 단임
  - 재정위원회 (위원장 : 총장, 내·외부 인사로 구성)
  - 학사위원회 (위원장 : 총장, 내부 인사로 구성)
  - 평의회 (교수 외에 학생 및 직원 참여 검토)
    - 교육·연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대의기구로 존재
  - 외부 국립대학 법인평가기관을 통해 대학 경영성과 평가
- 획기적인 재정 확충
  - 추가 정부재정지원 확보, 세제상 우대 지속,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장학금

- 지원 확대, 학교법인 회계제도 개선 등
    - 국유재산 무상 양여 및 처분권 확보
  - 행정조직 개편
    - 제1안 :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구상
      - 3인의 부총장(교학, 관리, 대외)을 두고 현재 처실국 준치
    - 제2안 : 전문보직제 도입을 전제로 구상
      - 5인의 부총장(교학, 연구, 시설, 대외, 기획 및 대학원)을 두고 현재의 처·실국 폐지, 해당분야의 과장을 직접 관할
  - 인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
    - 법인직원으로 전환시 신분보장, 실적에 기초한 경쟁 도입
    - 정규직원 수 대폭 증가, 외국인 직원 10%까지 채용
    - 전임교수 수 대폭 확충, 외국인 교수 및 여성 교수 채용 확대
    - 법인화 초기 성과급제, 추후 연봉제 도입
    - 연금은 교직원의 선호에 따라 공무원 연금 유지 또는 사학연금 선택, 기성회직원 및 기금교수도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
      -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정부 보조
  - 기타사항
    -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 개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획기적 확대
    - 대학원생 생활 및 복지시설 확충, 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학문 및 보호학문 지원을 법률로 제도적 보장
    - 기존 캠퍼스 시설 충실화·다양화(해외분교, 국제캠퍼스 등 추진)
  - 국·공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쟁점사항
    - 국립대법인화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제임.
      -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화의 형식과 내용만을 따지고 있을 뿐 그것이 과연 대학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인가?
- 1)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 근거의 문제



-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저변에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함.
  - 이러한 논리는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 동안 국립대학은 통폐합 등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그 실효성을 점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로 전환해야한다는 논리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접근임.
  -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학 경쟁력 저하가 대학지배구조에 기인하는 것 인지 실증적 근거가 모호
- 국·공립대학법인화 체제로의 전환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장화,대중화 등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변혁이라는 논리의 근거가 희박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장친화적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대학교육의 상업화,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 감소, 등록금 인상 등 시장실패에 따른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로부터의 일정부분의 개입을 모색하고 있음.
  - 오바마는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파산 이후 케인즈 주의에 기반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면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Feb. 17th, 2009) 제정을 통해 무상학자금 지원(Pell grant) 확대와 고등교육 기회 균등 세액공제를 통한 모든 국민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 확대 정책 추진

## 2) 국·공립대학 법인화 차용모델의 적합성 여부 문제

- 국·공립대학법인화의 모델은 크게 “영미식 모델”과 “일본식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일본식 모델을 차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않음.
  - 영미계통의 법인화 유형은 부분적, 외부적 지배방식인 반면에 일본식 유형은 내부자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로서 시장지배적인 성격이 강함.
  - 정책차용의 비맥락성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 3) 국·공립대학법인화 추진 전략의 문제

- 현재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선택에 의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추진 전략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대학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전략적 선택에 의한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등적 재정지원 전략으로 정책 유인책을 적용한다면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음.
- 4) 국·공립대학법인화와 국가의 재정지원문제; 핵심사항
- 국·공립대학법인화 과정에서 국가의 책무, 즉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분리 추진된다고 하지만 과연 법인화와 재정운영과 분리되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모호한 입장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나. 국립대학재정·회계법

### □ 추진배경

- 정부개입 한계와 책임 재정운영체제 구축 필요
  -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고등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통제 위주의 대학재정운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결여
  - 정부기관의 회계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 수행 제약
  - 회계분리로 인한 효율성, 투명성 부족;
    - 국립대학 회계가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별 칸막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족
    -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다양한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미약
  -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인 부족

## □ 추진경과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8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97.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 '00.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제도 도입 : '01.1.
-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권고 : '02.1.
- 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02.11.
-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안)발의(이주호 의원) : '05.5.
-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 '08.4.~5.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시안)'발표:'08.5.28
- 공문을 통해 시안에 대한 국립대학 의견수렴 : '08.5.28~6.13.
- '공투위'와의 간담회(5회) 개최 : '08.5.~7.
- 공청회 개최 : '08.6.26.
-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간담회 개최 : '08.8.20.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확정 : '08.9.22.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법 제정 절차 추진 : '08.9.~11.20.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안'국회제출:'08.11.21.

## □ 주요내용(법안취지중심)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
  - 중앙정부회계로부터의 독립된 예산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이 장기발전계획을 적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립대학 내 회계단위의 통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회계감사의 도입, 예·결산의 공개의 무화를 통해 투명성 확보
- 국립대학의 자구적 재정보호 유도 및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
  - 수업료, 수수료 등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당해 대학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구노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특수법인형태의 발전기금을 통해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자적

자원 획득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전용 및 결산상 잉여금의 이월 허용을 통해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국립대학 내에 설정된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간의 전입·전출 허용함으로써 대학총자원 관리개념 적용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쟁점사항

- 본 법안취지의 문제 ; 대학재정 및 회계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인가? 법인화를 위한 사전 조치인가?
  - 대학의 지배구조와 재정운영이 별도의 법안으로 제안되는 근거 불명료성
-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 문제
  - 제4조(국가의 지원) 제1항에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 안정적 재원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
- 대학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책 부재 문제
  - 대학등록금의 결정은 국립대학의 장이 실시하며(제34조 수업료 등), 이에 대한 심의·의결은 재정위원회에서 하도록(제8조 제5항의 2) 규정하고 있음.
  - 국립대학이 재정확보의 가장 쉬운 수단인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 ※ 일본이 국립대학을 2004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시킨 후 소규모의 지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 현상 발생
- 재정위원회 기능과 구성의 문제
  -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총장의 하위기관으로 전략 혹은 구성원간 갈등의 소지문제 안고 있음.
  - 이를테면, 수업료 및 입학금은 총장이 책정하고 이에 대해 재정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권이 없는 재정위원회의 기능임.
  -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항간의 이용을 실시할 수 있음.
  - 반면에 재정위원회는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의 증감을 할 수 없음.
- 기성회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문제

- 기성회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부분이 법안에 전혀 언급 없음.
- 운영상의 문제
  - 교비회계의 세입에 국유재산 사용료 불포함 문제 해결
  - 생활협동조합의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 종합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음. 산학협력단 회계, 발전기금재단 회계 그리고 교비회계 간에 전입·전출이 가능하지만(법안 제 32조) 각 회계의 통합회계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 추진배경

- 고등교육의 질 및 국가경쟁력 향상 위해 고등교육재원 총량 규모 확충과 안정적 확보 장치 마련
- 고등교육의 최소수준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
-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감축을 통한 예산의 세입구조 개선
- 고등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율성 제고
-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식 개선

### □ 도입 논의 배경

- 2000년, 교육학계에서 논의 전개(송기창 등)
- 2002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권고
- 2003년 11월,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의원입법 형식 제출
- 2004년 11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의원입법 발의 (박찬석의원)
- 2008년 9월, 대교협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세미나
- 2009년 5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심포지엄(임해규 의원)

### □ 주요내용(법안취지 중심)

#### 1) 목적

-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함(제1조).

## 2) 교부금의 재원

-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8/100 에 해당하는 금액(제3조 제1항)
  - 2009년 기준 교부금 총액은 10조 4,284억원으로 추정
  - 2009년 기준 고등교육예산은 약 5조 2,117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 3) 교부금의 종류와 교부방식

- 보통교부금 교부금 총 재원의 60% (약 6조 2,570억원)
  - 내용 국립대학의 보통교부금은 인건비(국공사립대학), 운영비(국립대학), 시설비(국립대학) 등의 재원
  - 교부 방식
    - 국립대학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함.
    - 공·사립대학은 교원의 보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 교부
- 사업교부금 교부금 총 재원의 40% (약 4조 1,714억원)
  -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사업
  - 고등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 고등교육기관 간 통 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 고등교육기관의 산 학 협력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 4) 교부금의 교부제외 등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쟁점사항

### 1) 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

- 보통교부금 규모는 공사립대학에게는 3조원 정도, 국립대학에게는 1조 1천억원 정도 추가 지원하는 수준

〈표 3〉 설립별 보통교부금 교부 결과 비교

(단위:억원)

구분	보통교부금		국고지원규모 (2008년기준)	추가 증액	비고
	설립별 규모	합계			
국립대	32,570	62,570	21,354	11,216	국립대학일반회계
공·사립대	30,000		0	30,000	공·사립대학교원의 보수반액

주) 국립대학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3조 2,570원이라고 하면 국립대학 자체 부담(일반회계, 기성회계 포함)은 7,629억원 정도로 대학 자체 부담률은 19%에 불과함.

2) 보통교부금 성격의 문제

- 국립대학의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때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방식’은 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각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이 적을수록 교부금 지원이 많아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오히려 억제할 가능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공사립대학 교원의 보수 지원의 법적 근거 불분명
  - 설립자가 다른 대학 교원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 미흡
  - 행정당국의 통제 불가피, 자율성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 국립대학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원의 보수 반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고지원의 중복 지원 문제
  - 사립대학의 보수 편차로 인해 보수의 반액 지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이 없으면 사립대학 당국과 교수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음.
  - 공·사립대학 교원의 보수 반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이 과다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

3) 교부금의 교부 제외 대상 조항의 문제

- 법(안) 제7조(교부금의 교부 제외 등) 제1항 3호, ‘... 최근 3년간의 재학생

수가 매년마다 학교규칙에서 정한 학생 정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되어 있음.

-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자칫 부실 사학 유지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강함.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개선 사항

##### 1) 법(안)에 대한 국립대학의 기본입장

-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이 법안에 의해 고등교육투자의 최소수준 유지,
  - 고등교육재정 확보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변화나 정치적 논리 배제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대학정책의 수립 추진 가능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단순히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재정지원 요구가 아닌 자율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유인할 수 있는 자율조정장치 마련에 초점
- 현재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사립대학 위주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공생하며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함.

### 3. 대안 모색을 위한 향후 접근 방향과 의제 설정

#### 가. 국·공립대학의 경쟁력과 생산성 수준 진단

-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 저변에는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는 부족함.
- 따라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과 생산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국공립대학의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나. 정부와 국립대 구성원이 합의에 의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미국과 일본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 법인화 추진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성화된 국공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 모색
  - 국립대학과 국가의 역할이 분리된 일본식 유형의 내부자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체제가 아닌,
  - 주립대학과 주정부간의 교육, 조직, 인사, 재정 분야에 관한 주립대학과 주정부간의 조정 기능(coordination)을 수행하는 영미계통의 부분적, 외부적 지배방식의 법인화 유형 연구

#### 다. 단계적 전략 모색

- 현재 국공립대학 개혁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국립대법인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 제시 2008. 5, 국무회의 통과 2008. 11)”,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임해규 의원입법)” 임.
- 국립대법인화 문제의 핵심은 국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여부임.
- 따라서 현 정부의 대학개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운영 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선결이 되고, 그 이후 “국립대법인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로부터 재정확보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대학간 구조개혁의 자율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부록] 위원 구성 현황**

<b>국공립대발전위원회(21명)*</b>		
<b>구 분</b>	<b>소속기관명</b>	<b>성 명</b>
위 원 장	전북대	서거석
부위원장	-	-
위 원	강원대	권영중
	강릉원주대	한 송
	경상대	하우송
	공주대	김재현
	군산대	이희연
	대구교대	손석락
	부산교대	김상용
	부산대	김인세
	서울교대	송광용
	서울산업대	노준형
	안동대	이희재
	전주교대	나기연
	진주교대	정보주
	창원대	박성호
	청주교대	김수환
	춘천교대	김선배
	충남대	송용호
	한국체대	김종욱
	한국해양대	오거돈
한밭대	설동호	
자문교수	전북대	반상진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호섭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V. 사학법대책위원회

- 좌 장 문성모 위원(서울장신대 총장)
- 발 표 이시우(서울여대 교수)
- 토 론 최성해 위원(동양대 총장)  
채훈관 위원(영동대 총장)

# 사립학교법 문제

- 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및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

이시우(서울여대)

## I. 문제제기

- ◆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의 자율화/규제완화/책무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 ◆ 그런데 자율화/규제완화/책무성 확보의 걸림돌은 통제 중심의 사립학교법제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책의 부재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립대학들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경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II. 사립학교법 개폐 문제

### 1.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가진 사립학교법
- ◆ 사학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립학교법
- ◆ 사학의 자유에 관한 구체화 규정이 없는 사립학교법
- ◆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법

### 2.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 ◆ 제1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 제2안: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 제3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으로의 편제
- ◆ 소결: 제1안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제2안이 바람직하며, 특히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을 통한 사립대학에의 재정지원은 대학교육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임. 제3안은 법체계적 장점은 있으나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결정 및 현행 사립학교법과 연계된 30여개에 달하는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안으로 사료됨.

### Ⅲ.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 1.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제안이유

##### (1) 실태와 문제점

##### 1)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재정지원 실태

- 사립대학의 비중(07년): 대학 수 87%, 교수 수 76%, 학생 수 75%
- 국고보조금 편중: 국립대학 80%, 사립대학은 1/4 수준인 20%
- 학교당 국고보조금 편중: 국립대학 96.1%, 사립대학 3.9%
- 학생당 국고보조금 편중: 국립대학 92.8%, 사립대학 7.2%
- 그러나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사립대 학생1인당 국고지원액: 40만1천원(03년)→73만8천원(05년)
  - 국립대 학생1인당 국고지원액:606만4천원(03년)→772만3천원(05년)

##### 2)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재정지원의 문제점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 학부모 교육비 부담의 국립·사립 간의 불공평성(사립대 학부모의 이중부담)
-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심화 및 교육여건의 악화

- 사립대학의 경쟁력 상실
  - 경제규모 12위,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경쟁력 40위(07년)
- 낮은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로 국가경쟁력 상실
  - skill mismatch: 59위(04년)→50위(06년)→53위(08년)(IMD 평가)

## (2)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제안이유

### 1)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필요

-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 사회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과제
-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경쟁력 제고 경향 (21세기는 대학의 세기)
- 대학교육을 통한 우수한 고급인력 양성 필요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교육여건 개선은 소수의 대학이 아닌 대학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고려

- 고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은 더 이상 지불능력 있는 소득계층만의 「상품」이 아니라, 중등교육처럼 재정지원의 사회적 책무성이 필요한 「공공재」임
  - 취학적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69.3%(일반대학 45.5%)  
11.4%(80년) → 23.6%(90년) → 52.2%(00년) → 69.3%(07년)
  - 진학률 82.2%(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미 67%, 일 47%  
27.2%(80년) → 33.2%(90년) → 68.0%(00년) → 82.8%(07년)
-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필요
  - 4년제 사립대학 수 86%, 교수 수 75%, 학생 수 79%
-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과제를 사립대학이 대신해 왔다는 사실 인정 필요

### 3)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 교육은 누구나 받을만한 가치가 있음
- 성, 연령, 신분,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제한 배제
- 학부모 교육비 부담의 국립·사립 간의 공평성 보장 필요
-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동질성

#### 4) 사립대학 재정의 취약성과 한계에 이른 재정확충

- 사학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자산의 수익성 없거나 매우 낮음
- 그러므로 법인전입금 확충에 한계 (전체평균 12% 정도 ?)
-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정책이나 지원제도의 미흡

#### 5)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립대학 지원

- 사립대학 국고보조비율: 한국 4.5%, 미국 16.1%, 일본 12.1%, 독일 25%
- 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부담률: 한국 0.6%, OECD 평균 1.1%
- GDP 대비 고등교육 민간부담률: 한국 1.8%, OECD 평균 0.4%

#### 6) 교육재정법률주의의 구현

- 헌법 제31조 제6항(교육제도법정주의) : 교육제도및운영법률주의, 교육재정법률주의, 교원지위법률주의 → 국회의 입법부작위
-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직접적 지원 관련 법령의 부재
- 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육성 규정을 선언적 의미로 인식하는 듯함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재정법률주의는 사학 재정에도 해당됨

## 2.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주요내용

### (1) 육성재원의 확보 및 지원 대상 사립대학

-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상(제3조 제1항)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지원 가능성 규정(제3조 제2항)
- 지원 대상 사립대학은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함(제2조 제1호)

## (2) 학교법인의 책무

- 학교법인의 학생 경제적 부담 적정화 및 교육여건 개선 노력 의무(제4조 제1항)
-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공정, 투명 운영의무(제4조 제2항)

## (3) 사립대학육성위원회 설치

-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급비율, 지원 조치, 감액, 중단 등 방안 심의, 학교법인의 해산, 잔여재산처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사립대학에 대한 그 밖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제5조 제1항, 제2항)
-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 이 중 3인은 국회추천위원,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민간 경제계 및 학술계위원, 나머지 3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으로 함.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경제계 및 학술계 위원 1인과 교과부장관의 공동위원장으로 함(제5조 제3항, 제4항)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제5조 제5항)

## (4) 사립대학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 감액 및 중단

- 국가는 사립대학의 장에게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적 경비 중 100분의 50 이상의 보조금 지급.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비율은 사립대학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함. 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경상적 경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 본 법률 제3조 제1항 육성재원 및 제6조 제1항 보조금 지급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상 제6조 제1항)
- 경상적 경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3항)
- 법령위반, 정관이나 학칙위반, 현저하게 낮은 학생충원율, 재정상황 불건전, 기타 교육조건 및 관리경영의 부적정 경우 보조금 감액 또는 중단(제7조)



**(5) 그 밖의 지원(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우대조치, 캠퍼스부지 조성 등)**

-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그리고 개인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제8조 제1항)
- 미국의 경우 Morrill Land-Grant Colleges Act(1862년)로 대학발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부지에 사립대학이 들어서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성원가로 사립대학에 부지를 제공한다.**(제9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양도 또는 대부 가능(제9조 제2항)
-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제10조): 학교법인은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가능 시에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 가능(제1항), 이사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잔여재산처분계획 제출(제2항 및 제3항),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설립자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국가가 해산장려금 지급**(제4항 1호),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 사용 재산의 국가 매입**(제4항 2호): 이 부분은 사실 2012년 이후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비의 의미가 있음. 2009년 3월 현재에도 정원을 30% 이상 채우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27개에 달하는 현상을 보면 앞으로 **사립대학의 통폐합, 부실 사립대학의 인수합병 내지 해산** 등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됨. 이런 의미에서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사립대학육성특별법에 마련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함.

**(6) 보조금 등 관리와 관할청의 권한**

- 보조금과 지원금은 **교비회계에 편입함**(제11조). 그리고 관할청에의 사립대학 장의 **결산보고의무**(제12조)
- 보조와 지원 관련 업무 및 회계상황 보고요구, 예산 변경조치 권고, 필요시에 조사 및 감사 권한을 관할청이 행사함(제13조)

### 3.2.7 본 법안 제8조 제1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본 법안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립대학 소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필요로 함. 이를 본 법안 부칙 제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정치자금 및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또는 「사립대학육성특별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에 제공한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3.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의 효과 -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효과

#### (1) 전체 사립대학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전체 사립대학의 교육의 질적 개선이 대학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짐
- IMD 등 대학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경제 위상에 걸맞게 상위 20위권 진입 목표 달성에 최대한 기여 (HE-20-Project)

#### (2) 사립대학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학부모 교육비 부담의 국립·사립 간의 불공평성 완화

#### (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

- 물가인상률 정도의 등록금 인상이 가능

#### (4) 소득재분배 효과

- 일시적 직접적 금전지원보다 교육비지원은 장기적 소득재분배 정책

- 일시적인 직접적 금전지원보다 교육비지원은 보다 생산적
- 경상비 지원으로 경감된 재원을 교육·연구뿐만 아니라 학생장학금에 상당 부분 배정

**(5)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에 대한 대우 향상**

- 경상비 지원으로 경감된 재원을 일정부분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 대우 향상에 배정 가능

**(6) 사립대 사이의 경쟁 제고**

- 사립대지원은 경쟁을 통한 사립대의 질적 발전에 기여

**(7) 10년 안에 세계 100위 안에 드는 10개 사립대학 출현 기대**

- 사립대학 지원사업으로 사립대 10-10플랜 수립이 가능 (10-10-Plan)

**(8)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 2007년 기준 OECD 국가평균이 GDP의 1.1%인데 우리도 1% 도달

**(9)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사립대학 학교법인들의 보다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의지

**(10)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헌도 제고**

-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보다 높은 인식으로 사회기여도 증대

**(11) 교육활동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

-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함
-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양성된 전문가를 필요로 함
- 그러나 고등교육 수익률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낮고 교육비는 높으므로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투자가 적음
- 그러므로 고등교육이 지닌 외부효과만큼 국가의 지원과 보조가 필요

#### 4. 재원확보 및 소요예산추산 - 예산명세서

##### (1) 육성재원 예산의 확보

-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상(제3조 제1항)
- 최소 지원 기준 예산액 : 5조 3,300억(08년 예상 GDP 0.55% 수준)
  - 산출내역(2008년도 기준)
    - 가. 2008년 GDP 예상치 969조원의 1.1%(OECD 평균치)인 10조 6,600억
    - 나. 사립대학육성재원기준액 : 가 $\times$ 1/2 = 5조 3,300억 이상
- 육성재원 예산 확보 방안
  - ①내국세 일정률로 확보하는 방안 : 재정팀 보고서 참조, 예)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42
  - ②고등교육세 신설 또는 교육세의 고등교육세로의 전환 방안 : 재정팀 보고서 참조
  - ③인재지원육성특별세 도입 방안 : 기업체나 산업체 등의 사립고등교육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선투자 형식의 목적세 도입. 기업체의 동의 내지 참여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관건.
  - ④고용보험기금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한 확보 방안 : 고용보험기금 활용은 취업이나 실업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이라는 고용보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종부세도 재산세로서 지역공공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함. 그러나 재원의 규모에 한계 있음.

##### (2)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 예산

-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립대학의 장에게 당해 사립대학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적 경비 중 100분의 5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경상적 경비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 이는 제3조 제1항

의 육성재원 및 제6조 제1항 보조금에 포함될 수 있다.(제6조 제1항) (예를 들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

○ 사립대학 지출 및 경상비 규모(05년 기준)

- 사립대학 지출 총액(05년): 17조 3,206억원

- 사립대학 경상비 지출 총액(05년)

①보수 총액: 5조 7,155억원

②연구학생경비 총액: 3조 9,582억원

③관리운영비 총액: 1조 5,921억원

①+②+③ = 총액 11조 2,658억원

-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10 (05년 기준)

①보수 총액의 100분의 10: 5,715억 5천만원

②연구학생경비 총액의 100분의 10: 3,958억 2천만원

③관리운영비 총액의 100분의 10: 1,592억 1천만원

①+②+③ = 총액 1조 1,265억 8천만원

-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 (05년 기준)

①보수 총액의 100분의 50: 2조 8,577억 5천만원

②연구학생경비 총액의 100분의 50: 1조 9,791억원

③관리운영비 총액의 100분의 50: 7,960억 5천만원

①+②+③ = 총액 5조 6,329억원

- 사립대학육성재원: 50% 경상비 지원의 경우 약 5조 6,300억(05년 기준 경상비 총액의 약 50%)

- 지원대상 대학 수 : 총 300개 사립대(07년 총 사립 고등교육기관 수 354개)

가. 사립 일반대학 150개교(07년)

나. 사립 산업대학 8개교(07년)

다. 사립 전문대학 137개교(07년)

- 1개교 당 평균 경상비 지원액 : 5조 6,300억÷300개교=약 188억

- 1개교 당 규모별 경상비 지원액 추정 : 50억~300억

## IV.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

### 1. 사학의 자유 보장

-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규정이 없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근거한 사학의 설립 및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필요함.

### 2. 개방이사제 위헌성 해소

-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방식은 개방이사의 선임권이 실제로 학교법인에 있지 않고 대학평의회 내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 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음. 즉
- ① 제1안 : 개방이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모두 폐지)
- ② 제2안 :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교육·학술계 등의 인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개방이사제 유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폐지)

### 3. 대학평의회 제도 문제점 해소

- 제1안 : 현재는 사립대학 내에서 법적 심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교무위원회나 학·처장회의와 같은 기구들과 그 기능 및 대표성이 충돌하고 있음. 그러므로 대학평의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무위원회 또는 학·처장회의와 같은 기구들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제2안 :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기구로서 대학평의회제도를 유지하되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화 함으로써 기존의 교무위원회 또는 학·처장회의와 기능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 관할청의 직접적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사회제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도 분쟁이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도입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종교계 소속의 성직자 자격이 빠져 있는 점은 종교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구성방법이나 소속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그러므로 상임위원제를 도입하여 사분위 업무를 상임위원장과 1인의 상임위원이 상근하여 보도록 하고, 사분위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지원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분위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부록 1] 사립학교법에 관한 설문 결과

### 1.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9.5.14(목)~5.26(화)
- 조사대상 : 회원대학, - 조사방법: 이메일
- 응답대학 : 56개대학

구분	설립별		규모별		지역별		유형별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수도권	지방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학교수	17	39	23	33	15	41	51	4	1
%	30	70	41	59	27	73	91	7	2

### 2. 설문응답결과

- 1) 사학의 설립 및 경영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계
사례수(교)	21	15	10	0	0	10	56
비율(%)	37.5	26.8	17.9	0	0	17.9	100

- 2)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제가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 제도에 대해 폐지 혹은 개정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폐지	개정	기타	무응답	계
사례수(교)	22	21	2	11	56
비율(%)	39.3	37.5	3.6	19.6	100

- 3) 현행 사립학교법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대학의 교무위원회 등의 기능과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의 폐지 혹은 자문기구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폐지	자문기구화	기타	무응답	계
사례수(교)	24	19	2	11	56
비율(%)	42.9	33.9	3.6	19.6	100



4) 현행 사립학교법의 사학분쟁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무응답	계
사례수(교)	11	22	11	1	1	10	56
비율(%)	19.6	39.3	19.6	1.8	1.8	17.9	100

5) 고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사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하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무응답	계
사례수(교)	11	20	13	1		11	56
비율(%)	19.6	35.7	23.2	1.8	19.6		100

6) 국가경쟁력 확보와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하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무응답	계
사례수(교)	23	14	6	2	1	10	56
비율(%)	41.1	25.0	10.7	3.6	1.8	17.9	100

7) 사립대학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법인세법 개정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하다	찬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무응답	계
사례수(교)	33	10	2	1	-	10	
비율(%)	58.9	17.9	3.6	1.8		17.9	

8) 다음 중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 분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기타	무응답	계
사례수(교)	21	24	-	10	56
비율(%)	37.5	42.9	-	19.6	100.0

**[부록 2] 위원 구성 현황**

<b>사학법대책위원회(25명)*</b>		
<b>구 분</b>	<b>소속기관명</b>	<b>성 명</b>
위원장	서울기독대	이강평
부위원장	광주대	김혁중
위원	건동대	김홍락
	경동대	신동진
	경운대	김향자
	광운대	이상철
	극동대	류기일
	남부대	조성수
	대구예술대	도정기
	대구한의대	변정환
	동양대	최성해
	부산장신대	장현운
	서경대	최영철
	서울신학대	목창균
	서울장신대	문성모
	세명대	김유성
	세종대	강자모
	영동대	채훈관
	인제대	이경호
	침례신학대	도한호
	칼빈대	길자연
	탐라대	양창식
평택대	조기흥	
한영신학대	한영훈	
호서대	강일구	
자문교수	서울여대	이시우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인성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Ⅵ.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좌 장 이현청 위원장(상명대 총장)
- 발 표 배호순(서울여대 교수)
- 토 론 송광용 위원(서울교대 총장)  
이용두 위원(대구대 총장)

#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인증

배호순(서울여대)

## 1. 배경

### □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평가시스템 재정비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시-자체평가-제3자 외부평가」라는 새로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도입
- 이 중 외부평가에 해당하는 대학 평가·인증(accreditation)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각종 민간평가기구의 역량을 평가하여 인정(recognition)하는 방식으로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함.

### □ 대학의 질 제고와 평가부담 완화 방안 모색

- 대학은 정보공시, 자체평가, 제3자 외부평가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함.
- 이에 따라 대학의 질과 경쟁력도 제고하면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체평가와 제3자 외부평가에 반영할 필요 있음.

### □ 대학 기관인증평가 주관기관으로서 대교협의 사전 준비

- 대교협은 대학평가 주관기관으로서 현재 자체평가 및 기관 인증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하반기 인증평가기관으로 정부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새롭게 대교협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증평가에 대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증평가를 실현하고자 함.

## 2. 대학평가인증기관의 인정제도

### □ 인정제도의 개념

- 외부평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recognition)하는 것.
- 이는 평가기관에게 평가독점권을 부여하는 인·허가가 아니며 반드시 정부 인정을 받지 않아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 인정제도의 주요 내용

<표 2-1> 교과부 인정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인정 결정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기관심의위원회(9인 이내) : 인정여부 권고안 마련</li> <l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인정의 최종 결정</li> </ul>
인정 심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li> </ul>
인정 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li> </ul>
재정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평가인증기구에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 가능</li> <li>• 정부 인정 평가기구가 인증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자격 부여</li> <li>• 인증대학의 신입생에게 정부 학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li> </ul>
평가기구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결과/기준/방법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은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li> <li>•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평가 수행</li> </ul>

### □ 인정기구 심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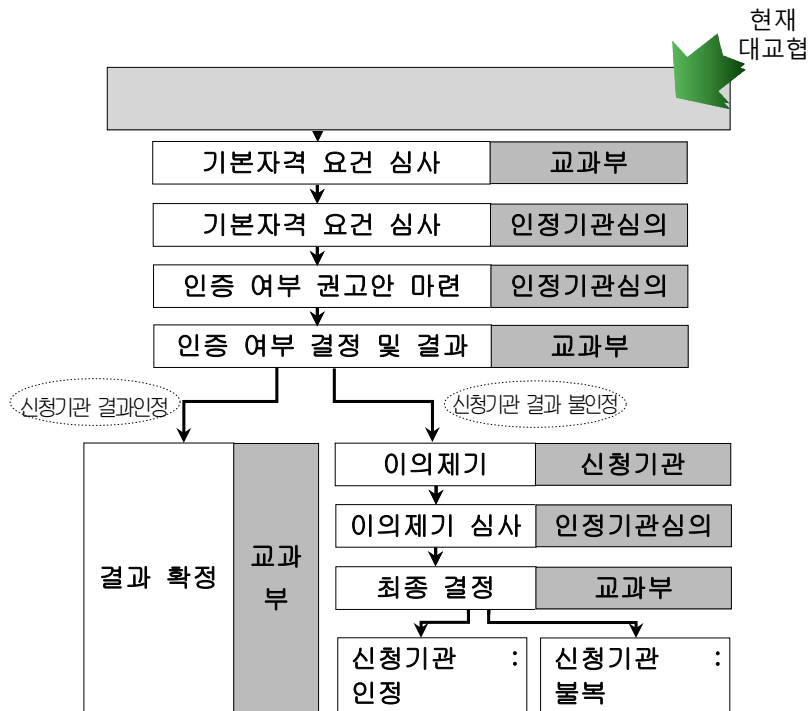
- 평가·인증의 목표 및 실현 체제
- 평가·인증의 조직 : 판정위원회, 평가인력, 지원조직, 연수체제
- 평가·인증을 위한 재정 : 예산, 회계, 인증 수수료
- 평가·인증의 기준 : 평가내용, 지표, 평가기준의 변경

- 평가·인증의 방법 : 평가대학 선정, 평가단계, 주기
- 평가·인증의 판정 : 평가기준, 판정 도출, 결과 공개, 이의제기
- 평가·인증의 실적 및 활용 : 인증실적, 국제교류, 결과활용 등

### □ 대학평가기관의 인정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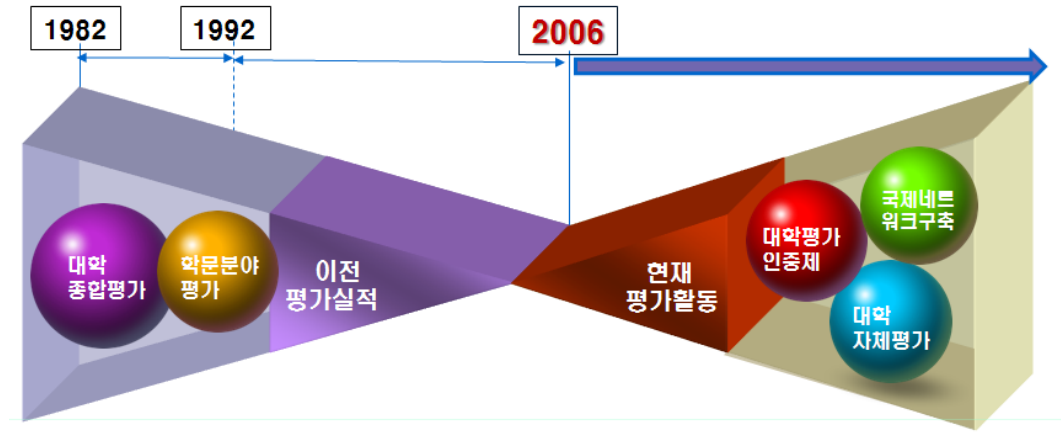
- 5월 :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1차 협의회
- 6월 말 : 대학평가인증기관 정부 지정 세부 심사기준(안) 고시
- 8월 : 대학평가인증기관 인정신청 공고
  - ※ 2009년에는 대학의 기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만 대상으로 시범 인정함.
- 9월 초 : 대교협 정부 인정 신청
- 12월 : 심사 일정 종료

### □ 인정 절차



[그림 2-1] 대학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교과부 인정절차

### 3. 대학평가인증을 위한 대교협 추진 활동



[그림 3-1] 대교협 대학평가의 변천 과정

#### □ 메타평가 기준개발 연구 수행

- 1982년부터 대교협이 수행해 온 각종 대학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메타 기준을 개발하여 인증평가체제 구축에 반영하고자 함.

#### □ 인증평가 시행을 위한 방안 개발 연구

-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 기준 및 지표, 평가운영 방식, 평가위원 연수방법 등에 관해 대교협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인증 방안에 관한 연구

#### □ 12개 대학평가인증기관 포럼 운영

- 대학 기관 평가인증기관과 9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들과 협력하여 간담회 및 포럼 운영.
- 기관별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과부 인정제도에 관한 논의 및 협의와 정책 건의.

## □ 특별위원회 자문교수-전문위원 워크숍 운영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소속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이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대학평가의 이슈 및 대교협의 향후 과제, 정책 건의안 등을 연구 개발함.
- 회원대학 의견수렴 및 결과분석을 통해 발전과제 도출

## □ 대학평가 국제 교류 협력

- WASC와의 MOU 체결
  -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는 미국 CHEA 산하의 6개 평가기관 중 하나로서 고등교육 부문을 담당하는 ‘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파트와 2009~2011 까지 3년간 체결
- 호주 AUQA와 교류 협력
  - 호주-한국 간 유학생 증가에 따라 대학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 인증 확인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호주 AUQA와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학위 인증의 효과를 기대함.
- 대학평가 국제기구 회원 가입
  - APQN(Asia-Pacific Quality Network) : 2003년 설립, 현재 26개 국가 60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협의체로서 2009 상반기 가입 완료.
  - INQAAHE(International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Agencies in Higher Education) : 세계 200여개 기구가 가입하여 대학의 질 보장 및 대학 평가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보공유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로서 하반기 가입서류 구비, 2010년 상반기 가입 완료

## □ 기타

- 해외 주요국의 대학평가기관 관련자료 분석
- 12개 대학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회원대학 의견조사 실시
- 대학평가원 및 대학평가인증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 개발



#### 4. 대학평가인증의 의견조사 결과 및 분석

#####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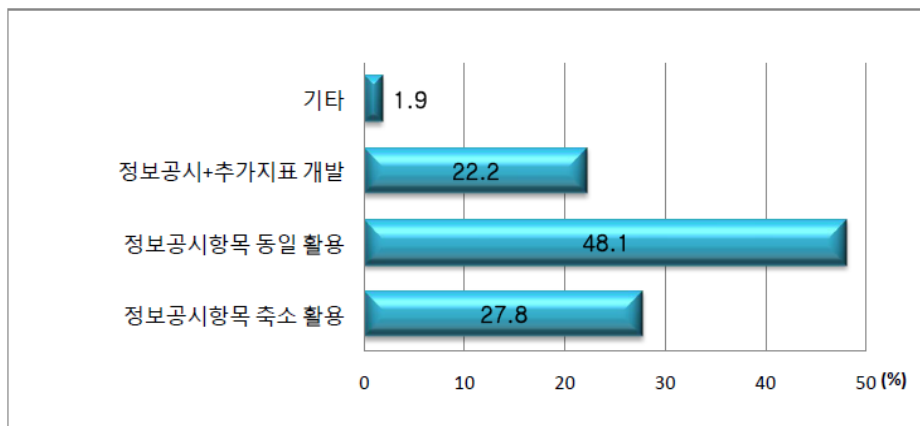
- 조사기간 : 2009. 5. 14(목)~5. 26(화)
- 조사대상 : 200개 회원대학 총장
- 조사방법 : 자체 제작 설문지 on-line 조사
- 응답대학 : 56개 대학 (회수율 28%)
- 분석방법 : spss 15.0 통계프로그램 이용, 교차/빈도분석 실시

<표 4-1> 설문대상 대학 현황

구분	설립별		규모별		지역별		유형별			계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소규모	수도권	지방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학교수	17	39	23	33	15	41	51	4	1	56
%	30.4	69.6	41.1	58.9	26.8	73.2	91.1	7.1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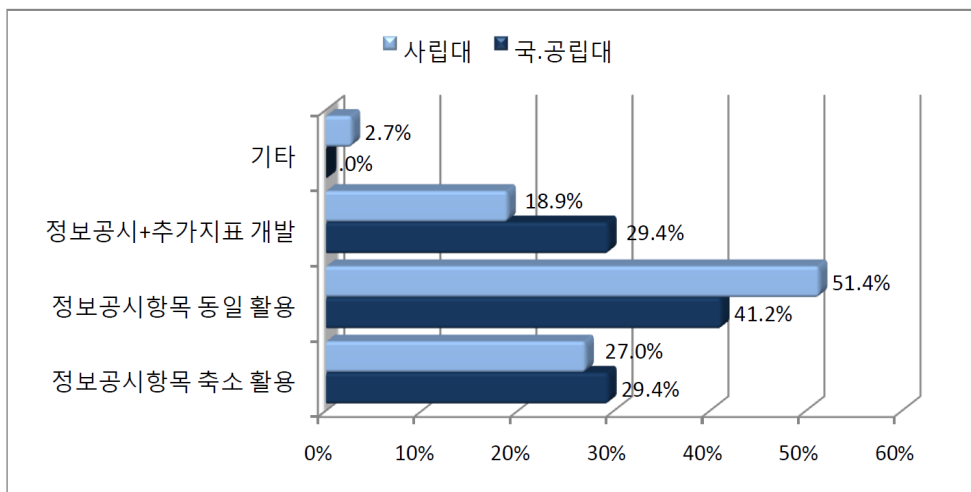
##### □ 조사 결과 분석

##### 1) 대학평가인증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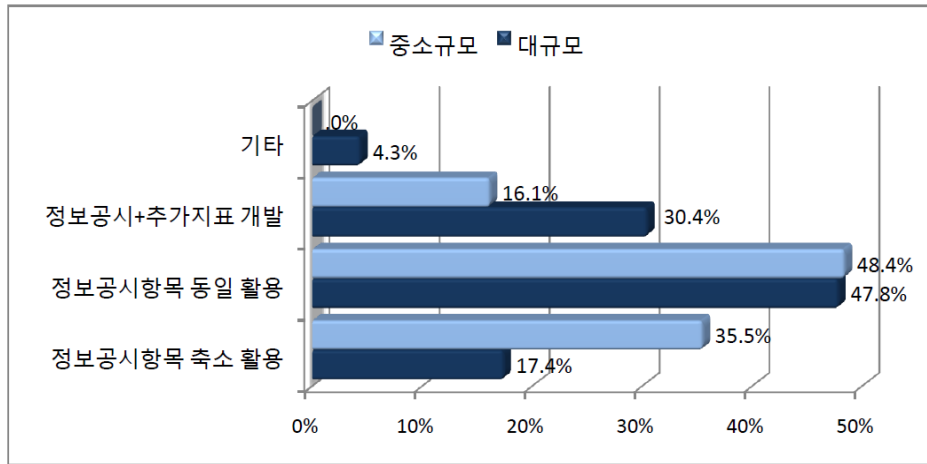
[그림 4-1] 대학평가인증 모형에 대한 조사 결과

- 대학평가인증을 실시할 경우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에 48.1%가 정보공시항목을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공시 항목을 활용하되 축소된 모형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7.8%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인증평가 수행시 대학의 부담경감은 물론 평가기관들의 중복업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평가모형 제작의 필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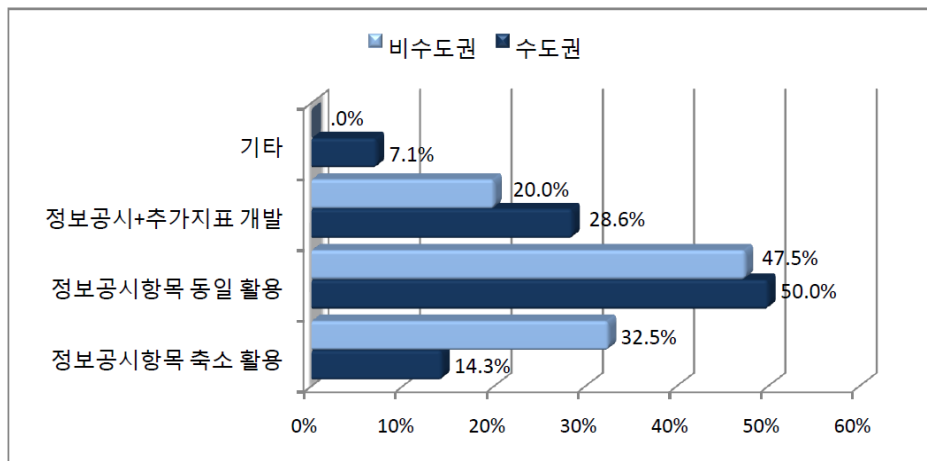
[그림 4-2] 대학의 설립별 대학평가인증 모형 결과 비교

- 대학의 설립별로 분석해본 결과 인증모형 제작시 정보공시 항목을 동일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립대학이 51.4%로 국·공립 41.2%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정보공시 항목 일부에 대교협에서 인증에 적합한 추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29.4%로 사립대 18.9%보다 높게 나타남.
- 국·공립의 경우 정보공시 확대모형과, 정보공시 축소모형이 모두 29.4%로 같게 나타나 동일 모형 다음으로는 모두 활용할 만한 모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립은 동일항목 또는 축소항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함.
- 기타의견에는 평가항목을 일단 최소화하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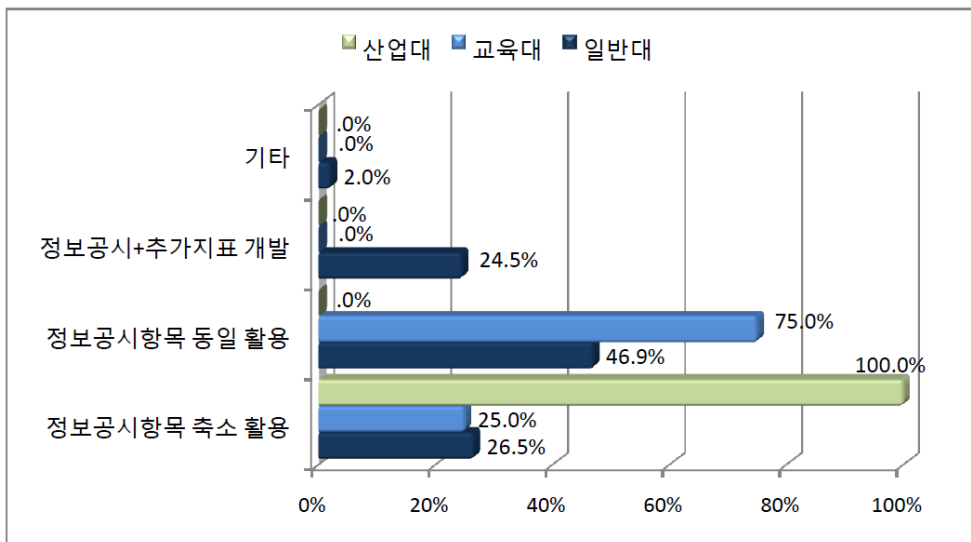
[그림 4-3] 대학의 규모별 대학평가인증 모형 결과

- 규모별 조사결과 정보공시 동일항목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규모, 중·소규모 모두 약 48%가 동의함. 그러나 대규모 대학은 동일모형 활용 다음으로 정보공시 확대모형에 30.4%가 응답한 반면, 중·소규모 대학은 축소모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35.5%로 응답함.
- 이러한 점은 대학의 규모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해야하고, 규모에 따른 특성이 평가에서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지표개발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그림 4-4] 대학의 소재지별 대학평가인증 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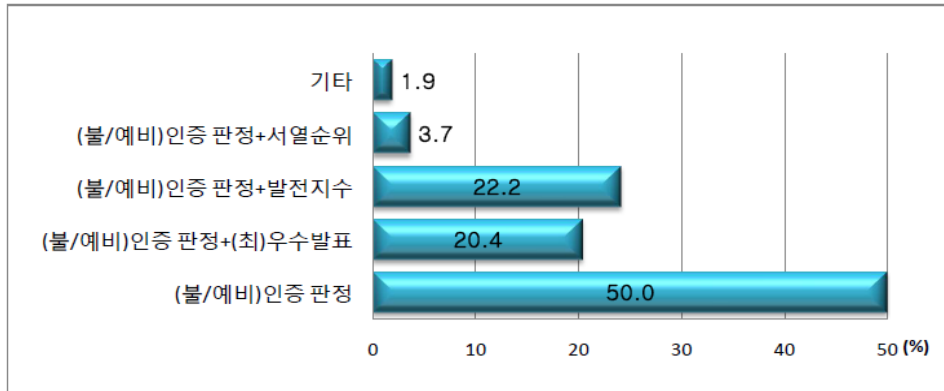
- 대학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동일모형 활용에 각각 50.0%, 47.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그러나 동일모형 다음으로 동의하는 모형에서 수도권 대학은 확대모형에 28.6%의 응답을 보였으며, 비수권의 경우 축소모형에 32.5%의 응답을 나타내 지역별 차이를 확인함.
- 이러한 점은 앞서 분석한 대학의 규모와 같이 대학의 소재지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하고, 소재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개발에 유의해야함을 시사함.



[그림 4-5] 대학의 유형별 대학평가인증 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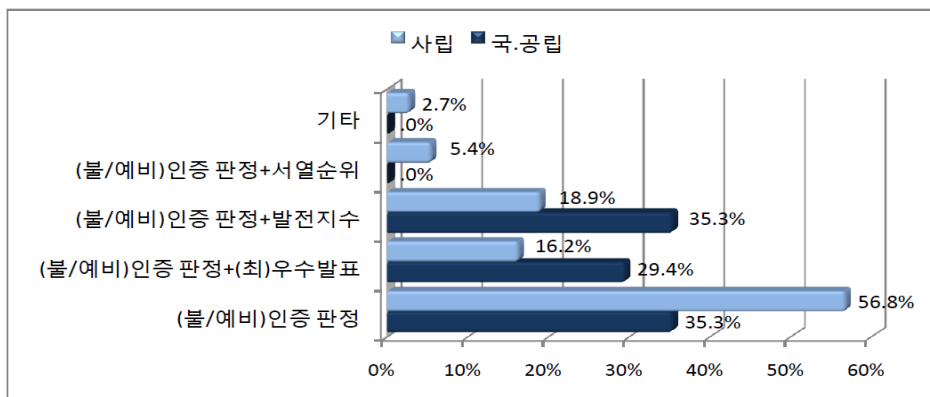
- 대학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대의 경우 동일모형 활용에 75.0%의 응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대는 같은 모형에 대해 46.9%의 응답을 나타내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함. 한편 산업대는 축소모형을 활용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냄.
- 대학의 유형별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를 통해 대학의 유형별로 대학운영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함과,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융통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2) 대학평가인증의 결과 발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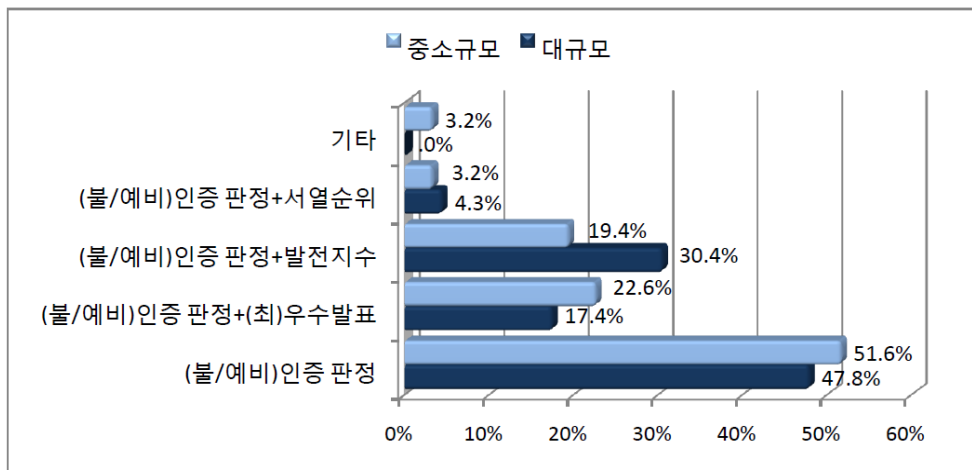
[그림 4-6] 대학평가인증의 결과발표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 대학평가인증을 실시할 경우 결과발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증/불인증/예비인증 등 인증의 결과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증판정에 더해 발전지수도 같이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 대교협에서 실시해왔던 대학종합평가와 같이 인증판정에 우수/최우수 대학도 같이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20.4%로 나타남.
- 조사결과 대학들이 대체로 “인증평가(accreditation)”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고, 상대적인 결과발표 보다는 대학의 질 측정과 제고에 더 의미를 두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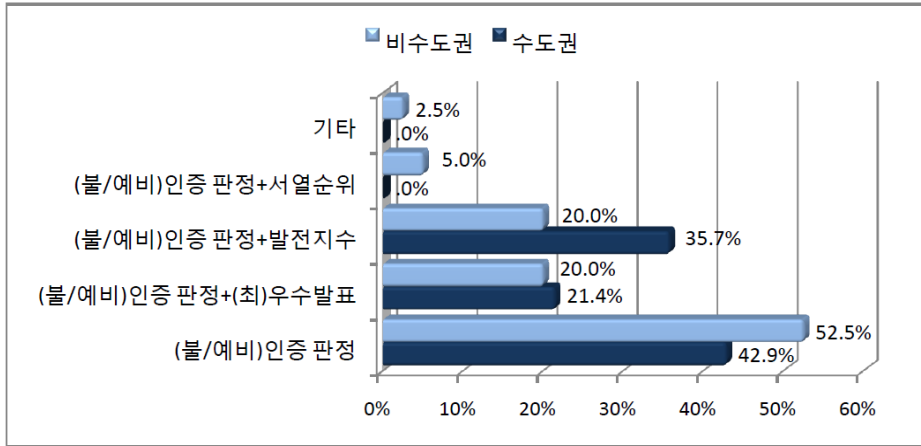
[그림 4-7] 대학의 설립별 대학평가인증 결과발표 방식의 조사 결과

- 대학의 설립별로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은 인증/불인증/예비인증 등 인증 판정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과반수가 넘는 것에 비해 국·공립의 경우 인증판정만 발표하는 방식과 발전지수 까지 포함하여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35.3%의 의견을 나타냄. 한편, 우수대학 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공립에서는 29.4%로 사립의 16.2%보다 높게 응답함.
- 조사결과 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대학의 특성, 발전의 노력 및 성과를 인증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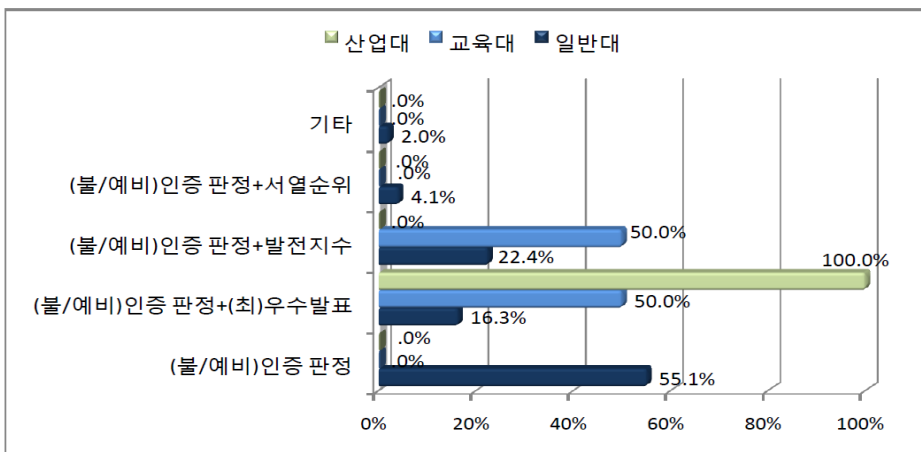
[그림 4-8] 대학의 규모별 대학평가인증 결과발표 방식의 조사 결과

- 대학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증결과만 판정해야한다는 의견에 대규모, 중·소규모 각각 47.8%, 51.6%로 가장 높게 응답함. 반면 그 다음으로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인증판정에 더해 발전지수 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30.4%로 응답하였으나, 중·소규모 대학은 우수/최우수 대학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22.6%의 응답률을 나타냄.
- 대학의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인증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발표 방식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9] 대학의 소재지별 대학평가인증 결과발표 방식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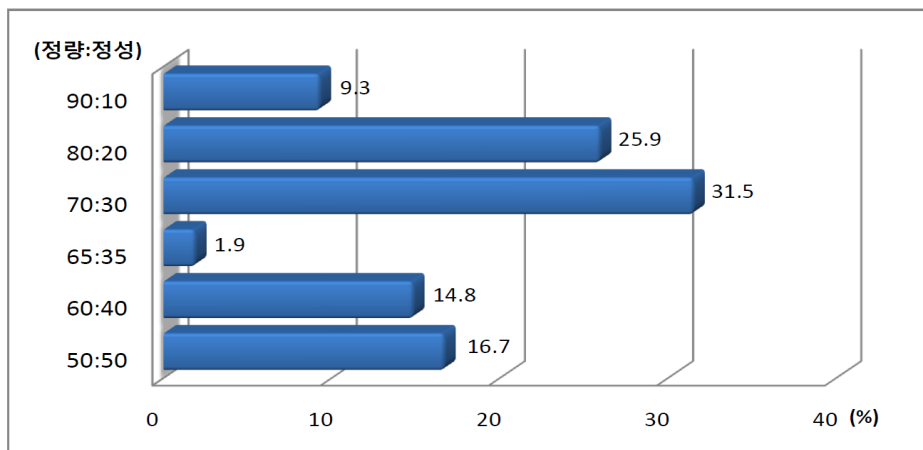
- 소재지 별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인증판정만 발표하는 방식에 52.5%가 찬성함. 한편,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인증판정만 발표하는 방식에 42.9%, 발전지수까지 발표하는 방식에 35.7%가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대체로 인증판정만 발표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규모 대학일수록 발전지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원하고 있어 평가인증체제 구축 시 대학의 소재지 및 규모별 다양성 반영에 각별히 유의해야함을 시사함.



[그림 4-10] 대학의 유형별 대학평가인증 결과발표 방식의 조사 결과

- 대학의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산업대학의 경우 우수/최우수 판정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과거 대학종합평가와 같은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일반대의 경우 인증결과만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55.1%가 응답함. 한편, 교육대의 인증판정에 더해 경우 우수/최우수 발표, 발전지수 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씩 동일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임.

### 3) 대학평가인증의 평가지표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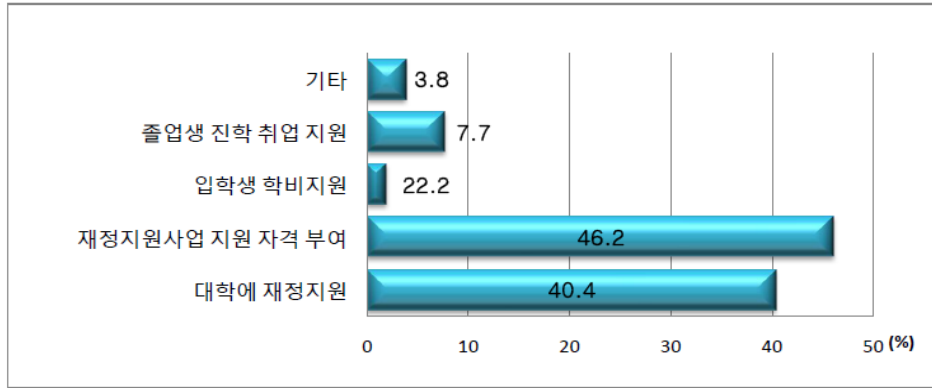


[그림 4-11] 평가지표 유형별 구성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 대학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정량평가지표와 정성평가지표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조사한 결과 ‘정량 70 : 정성 30’의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량 80 : 정성 20’의 비율이 25.9%로 나타남.
- 조사결과 정량평가지표의 비율은 50%~90%까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성평가항목의 비율은 10%~50%까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정량평가 항목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음. 이는 평가의 객관성과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으로 추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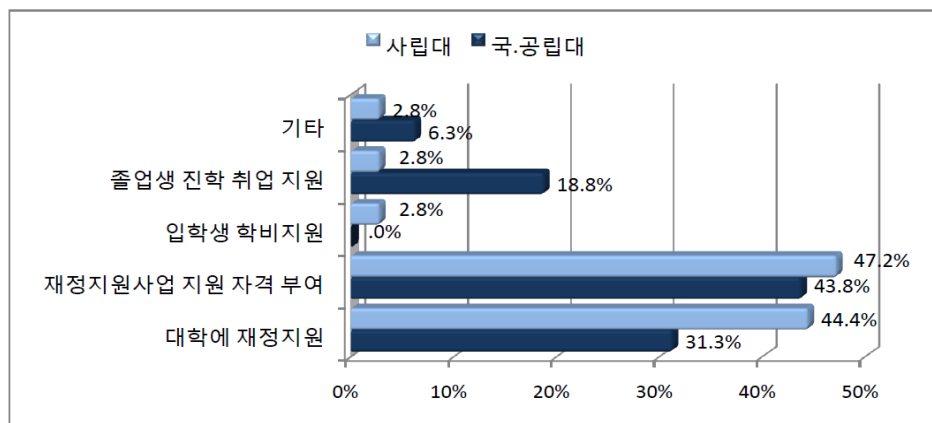


#### 4) 대학평가인증의 평가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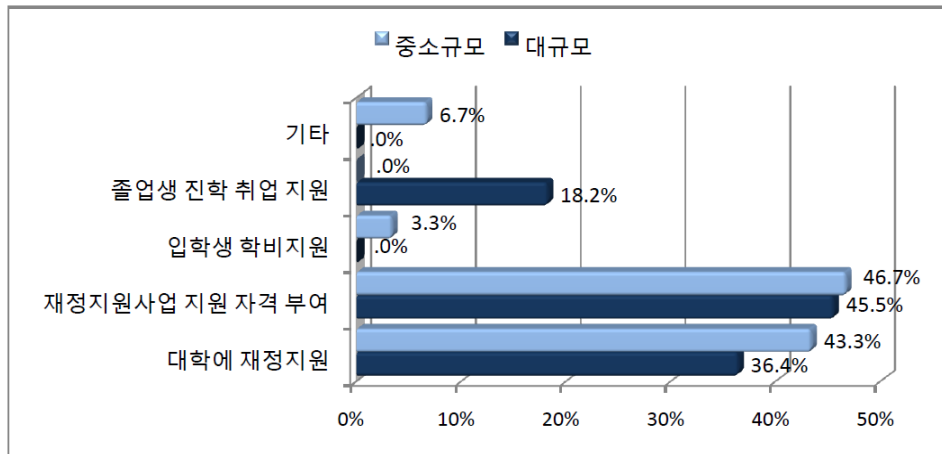
[그림 4-12] 대학평가인증 결과활용 방식의 조사 결과

- 대학평가인증 결과 활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정부 재정지원사업(WCU,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지원 사업 등)에 지원 자격 부여 46.2%,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40.4%로 인증결과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높은 응답률이 나타남.
- 고등교육은 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 경쟁력 확보가 곧 국민 개개인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증평가 결과 재정지원과 연계해야 하는 의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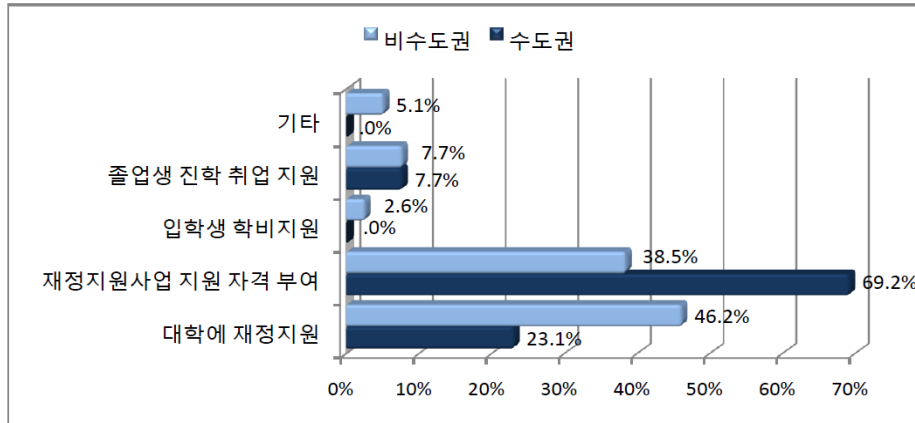
[그림 4-13] 대학의 설립별 대학평가인증 결과활용 방식의 조사결과

- 대학의 설립별로 분석해보면 국·공립 및 사립대학 모두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자격 부여해야한다는 의견에 각각 43.8%, 47.2%로 응답함. 그 다음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각각 31.1%, 44.4%로 응답함.
- 대체로 대학들이 평가결과 기관(대학) 차원의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특징적인 것으로 국·공립의 경우 인증결과를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에 인센티브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18.8%로 응답하여, 학생 개인차원의 지원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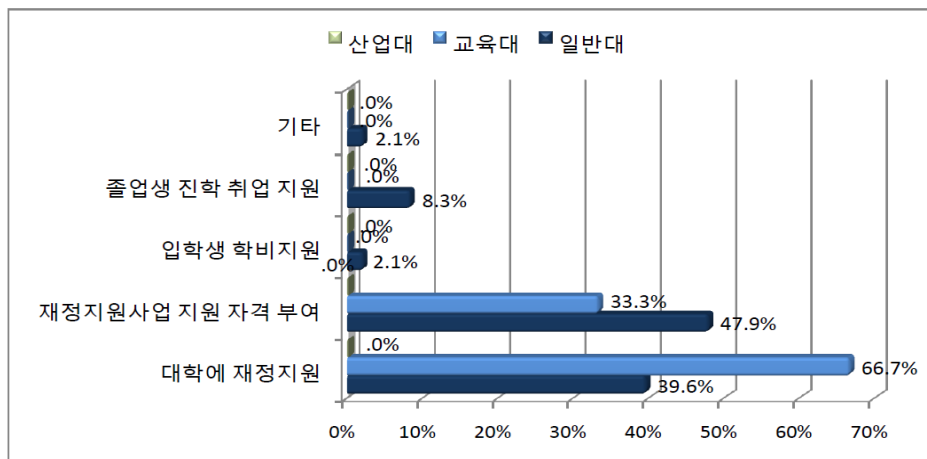
[그림 4-14] 대학의 규모별 대학평가인증 결과활용 방식의 조사결과

- 대학의 규모별 분석결과 대규모, 중·소규모 대학 모두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높은 응답이 나타남. 특히,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자격과 연계에 46.7%,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연계에 43.3%로 두 항목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인증결과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에 인센티브와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18.2%로 나타나 대학의 지원 못지않게 학생 지원과의 연계의 중요성도 시사함. 외국의 경우 공무원 고시, 진학시험 등에서 인증대학 졸업생에서 우선권을 행사함.



[그림 4-15] 대학의 소재지별 대학평가인증 결과활용 방식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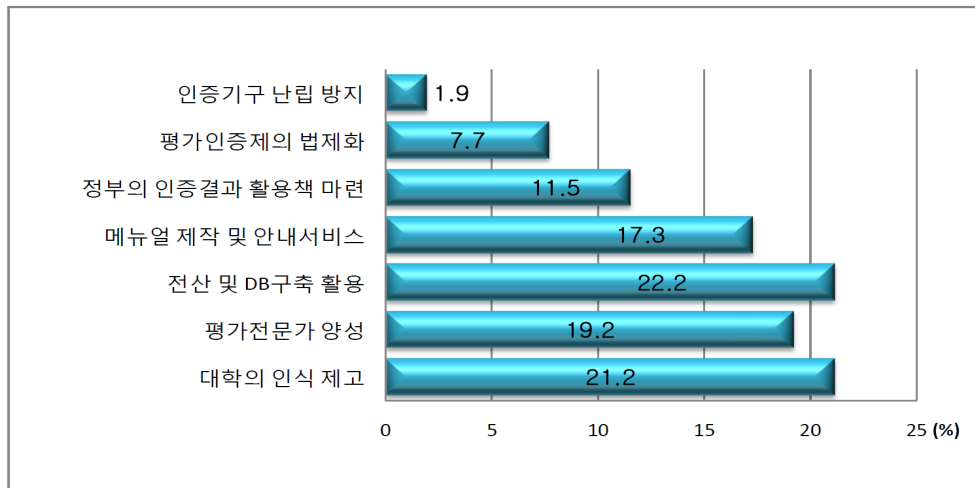
- 대학의 소재지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부 사업에 지원자격 연계에 약 70.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에 46.2%로 응답해 정부사업 연계 38.5% 보다도 높게 나타난 점이 매우 특징적임.
-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재 대학일 경우 대학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한 재정지원을 요구한다는 점, 또 실제로 비수도권 대학들의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을 시사함.



[그림 4-16] 대학의 유형별 대학평가인증 결과활용 방식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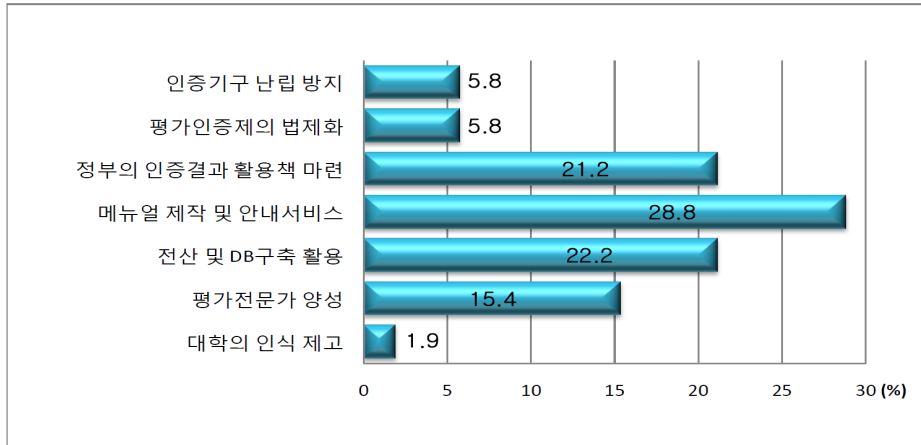
- 대학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의 경우 47.9%가 평가결과를 정부사업에 지원자격과 연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대의 경우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연계에 66.7%가 응답함.
- 한편, 산업대의 경우 기타의견으로 평가결과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평가의 보상적 지원 못지않게 조성적 지원의 중요성도 시사함.

### 5) 대학평가인증의 당면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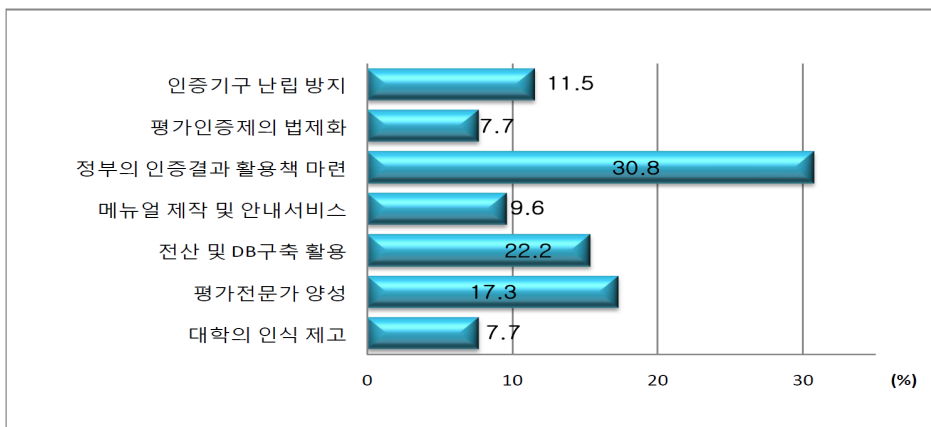
[그림 4-17] 대학평가인증의 당면과제 제1위에 대한 조사결과

- 대학평가인증의 당면과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1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산 및 DB구축을 통해 평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대학의 인식제고 21.2%, 평가전문가 양성이 19.2%, 평가 매뉴얼 제작 및 안내서비스 강화가 17.3% 순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업무 중복의 비효율성 방지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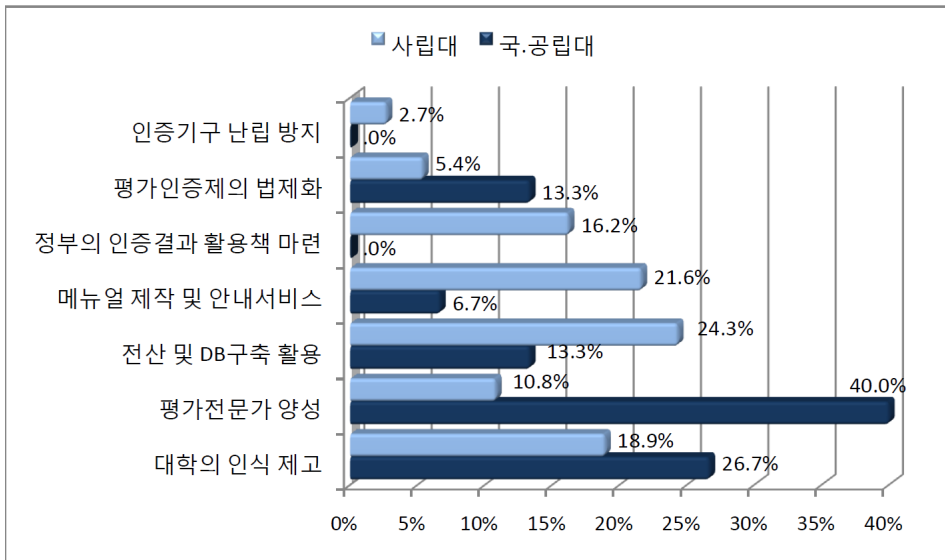
[그림 4-18] 대학평가인증의 당면과제 제2위에 대한 조사결과

- 대학평가인증 시 당면과제 2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대학평가 메뉴얼 제작 및 안내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견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산시스템 활용 22.2%, 정부의 인증결과 활용책 마련이 21.2%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는 당면과제 1위로 나타남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연결 지어 분석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표의 잦은 변경, 평가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 부족 등으로 대학이 불편을 겪은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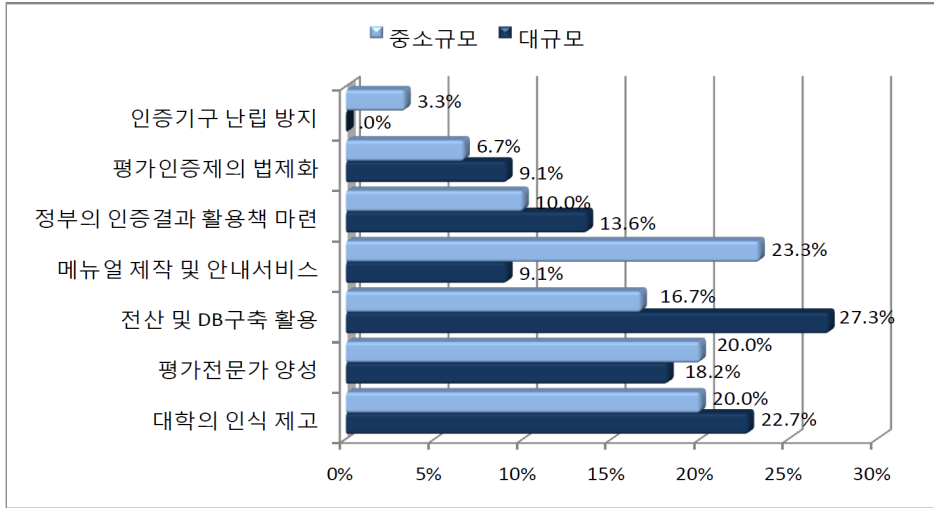
[그림 4-19] 대학평가인증의 당면과제 제3위에 대한 조사결과

- 대학평가인증 시 당면과제 3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인증결과 활용책 마련이 3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평가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서 대학에게는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라 해석할 수 있음.
- 이상의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대학에서는 평가인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 중첩의 비효율성 제거, 대학의 서비스 기능 강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순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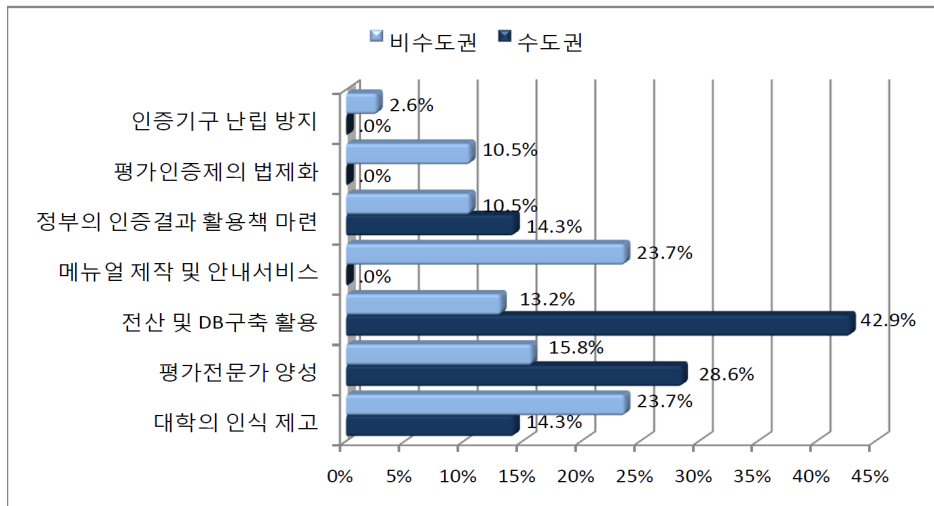
[그림 4-20] 대학의 설립별 평가인증의 당면과제에 대한 비교

-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당면과제 1위를 분석해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평가전문가 양성에 40.0%의 응답을 보인 반면 사립대의 경우 전산 및 DB 구축의 활용에 24.3%의 응답을 나타냄.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대학의 인식 제고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보는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 및 대학 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성 및 인식의 제고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설립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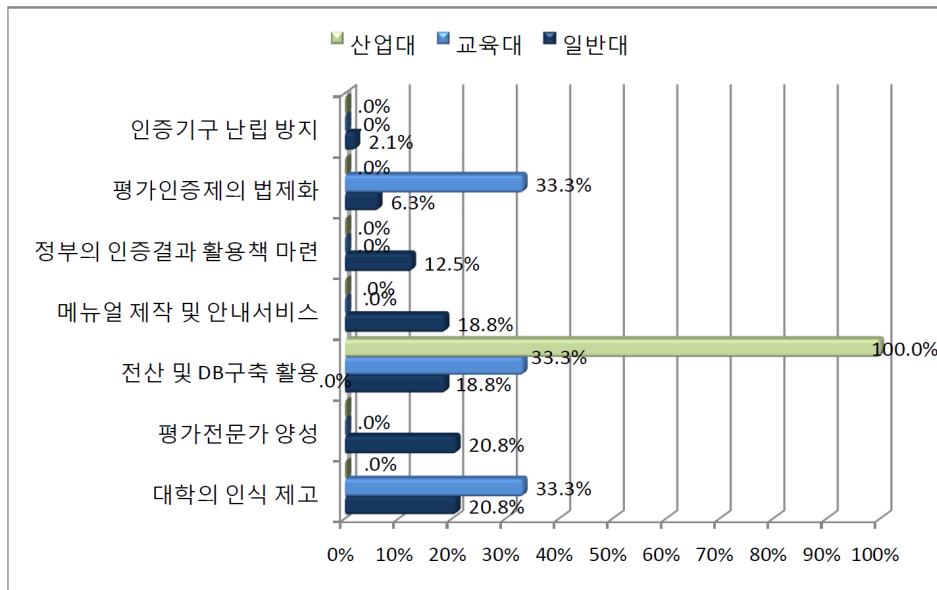
[그림 4-21] 대학의 규모별 평가인증의 당면과제에 대한 비교

- 대학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은 전산시스템 활용에 27.3%, 대학의 인식제고에 22.7%, 정부의 인증결과 활용책 마련에 13.6% 순으로 당면과제에 대해 응답함. 한편, 사립대의 경우 메뉴얼 제작 및 안내서비스 강화에 23.3%, 평가전문가 양성 및 대학의 인식제고에 20.0%, 전산시스템 활용에 16.7% 순으로 응답하여 규모별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그림 4-22] 대학의 소재지별 평가인증의 당면과제에 대한 비교

- 대학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전산시스템 활용에 42.9%, 평가전문가 양성에 28.6% 순으로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대학의 인식제고, 매뉴얼 제작 및 안내서비스 강화에 각각 23.7%, 평가전문가 양성 15.8% 순으로 응답함.



[그림 4-23] 대학의 유형별 평가인증의 당면과제에 대한 비교

- 대학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대의 경우 평가인증의 법제화, 전산 시스템 활용, 대학의 인식제고 모두 33.3%의 응답을 나타낸 점이 특징적이며, 일반대 역시 대학의 인식제고, 평가전문가 양성에 20.8%, 전산시스템 활용에 18.8% 순으로 당면과제에 대해 응답함. 한편, 산업대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냄.

#### 6) 대학평가대책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 합리적인 대학평가지시스템의 수립과 시행 - 예를 들면, 대학의 규모 또는 목적(교육중심, 연구중심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기준 적용
- 대학의 특성화(교육목적-연구중심, 교육중심등)에 적합한 지표개발 및 적용
- 매뉴얼 제작 및 안내서비스, 종합 DB 모형 구축



- 정부 재정지원 강화
- 국립대/사립대/수도권대학/지방대/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되어야 한다.
- 대학평가 모형의 개발 및 평가 전문가 양성
- 발전에 대한 Agenda 설정 및 방향성 제시
- 표준 모형개발 제시
- 규제사항 완화
- 대학평가에 대한 인식제고
- 대학평가를 위한 합리적 지표개발(대학의 목표지향 유형에 따른 평가지표개발/구체적 지침 및 메뉴얼 개발/DB구축 및 종합평가를 위한 종합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지원금
- 평가준비 지원(자료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가전문가 양성
- 대학평가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회원대학의 평가기준(척도)등 정보공유
- 대학의 지역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이 변경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에 제 기능을 다 하여야 함.
- 회원대학/평가대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
- 대학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질 것으로 판단되나 대학평가는 대학의 유형별 특성을 무시하거나, 단순한 요인만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위위원회에서는 대학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반화 시켜야 함.
- 대학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난립방지
- 평가에 대한 대학의 부담. 특히 행정적 부담의 최소화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의 부족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정책 제언 등
- 공정성
- 대학 상호간의 협력. 재정확충을 위한 법률제정
- 외국 대학의 평가사례 등을 제공
- 자체평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 수행
- 정확한 자료확보와 신뢰
-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

## 5. 조사결과 요약

조사항목	주요내용
평가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시 동일 또는 축소모형 활용</li> <li>· 국·공립, 대규모, 수도권 대학의 경우 확대모형에 대한 긍정적 반응</li> </ul>
결과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인증/예비인증/불인증 중 인증의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 요구</li> <li>· 국·공립, 대규모,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인증결과 + 발전지수” 방식 선호</li> <li>· 교대와 산업대는 “인증결과+(최)우수대학” 방식 선호</li> </ul>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지표 70% : 정성지표 30% 비율로 구성</li> <li>· 대체로 정량지표 50%-90%, 정성지표 10%-50% 범위로 나타남.</li> </ul>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 자격 부여와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연계하는 방식을 거의 비슷하게 선호</li> <li>· 국·공립, 대규모 대학의 경우 인증결과 졸업생 진출에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식에 긍정적 반응 보임</li> <li>·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 강함</li> <li>· 보상적 지원 외에 조성적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됨.</li> </ul>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시스템 및 DB구축, 평가 매뉴얼 개발 등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 다음으로 인증결과 활용방안 모색으로 나타남.</li> <li>· 국·공립대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강조</li> </ul>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 제작(교육/연구/교육·연구 등)</li> <li>· 평가연계 정부 재정지원 강화 또는 법제화</li> <li>· 평가 전문가 양성</li> <li>· 평가 매뉴얼 제작</li> <li>· 평가관련 대학에 서비스 제공 강화(정보공유, 외국사례 소개, 자체평가 자문 등)</li> <li>· 공정성 제고와 평가기구 난립 방지</li> <li>· 평가부담 최소화</li> <li>· 인증결과 조성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및 정책 제언 등</li> </ul>

## 6. 대학평가 발전을 위한 실행 과제

### □ 대학평가인증의 방법 ➡ 선진화, 효율화

- 정보공시 및 자체평가와의 연계 강화
  - 대교협이 수행하는 평가에서 정보공시에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기본적인 DB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평가 업무 경감
  - 평가활동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장기적 추세와 변화 중시
  -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의 실효성 제고

- 대학차원의 평가결과 활용
  - 직접적 : 평가인증에 대한 대학의 인센티브,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간접적 : 대학의 “인증”결과와 정부 재정지원 평가 사업 지원 자격과 연계
- 개인차원의 평가결과 활용
  - 직접적 :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 학생 학자금 지원 및 교수의 연구비 지원 연계
  - 간접적 : 졸업생 자격증 취득, 진학, 취업 등에서 인증결과 활용방안 마련
- 대학의 조성적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

### □ 평가준거 ➡ 대학의 특성과 함께 국제수준으로 도약

-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준거 및 기준체제 마련
- 대학의 특성을 융통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의 다양화
- 국제적 수준의 평가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기본 요건 충족으로 대학을 국제무대로 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 평가위원 ➡ 전문성 강화

- 평가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가인증 기능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 외국의 평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가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유

□ **대학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 컨설팅 제공**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학별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정보공시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대학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함.
-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한 대학의 전략에 대해서 자문.

□ **대학평가의 국제화 ➡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 국제 상호 인증에 적극 참여,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 외국 대학평가인증기관과 연대/국제적 기구와 연계하여 우리 대학의 국제적 인증 지원
- 국제적 평가기준 및 지표 도입 활용

□ **대교협 ➡ 국제수준의 평가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 고등교육 평가인증체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포럼 운영
- 12개 평가인증 기관 간 교류 협력활동 주관
- 대교협 내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 기관평가 외에 기초 학문 분야 평가를 행하는 평가기구로 발전

## [부록 1] 대학평가인증에 관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

### 1. 평가모형

구 분		정보공시항목 축소활용	정보공시항목 동일활용	정보공시+추 가지표개발	기타	계	$\chi^2$
설립	국공립	5 29.4%	7 41.2%	5 29.4%	0 .0%	17 100.0%	1.311
	사립	10 27.0%	19 51.4%	7 18.9%	1 2.7%	37 100.0%	
규모	대규모	4 17.4%	11 47.8%	7 30.4%	1 4.3%	23 100.0%	4.121*
	중소규모	11 35.5%	15 48.4%	5 16.1%	0 .0%	31 100.0%	
지역	수도권	2 14.3%	7 50.0%	4 28.6%	1 7.1%	14 100.0%	4.452*
	비수도권	13 32.5%	19 47.5%	8 20.0%	0 .0%	40 100.0%	
유형	일반대	13 26.5%	23 46.9%	12 24.5%	1 2.0%	49 100.0%	4.338
	교육대	1 25.0%	3 75.0%	0 .0%	0 .0%	4 100.0%	
	산업대	1 100.0%	0 .0%	0 .0%	0 .0%	1 100.0%	
계		15 27.8%	26 48.31%	12 22.2%	1 1.9%	54 100.0%	

\*\*\*p <.001, \*\*p <.01, \*p <.05

## 2. 평가결과 발표 방식

구 분		(불/예비)인 증판정	(불/예비)인 증판정+(최) 우수발표	(불/예비)인 증판정+발전 지수	(불/예비)인 증판정+서열 순위	기타	계	$\chi^2$
설립	국공립	6 35.3%	5 29.4%	6 35.3%	0 .0%	0 .0%	17 100.0%	4.745*
	사립	21 56.8%	6 16.2%	7 18.9%	2 5.4%	1 2.7%	37 100.0%	
규모	대규모	11 47.8%	4 17.4%	7 30.4%	1 4.3%	0 .0%	23 100.0%	1.673
	중소규모	16 51.6%	7 22.6%	6 19.4%	1 3.2%	1 3.2%	31 100.0%	
지역	수도권	6 42.9%	3 21.4%	5 35.7%	0 .0%	0 .0%	14 100.0%	2.317
	비수도권	21 52.5%	8 20.0%	8 20.0%	2 5.0%	1 2.5%	40 100.0%	
유형	일반대	27 55.1%	8 16.3%	11 22.4%	2 4.1%	1 2.0%	49 100.0%	9.703*
	교육대	0 .0%	2 50.0%	2 50.0%	0 .0%	0 .0%	4 100.0%	
	산업대	0 .0%	1 100.0%	0 .0%	0 .0%	0 .0%	1 100.0%	
계		27 50.0%	11 20.4%	13 24.1%	2 3.7%	1 1.9%	54 100.0%	

\*\*\*p <.001, \*\*p <.01, \*p <.05

### 3. 정성/정량 평가지표 비율

구 분		사례수	정량평가 비율		정성평가 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설립	국공립	17	72.35	10.91	27.65	10.91
	사립	39	64.74	19.57	30.13	14.16
규모	대규모	23	71.52	10.81	28.48	10.81
	중소규모	33	63.94	20.76	30.00	14.79
지역	수도권	15	62.33	20.78	31.00	14.42
	비수도권	41	68.78	16.31	28.78	12.88
유형	일반대	51	67.35	18.09	28.73	13.15
	교육대	4	62.50	15.00	37.50	15.00
	산업대	1	70.00	.	30.00	.
계		56	67.05	17.65	29.38	13.21

### 4. 평가결과의 활용

구 분		대학에 재정지원	재정지원 사업 지원 자격부여	입학생 학비 지원	졸업생 진학 취업 지원	기타	계	$\chi^2$
설립	국공립	5 31.3%	7 43.8%	0 .0%	3 18.8%	1 6.3%	16 100.0%	4.972*
	사립	16 44.4%	17 47.2%	1 2.8%	1 2.8%	1 2.8%	36 100.0%	
규모	대규모	8 36.4%	10 45.5%	0 .0%	4 18.2%	0 .0%	22 100.0%	7.811*
	중소규모	13 43.3%	14 46.7%	1 3.3%	0 .0%	2 6.7%	30 100.0%	
지역	수도권	3 23.1%	9 69.2%	0 .0%	1 7.7%	0 .0%	13 100.0%	4.286*
	비수도권	18 46.2%	15 38.5%	1 2.6%	3 7.7%	2 5.1%	39 100.0%	
유형	일반대	19 39.6%	23 47.9%	1 2.1%	4 8.3%	1 2.1%	48 100.0%	26.484**
	교육대	2 66.7%	1 33.3%	0 .0%	0 .0%	0 .0%	3 100.0%	
	산업대	0 .0%	0 .0%	0 .0%	0 .0%	1 100.0%	1 100.0%	
계		21 40.4%	24 46.2%	1 1.9%	4 7.7%	2 3.8%	52 100.0%	

\*\*\*p <.001, \*\*p <.01, \*p <.05

### 5-1. 인증 평가의 활성화 요건 1위

구 분		대학의인식제고	평가전문가양성	전산및DB구축확용	메뉴얼제작및안내서비스	정부의인증결과활용정책마련	평가인증제의법제화	인증기구난립방지	계	$\chi^2$
설립	국·공립	4 26.7%	6 40.0%	2 13.3%	1 6.7%	0 .0%	2 13.3%	0 .0%	15 100.0%	10.730
	사립	7 18.9%	4 10.8%	9 24.3%	8 21.6%	6 16.2%	2 5.4%	1 2.7%	37 100.0%	
규모	대규모	5 22.7%	4 18.2%	6 27.3%	2 9.1%	3 13.6%	2 9.1%	0 .0%	22 100.0%	3.205
	중소규모	6 20.0%	6 20.0%	5 16.7%	7 23.3%	3 10.0%	2 6.7%	1 3.3%	30 100.0%	
지역	수도권	2 14.3%	4 28.6%	6 42.9%	0 .0%	2 14.3%	0 .0%	0 .0%	14 100.0%	10.845
	비수도권	9 23.7%	6 15.8%	5 13.2%	9 23.7%	4 10.5%	4 10.5%	1 2.6%	38 100.0%	
유형	일반대	10 20.8%	10 20.8%	9 18.8%	9 18.8%	6 12.5%	3 6.3%	1 2.1%	48 100.0%	8.642
	교육대	1 33.3%	0 .0%	1 33.3%	0 .0%	0 .0%	1 33.3%	0 .0%	3 100.0%	
	산업대	0 .0%	0 .0%	1 100.0%	0 .0%	0 .0%	0 .0%	0 .0%	1 100.0%	
계		11 21.2%	10 19.2%	11 21.2%	9 17.3%	6 11.5%	4 7.7%	1 1.9%	52 100.0%	

\*\*\*p <.001, \*\*p <.01, \*p <.05



## 5-2. 인증 평가의 활성화 요건 2위

구분		대학의 인식제고	평가전문 가양성	전산및 DB구축 확용	메뉴얼제 작및안내 서비스	정부의인 증결과활 용책마련	평가인증 제의법제 화	인증기구 난립방지	계	$\chi^2$
설립	국공립	0 .0%	2 13.3%	4 26.7%	5 33.3%	4 26.7%	0 .0%	0 .0%	15 100.0%	3.648
	사립	1 2.7%	6 16.2%	7 18.9%	10 27.0%	7 18.9%	3 8.1%	3 8.1%	37 100.0%	
규모	대규모	0 .0%	3 13.6%	4 18.2%	7 31.8%	6 27.3%	1 4.5%	1 4.5%	22 100.0%	1.958
	중소규모	1 3.3%	5 16.7%	7 23.3%	8 26.7%	5 16.7%	2 6.7%	2 6.7%	30 100.0%	
지역	수도권	0 .0%	2 14.3%	1 7.1%	6 42.9%	1 7.1%	2 14.3%	2 14.3%	14 100.0%	10.060*
	비수도권	1 2.6%	6 15.8%	10 26.3%	9 23.7%	10 26.3%	1 2.6%	1 2.6%	38 100.0%	
유형	일반대	1 2.1%	7 14.6%	10 20.8%	15 31.3%	9 18.8%	3 6.3%	3 6.3%	48 100.0%	6.340
	교육대	0 .0%	1 33.3%	1 33.3%	0 .0%	1 33.3%	0 .0%	0 .0%	3 100.0%	
	산업대	0 .0%	0 .0%	0 .0%	0 .0%	1 100.0%	0 .0%	0 .0%	1 100.0%	
계		2 1.9%	8 15.4%	11 21.2%	15 28.8%	11 21.2%	3 5.8%	3 5.8%	52 100.0%	

\*\*\*p <.001, \*\*p <.01, \*p <.05

5-3. 인증 평가의 활성화 요건 3위

구분		대학의 인식제고	평가전문 가양성	전산및 DB구축 확용	메뉴얼제 작및안내 서비스	정부의인 증결과활 용책마련	평가인증 제의법제 화	인증기구 난립방지	계	$\chi^2$
설립	국공립	1 6.7%	2 13.3%	3 20.0%	4 26.7%	3 20.0%	1 6.7%	1 6.7%	15 100.0%	8.145
	사립	3 8.1%	7 18.9%	5 13.5%	1 2.7%	13 35.1%	3 8.1%	5 13.5%	37 100.0%	
규모	대규모	3 13.6%	5 22.7%	2 9.1%	1 4.5%	7 31.8%	1 4.5%	3 13.6%	22 100.0%	5.050
	중소규모	1 3.3%	4 13.3%	6 20.0%	4 13.3%	9 30.0%	3 10.0%	3 10.0%	30 100.0%	
지역	수도권	1 7.1%	3 21.4%	3 21.4%	0 .0%	4 28.6%	1 7.1%	2 14.3%	14 100.0%	20655
	비수도권	3 7.9%	6 15.8%	5 13.2%	5 13.2%	12 31.6%	3 7.9%	4 10.5%	38 100.0%	
유형	일반대	4 8.3%	8 16.7%	8 16.7%	2 4.2%	16 33.3%	4 8.3%	6 12.5%	48 100.0%	34.715*
	교육대	0 .0%	0 .0%	0 .0%	3 100.0%	0 .0%	0 .0%	0 .0%	3 100.0%	
	산업대	0 .0%	1 100.0%	0 .0%	0 .0%	0 .0%	0 .0%	0 .0%	1 100.0%	
계		4 7.7%	9 17.3%	8 15.4%	5 9.6%	16 30.8%	4 7.7%	6 11.5%	52 100.0%	

\*\*\*p <.001, \*\*p <.01, \*p <.05

**[부록 2] 위원 구성 현황**

대학평가대책위원회(36명)*		
구 분	소속기관명	성 명
위 원 장	상명대	이현청
부위원장	호원대	강희성
위 원	계명대	신일희
	경주대	이순자
	고신대	김성수
	광신대	정규남
	광주교대	박남기
	광주여대	오장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원우
	나사렛대	임승안
	대구대	이용두
	덕성여대	지은희
	동덕여대	김운배
	백석대	하 원
	삼육대	김기곤
	서울교대	송광용
	서울산업대	노준형
	성결대	정상운
	성신여대	심화진
	아세아연합신학대	고세진
	안동대	이희재
	영남대	이효수
예원예술대	차종권	

	울산과기대	조무제
	위덕대	배도순
	전주대	이남식
	청운대	이리형
	포항공과대	백성기
	한경대	김성진
	한국교원대	권재술
	한국국제대	고영진
	한국외국어대	박 철
	한국해양대	오거돈
	한려대	서복영
	한성대	정주택
	호남신학대	차종순
자문교수	서울여대	배호순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영인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VII. 국제화대책위원회**

- 좌 장 박동순 위원장(동서대 총장)
- 발 표 권선국(경북대 교수)
- 토 론 정순훈 위원(배재대 총장)  
장만채 위원(순천대 총장)

# ACE, UMAP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학 국제화 방안

권선국(경북대)

## 1. 대학 교육의 국제화 추진

### 가. 대학의 국제화

- 21세기 대학 교육의 핵심화두 중의 하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국제화임
- 모든 대학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화를 대학의 핵심방향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다양한 국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고등교육의 국제화 방안 및 정부지원 국제화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됨
  - － 정부의 비전 :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의 교육·연구 중심지로 도약
- 구체적인 국제화프로그램의 실행은 각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됨

### 나. 국제화 프로그램

-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학생 역량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 교환학생 프로그램
  - － 복수학위 프로그램
  - － 해외유학생유치 프로그램 등

- 학생 역량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학위과정 프로그램(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해외인턴쉽
  - 어학연수
  - 해외봉사 프로그램 등

## 2. 대교협(KCUE) 국제화대책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 가. 위원회의 역할

- 대학전체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국제화 프로그램 검토
- 대학연합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 검토
- 대학 국제화 추진시 장애가 되는 규제 검토 및 개선 건의
-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 검토 및 지원건의
- 국제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 나. 추진사업

- 첫 번째 과제로 대학 국제화프로그램 중 요즘 들어 글로벌 리더 양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대학연합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의 쟁점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했음
- ACE, UMAP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학 교육의 국제화(현 추진 과제)

## 3. KCUE-ACE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교육의 국제화

### 가.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개요

- 대학 총장들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교육 분야를 대변하기 위해 1918년에 설립함

-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음
-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직임
- 1,800 인준된 고등교육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사립 및 공립 대학
- 4년제 및 2년제 대학
- 비영리 및 영리 기관
- 미국 내에 있는 인준된 학위수여대학 및 고등교육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나. ACE 목적

- 고등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
- 미국 고등교육기관 간의 조정
- 미국 의회와 정부에 대한 로비 : 학생에 대한 지원 증가와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의 제한

#### 다. ACE 현안

- 고등교육에서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소수자와 여성문제에 대한 지원)
-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기업과 대학의 리더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예를 들면,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화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 라. ACE에 대한 비판

- 다양한 구성원 간의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움
- 회원 중복(개별 기관과 기관연합체가 동시에 회원이 될 수 있음)



-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예를 들면, 비싼 등록금, 교육보 다 연구에 대한 과잉 강조, 학부 교육에 대한 관심 결여 등)

#### 마. KCUE-ACE 협력체제 구축

- 한·미 고등교육 교류 촉진
- 한·미 총장 포럼의 정례화
- 대학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 협의회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 4. UMAP을 통한 대학 교육의 국제화

#### 가.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개요

- 고등교육 분야에서 정부 또는 비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임의 단체 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학간 교류, 학생 교류, 특히 단기 유학의 추진을 목표로 1991년에 발족됨
- 1998년 8월 제6회 총회에서 UMAP 헌장이 채택됨(2001년 3월 제9회 총회에서 개정됨)

#### 나. UMAP 목적

- UMAP의 전체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고등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의 교류를 증대하여 고등 교육 의 질을 높임으로써 역내 여러 국가 및 지역의 문화·경제·사회 제 도에 대한 이해 고양
- 아태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의 교류 증대 추진
- 학점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시원칙의 작성 및 학점상호인정 협정 에 있어서 학생의 이익을 옹호하는 협정모형 개발, 시행중인 학점상호

- 인정 제도에 대해서도 조사보고를 실시
- 대학간 협정에서 복수대학간 협정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 UMAP 구상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과 정부에 지원방법을 제공

#### 다. 주요 경위

- 1991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협력아래 호주 대학총장협회(AVCC)가 UMAP의 설립을 제창(1994년 4월 홍콩, 동년 9월 캔버라 회의 = 제1회 총회, 18개국참가)
- 1992년 4월 제2회 총회 서울 개최.
- 1994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이 UMAP의 지지를 표명.
- 1997년 11월 (태국 피사누록 부회) 호주정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1999년 각국의 학년도에 UMAP 학점호환 스킴(UCTS = UMAP Credit Transfer Scheme)의 시도를 제안
- 모델 : 유럽연합(EU)의 Erasmus 계획 (ECTS =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1988~1995년)

#### 라. UMAP 당면 목표

- 학점호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으로써 다국간 교류의 이행 촉진을 도모
- UMAP 참가국 사이에 연구자 데이터 베이스와 유학생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대학간의 교류를 지원

#### 마. UMAP 사업

- UCTS(UMAP 학점호환 방식)의 시행
- 단기유학추진제도
- UMAP 지도자 프로그램
- UMAP 유학생 지원 장학금 일시금 지급사업

## 바. UCTS(UMAP Credit Transfer Scheme: UMAP 학점호환 방식)

- UCTS의 목적은 학생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학업에 대해 학점을 보증함으로써 UMAP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원조하고 UMAP 참가국·지역 상호간과 더불어 다른 지역과의 사이에 보다 잦은 대학간 교류 촉진
- 원적 교육기관(home institution)과 받아들이는 교육기관(host institution)의 교직원 : 교류학생의 수학계획의 교섭 및 감독
- UMAP 수학계획을 기록하는 UCTS 양식(the UCTS Record of UMAP Study form)
- UCTS 학점척도(UCTS credit point scale) : 교류학생이 받아들이는 대학에서 요구되는 이수 학점수를 원적 대학의 이수 학점수 척도로 적절하게 환산하는 기준.
- UCTS 성적평가척도(UCTS grading scale) : 받아들이는 대학에서 교류학생이 받은 성적을 원적대학의 성적으로 적절히 환산하는 기준

## 사. 한국 대학의 UMAP 참여 활성화

- UMAP Governance에 대교협 참여
- UMAP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 UCTS 참여와 상충되는 법령 및 대학 규정 정비
- 기존에 교류가 적은 지역과의 교류 장려
- UMAP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청 검토

## 5. 대학 국제화 관련 설문 결과

### 가. 설문 개요 및 문항

- 다섯 가지 국제화 관련 항목을 설문 조사함
- 총 56개 대학에서 설문 응답함

○ 설문 문항

1.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요청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_\_\_\_ ① 학점호환 프로그램 제공 \_\_\_\_ ② 선발기준 개발 및 선발  
 \_\_\_\_ ③ 해외대학과의 연계 \_\_\_\_ ④ 학위검증 \_\_\_\_ ⑤ 기타( )
2. 대교협이 미국 ACE(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교육협의회)와 한미 고등교육 교류를 추진한다면, 귀 대학은 어느 분야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복수 응답)  
 \_\_\_\_ ① 해외인턴십 상호 교류 \_\_\_\_ ② 학생 교류  
 \_\_\_\_ ③ 한미대학 총장 포럼 \_\_\_\_ ④ 학점호환 프로그램 공유  
 \_\_\_\_ ⑤ 교수 교류 \_\_\_\_ ⑥ 직원 교류  
 \_\_\_\_ ⑦ 기타( )
3. 미국 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복수 응답)  
 \_\_\_\_ ① 교육과정(curriculum) \_\_\_\_ ② 학과 및 학위과정  
 \_\_\_\_ ③ 행정조직 \_\_\_\_ ④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  
 \_\_\_\_ ⑤ 기타( )
4.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학 교류 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_\_\_\_ ① UCTS(UMAP 학점호환 방식) \_\_\_\_ ② UMAP 유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_\_\_\_ ③ UMAP 지도자 프로그램 \_\_\_\_ ④ 단기유학추진제도  
 \_\_\_\_ ⑤ 기타( )
5. 해외유학생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복수 응답)  
 \_\_\_\_ ① 해외유학생유치 관련 법률 개정 \_\_\_\_ ② 해외유학생 입학 절차의 간소화  
 \_\_\_\_ ③ 대학 해외 홍보 \_\_\_\_ ④ 대학 국제기구 강화 및 담당자 교육  
 \_\_\_\_ ⑤ 대학국제화 담당 국가기구 설립 \_\_\_\_ ⑥ 기타( )
6. 대학국제화와 관련하여 교과부/대교협에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나. 해외인턴십

구분	내용	학점호환 프로그램 제공	선발기준 개발 및 선발	해외대학과의 연계	학위검증	기타
<b>전체</b>		<b>40</b>	<b>7</b>	<b>32</b>	<b>5</b>	<b>2</b>
설립별	국·공립 대학	12	2	11	2	0
	사립대학	28	5	21	3	2
규모별	10,000명 이상 규모 대학	17	4	14	1	2
	10,000명 미만 규모 대학	23	3	18	4	0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대학	9	2	8	0	0
	비수도권 소재 대학	31	5	24	5	2
유형별	일반대	37	7	31	4	2
	교육대	2	0	1	1	0
	산업대	1	0	0	0	0

- 해외인턴십 관련해서는 학점호환 프로그램 제공(40개 대학, 71%)과 해외대학과의 연계(32개 대학, 57%)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높았음

## 다. ACE와의 교류 참여 희망 분야

구분	내용	해외인턴십 상호 교류	학생 교류	한·미대학 총장 포럼	학점호환 프로그램 공유	교수 교류	직원 교류
<b>전체</b>		<b>35</b>	<b>35</b>	<b>8</b>	<b>38</b>	<b>24</b>	<b>10</b>
설립별	국·공립 대학	11	13	2	12	10	4
	사립대학	24	22	6	26	14	6
규모별	10,000명 이상 규모 대학	18	15	5	16	12	8
	10,000명 미만 규모 대학	17	20	3	22	12	2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대학	9	8	3	8	5	2
	비수도권 소재 대학	26	27	5	30	19	8
유형별	일반대	32	32	8	35	21	9
	교육대	2	3	0	2	3	1
	산업대	1	0	0	1	0	0

- ACE와의 교류 참여 희망 분야로는 학점교환프로그램 공유(38개 대학, 68%)에 제일 관심이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해외인턴십 상호 교류(35개 대학, 63%), 학생교류(35개 대학, 63%)에 관심이 높았음
- 교수 교류는 24개 대학(43%)이 관심을 표명하였음

**라. 미국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야**

구분	내용	교육과정 (curriculum)	학과 및 학위과정	행정 조직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
<b>전체</b>		<b>41</b>	<b>20</b>	<b>13</b>	<b>20</b>
설립별	국공립 대학	12	8	4	7
	사립대학	29	12	9	13
규모별	10,000명 이상 규모 대학	19	8	9	10
	10,000명 미만 규모 대학	22	12	4	10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대학	8	6	5	5
	비수도권 소재 대학	33	14	8	15
유형별	일반대	38	17	13	20
	교육대	2	2	0	0
	산업대	1	1	0	0

- 미국대학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야로는 교육과정(41개 대학, 73%)에 제일 관심이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학과 및 학위과정과 해외유학생 유치 방안에 각각 20개 대학(36%)이 관심을 표명하였음

**마. 참여의사가 있는 UMAP 프로그램**

구분	내용	UCTS (학점교환)	유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지도자 프로그램	단기유학 추진 제도
<b>전체</b>		<b>35</b>	<b>23</b>	<b>10</b>	<b>29</b>
설립별	국공립 대학	7	10	4	10
	사립대학	28	13	6	19

규모별	10,000명 이상 규모 대학	19	11	5	9
	10,000명 미만 규모 대학	16	12	5	20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대학	8	5	1	8
	비수도권 소재 대학	27	18	9	21
유형별	일반대	33	20	9	26
	교육대	1	2	1	3
	산업대	1	1	0	0

- 참여의사가 있는 UMAP 프로그램으로는 UCTS(학점호환)(35개 대학, 63%)에 제일 관심이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단기유학 추진제도(29개 대학, 52%)과 유학생 장학금 지급사업(23개 대학, 41%)에 관심이 높았음

**바. 해외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는 사항**

구분	내용	해외유학생 유치 관련 법을 개정	해외유학생 입학 절차 간소화	대학 해외 홍보	대학 국제기구 강화 및 담당자 교육	대학국제화 담당 국가기구 설립	기타
<b>전체</b>		<b>16</b>	<b>30</b>	<b>15</b>	<b>18</b>	<b>11</b>	<b>1</b>
설립별	국·공립 대학	3	6	8	9	2	0
	사립대학	13	24	7	9	9	1
규모별	10,000명 이상 규모 대학	8	10	7	9	6	1
	10,000명 미만 규모 대학	8	20	8	9	5	0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대학	4	8	4	4	3	0
	비수도권 소재 대학	12	22	11	14	8	1
유형별	일반대	15	29	15	15	10	1
	교육대	0	0	0	3	1	0
	산업대	1	1	0	0	0	0

- 해외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해외유학생 입학 절차 간소화(30개 대학, 54%)에 제일 관심이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대학 국제기구 강화 및 담당자 교육(18개 대학, 32%), 해외유학생 유치 관련 법률 개정(16개 대학, 29%), 대학 해외 홍보(15개 대학, 27%)에 관심이 높았음

#### 사. 기타 의견

- 정부차원 해외인턴십제도 활성화
- 외국인학생 유치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
- 대학에서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거나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국가적으로 대한민국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한국을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외국인 유학생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별히 사증발급기관인 외교통상부산하 각국대사관에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에 관한 안내를 대학과 외국인유학생에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해외분교설립 간소화
-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및 확대
- 대학의 유학담당자 연수 필요
- 외국인 교원수, in-outbound 학생교류수, 다양한 국가대학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평가지표 향상 개선
- 복수학위제에 의해서 취득한 외국대학의 학위를 정식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요청
- 학생언어연수, 인턴십이후 해외취업연결조직 구축 필요
- 해외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학과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 지원



## 6. ACE, UMAP 등의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대학 국제화 방안의 문제점

- UCTS 학점호환 방식의 가이드라인 부재
- 대학간 교육과정, 인력 풀에 대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
- 해외인턴십, 교수교류의 절차 및 관리체제 부재
- 기존의 다른 해외인턴십, 교수교류, 학점호환 프로그램과의 중복
- 미국대학을 벤치마킹할 경우, 대학생들이 선호하고 지원하는 미국 상황과 국내 상황과의 차이 반영의 어려움

## 7. 구체적인 대학 국제화 방안

- 대학이 선호하고 있는 UCTS 학점호환 방식은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이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데 중심으로 두고 진행되어야 함
- 대학간 교육과정, 인력 풀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인식하되, 대학별로 공유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여야 함
- 학생과 교수의 국제 경험이 대학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학생 해외인턴십, 교수교류의 공식 절차가 마련되고, 이에 준하여 진행되어야 함
- 학생인턴십, 교수교수 프로그램이 다양한 스펙으로 구성되어야 함
- 미국 대학의 벤치마킹 효과는 개별 대학에 적합한 모형으로 변형·적용하는 후속 노력에 달려 있음

**[부록] 위원 구성 현황**

<b>국제화대책위원회(22명)*</b>		
<b>구 분</b>	<b>소속기관명</b>	<b>성 명</b>
위원장	동서대	박동순
부위원장	한동대	김영길
위원	경남대	박재규
	대불대	문석남
	루터대	박일영
	목원대	이요한
	배재대	정순훈
	부산가톨릭대	윤경철
	부산외국어대	유선규
	성공회대	양권석
	성민대	이강무
	순천대	장만채
	용인대	김정행
	장로회신학대	장영일
	추계예술대	임상혁
	총신대	정훈택
	충주대	장병집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한국항공대	여준구
	한남대	김형태
한세대	김성혜	
협성대	최문자	
자문교수	경북대	권선국
전문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수경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 사 회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발 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

---

2009년 6월 일 인쇄

2009년 6월 일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 - 27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 11층  
전화 02) 6393-5200

인 쇄 처 삼영문화사  
전화 02) 2274-1381

ISBN 978-89-93935-04-2 93370

---

---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9 788993 935042

9 3 3 7 0

ISBN 978-89-93935-04-2